

연구보고서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김부욱·조기홍·천지영·백희정·강은택·이성중·최서연·이경화·김제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 월

## 연구진

연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부욱 (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조기홍 (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천지영 (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백희정 (교수,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연구원 : 강은택 (연구위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원 : 이성중 (운영위원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 : 최서연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이경화 (회장,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연구원 : 김제원 (교수, 강원대학교)



## 요약문

- 연구기간 2023년 04월 ~ 2023년 10월
- 핵심단어 휴게시설,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 연구과제명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 1. 연구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재대상은 2023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므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알리고, 현장의 제도 이행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연구내용

#### 1)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한 사업장은 제조업 417개소, 비제조업 1,048개소, 건설업 401개소로 총 1,866개 사업장이다. 전체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93.5%, 없다고 응답한 곳은 6.5%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제조업 95.9%, 비제조업 92.8%, 건설업 92.2%로써 제조업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모두 50인 이상(50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50인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 작년에 진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조업 4.9%, 비제조업 3.0%, 건설업에서 2.4% 사업장내 휴게 시설 설치 비율이 증가하였다.

휴게시설 관리기준 준수율은 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7개소를 제외한 400개 중 사업장 휴게시설이 근무 위치에서 편리하고 가까운 곳 위치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있었고, 이외 모든 항목에서 사업장마다 1개 이상의 미준수가 있었다. 이 중 “휴게시설 내 식수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2.5%, 11.0%, 11.0%으로 높았다.

비제조업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75개소를 제외한 973개 모든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관리기준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 노출”,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4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8.6%, 17.9%, 10.7%, 10.5%로 높았다.

건설업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31개소를 제외한 370개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노출”, “냉방시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항목에서 미준수율이 높았고, 각각 40.0%, 33.2%, 25.4%, 18.6%, 이었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휴게시설 내 식수시설을 구비하고(20~50인 사업장),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50~100인 사업장)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관리기준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50억 이상 현장)과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음노출(20~50억 사업장)을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가 작을수록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제조업에서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관

리기준 미준수 비율이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아, 비제조업은 개별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비제조업 중 통신업에서 휴게시설 미설치율이 22.5%로 높았고, 이외 20인 미만의 교육서비스업의 미설치율이 40%로 높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휴게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이유 등으로 보이며, 보건업(병원)도 20인 미만 미설치율이 25.0%로 다소 높았다.

건설업은 20~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 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도심지 건설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더욱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되어 2020년 이후 건설하는 주택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듯이, 휴게시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일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건설업), 폐기물관리법(폐기물 관련 업체), 의료 관계법(병원, 요양시설 등) 등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부여한다면 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제도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업종에서는 성별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설 이용의 실효성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1인당 최소 휴게공간이 확보되도록 근로자 규모에 비례한 휴게시설 설치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어 모든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의 강화 또는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에는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공동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주요 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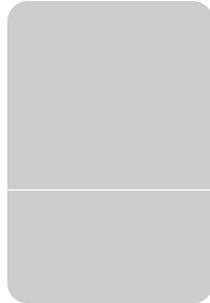
업종별 규모별로 현장조사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고서상에 제시하였다. 각 우수사례는 사업장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소개가 되어야 하겠다.

## 3. 연구 활용방안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휴게시설 제도의 빠른 안착과 향후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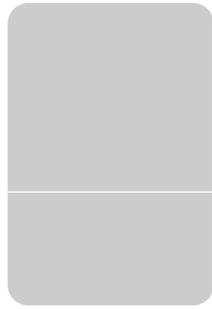
##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김부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차장 양동이
  - ☎ 052) 703. 0858
  - E-mail yangtony@kosha.or.kr



# 목 차

I. 서 론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표 .....	0
II. 연구내용 및 방법 .....	41
1. 연구내용 및 범위 .....	41
2. 연구방법 .....	5
III. 연구결과 .....	2
1.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	4· 2
2. 노사 휴게시설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의견 .....	171
3. 휴게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지원 사업 현황 .....	091
4. 휴게시설 우수사례 .....	2
5. 휴게시설 제도개선 방안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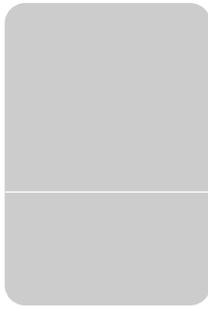


# 목 차

IV. 고찰 및 결론 .....	25
참고문헌 .....	20
Abstract .....	257
부록 .....	263

#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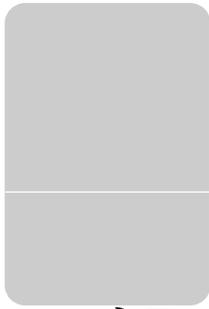
<표 I-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5
<표 I-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6
<표 I-3>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시기 .....	8
<표 I-4>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조사결과(고용노동부, 2022) .....	9
<표 III-1> 업종별 휴게시설 운영실태 조사 사업장 개소 .....	4 2
<표 III-2> 전체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	5 2
<표 III-2-1> 업종별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	5 2
<표 III-2-2>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	6 2
<표 III-3> 제조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	8 2
<표 III-4> 비제조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	0 3
<표 III-5> 건설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	2 3
<표 III-6> 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	4 3
<표 III-7> 비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	6 3
<표 III-8> 건설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	8 3
<표 III-9> 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0 4
<표 III-10> 비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7 4
<표 III-11> 건설업 공사금액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4 5
<표 III-12> 식료품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1 6
<표 III-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9 6
<표 III-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	7 7
<표 III-1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휴게시설 설치현황 .....	3 8



# 표

<표 III-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1	9
<표 III-17> 보건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8	9
<표 III-18>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6	0 1
<표 III-1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1	
<표 III-20> 도매 및 소매업 휴게시설 설치현황	0	2 1
<표 III-21> 운수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6	2 1
<표 III-22> 숙박 및 음식점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2	3 1
<표 III-23> 통신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8	3 1
<표 III-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145
<표 III-25> 교육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2	5 1
<표 III-26> 폐기물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9	5 1
<표 III-27> 취약직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5	6 1
<표 III-28> 노동계 관계자 애로사항	1	7 1
<표 III-29> 경영계 관계자 애로사항	4	7 1
<표 III-30> 전문가 및 보건관리자 관계자 애로사항	7	7 1
<표 III-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7 1
<표 III-32> 휴게시설 확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8 1
<표 III-33> 토목공사현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8 1
<표 III-34> 온습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8 1
<표 III-35> 교육 인식변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8 1

<표 III-36>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8·1
<표 III-37>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건축조례 .....	0·9·1
<표 III-38>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주택조례 .....	4·9·1
<표 III-39>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 .....	7·9·1
<표 III-40> 광역 자치단체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	1·0·2
<표 III-41> 기초 자치단체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	2·0·2
<표 III-42> 교육청 휴게시설 지원 현황 .....	7·0·2
<표 III-43> 행정안전부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 .....	9·0·2
<표 III-44> 대상별 휴게시설 관련 규정 및 내용 .....	6·3·2



## 그림목

[그림 II-1] 본 연구에서 사업장에 배포한 휴게시설 안내 표지판	6	1
[그림 II-2] 휴게시설 설치 안내 OPS	6	1
[그림 II-3] 휴게시설 실태 조사지 관련 주요 QA	7	1
[그림 II-4] 사업장 휴게시설 조사 가이드	8	1
[그림 II-5] 연구설계도	2	2
[그림 III-1] 무더위쉼터 위치, 운영시간, 운영시간 등 검색 예시	0	1 2
[그림 III-2]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2	1 2
[그림 III-3]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2	1 2
[그림 III-4]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3	1 2
[그림 III-5]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5	1 2
[그림 III-6]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6	1 2
[그림 III-7]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6	1 2
[그림 III-8]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7	1 2
[그림 III-9]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9	1 2
[그림 III-10]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9	1 2
[그림 III-11]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0	2 2
[그림 III-12]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3	2 2
[그림 III-13]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3	2 2
[그림 III-14]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4	2 2
[그림 III-15]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4	2 2
[그림 III-16]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5	2 2

[그림 III-17]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5·2·2
[그림 III-18]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8·2·2
[그림 III-19]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8·2·2
[그림 III-20]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9·2·2
[그림 III-21]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9·2·2
[그림 III-22] 10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10·3·2
[그림 III-23] 50억 미만 건설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2·3·2
[그림 III-24] 100억 이상 건설업 우수사례 .....	3·3·2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배경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 건강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평균 휴게시설 수용 가능 인원이 백화점 21명, 면세점 47명, 할인점 23명으로 전체 임직원 수에 비교하였을 때 수용가능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백화점 수용가능인원은 근로자 수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화장실 일부를 활용하여 청소 및 하청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례, 계단이나 좁은 공간에 종이박스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 사례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178-2022)에 의하면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자의 작업효율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서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정혜선, 2021).

의료기관 종사자의 휴게시설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선행 연구를 보면, 휴게시설과 피로도의 상관관계에서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 습도, 청결,

환기, 이용시간, 조명, 색채, 소음, 위치, 면적, 이용시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피로가 적은 경우 휴게시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소라, 2023).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환경에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을 분석해보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으로만 규제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의무조항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분조 신설<표 I-1>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3년 8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lt;표 I-1&g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p><b>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b>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8. 17.]</p>	<p><b>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b>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p> <p>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p>	<p><b>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b>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p>

<표 I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2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1건당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이 달라지는데 시행일은 <표 I-3>과 같다.

<표 I-3>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시기

해당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및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업	2022.08.1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및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50억 미만 건설업	2023.08.18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일부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023.08.18

한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9월 19부터 10월 31일 까지 총 279개 사업장의 선정하여 특별지도기간을 두어 시정기간을 부여하였고,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표 I-4>.

<표 I-4>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조사결과(고용노동부, 2022)

	대학교	아파트	전체
조사대상	185	94	279
위반사업장	84(45.4%)	40(42.5%)	124(44.4%)

그 결과 279개 사업장 중에 124개(44.4%)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에서 일부 직종, 협력업체의 휴게시설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었고,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사례가 조사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22년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용역과제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여 업종·규모별에 따른 휴게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총 848개소 중 제조업 284개소(91.0%), 비제조업 255개소(89.8%), 건설업 63개소(55.7%),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26개소(92.9%), 아파트 및 건물경비원 48개소(82.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0개소(78.1%), 기타 18개소(100%)에서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휴게전용으로만 사용되는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53.2%, 업종별로 규모 및 공사 금액이 클수록 휴게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한

편,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관리기준 항목별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지부착, 습도 유지, 관리 담당자 지정항목의 충족이 가장 낮았고 규모 및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충족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18일 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제도 이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제도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및 범위

#### 1)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건설업 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1,50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750개소는 설문조사, 750개소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현장을 비중을 두어 조사한다.

#### 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미설치의 원인 및 휴게시설 운영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3) 주요 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발굴

주요 업종별로 우수사례 사업장을 발굴하여 보고서에 제시한다.

## 2. 연구방법

### 1) 설문지 구성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부록 1]. 추가로 제조업, 비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유무, 관리기준 준수 유무에 차이를 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한 항목도 구성하였다.

### 2)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 (1) 대한산업보건협회 조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고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와 협의를 통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지역 센터별 조사대상 사업장 규모(20인 미만, 20~50인, 50~100인, 100인 이상)와 사업장 개소를 선정하였다.

지역센터 내 보건관리팀에서는 사업장 현장조사 650개소, 환경위생팀에서는 설문조사 310개소를 진행하였다[부록 2, 3].

한편,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시 본 연구진이 제작한 휴게시설 안내표지판[그림 II-1]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휴게시설 설치안내가이드(OPS)[그림 II-2]를 함께 배부함으로써 휴게시설 설치 및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시 지역센터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실시 및 조사가이드와 관련 QA를 배포하였다[그림 II-3, 4].



**■ 조사지 관련 주요 QA**

관련문항	질문	설명
3	귀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00m <sup>2</sup> (약 90평) 이상입니까?	1. 사업장의 건물이 자체 건물일 경우: 사용하고 있는 각 층의 연 면적(전체면적)을 합하여 기입 2. 사업장이 임대 건물(아파트형 공장 등)일 경우: 귀 사업장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입
11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 면적(휴게실 수)은 얼마입니까?	휴게시설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기입 (부득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OO m <sup>2</sup> 이상, OO 개 이상으로 기입)
12	휴게시설 동시 사용인원은 최대 몇 명입니까?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인원
21	휴게시설에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충족으로 체크. 상기 품목이 아니더라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 충족
22	휴게시설에 적정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밝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다이얼 버튼 혹은 조명기구가 여러 개 갖추어져 있는 경우 충족으로 체크
23	휴게시설에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합니까?	휴게시설에 흡/배기가 있는 경우 충족, 공기청정기는 미충족으로 체크

[그림 II-3] 휴게시설 실태 조사지 관련 주요 QA

### 사업장 휴게시설 조사 가이드

- 본 사업장 휴게시설 조사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이므로 사업장 휴게시설을 확인하시며 조사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 설치 안내문(붙임 1) 배포는 고용노동부 요청사항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설 표지판 스티커는(붙임 2)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입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아 별도로 제작한 물품으로 표지판이 없는 사업장 휴게시설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하시고 사진 촬영 후 산업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표지판이 있거나, 없더라도 당장 표지판 부착이 여의치 않는 사업장에서는 사진 촬영 미실시 가능)
  - ☞ 스티커를 부착한 후 휴게시설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 휴게시설 내부모습 1장, 사업장별 총 2장을 사진을 센터별로 취합(압축파일)해서 2022157@kiha21.or.kr(천지영)으로 발송바랍니다.
  - ☞ 사진의 파일명은 조사지의 각 번호로 변경해서 발송바랍니다.(붙임 3)

[그림 II-4] 사업장 휴게시설 조사 가이드

## (2) 공동연구원 설문조사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중앙대학교, 서울권익센터, 건설보건관리자협의회,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에 소속된 공동연구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파트 및 공동주택, 장기요양시설, 학교, 유통업(도소매업) 등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 (3) 건설업 설문조사

○ 설문조사 : 건설보건관리자협의회 등 건설 관련 협회와 OO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의 협조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현장조사 : 안전보건공단 OO지역본부의 건설업 현장 패트를 점검 시 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휴게시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의 건설현장 리스트를 입수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부록 4].

## (4) 폐기물업 설문조사

폐기물업과 관련된 센터인 OO재활용지원센터 및 OO유통자원센터와 회의 및 협조요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두 센터에 소속된 폐기물 사업장 각각 750개소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안내 OPS 배포를 요청하여, 각 사업장에 OPS를 배포하였다[부록 5, 6].

## (5) 설문조사 제한점 및 회수율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현장조사)는 임의의 사업장에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산업

보건협회에서는 각 지역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 회수되었다. 이외 건설업 현장조사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건설업 설문조사는 500개 이상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배포하였고, 235부 회수되어 회수율이 50% 미만이었다. 주택관리업은 150개소 배포하여 79개소에서 회수되어 회수율 53.7%였고, 폐기물은 1,500개소 배포하여 49개소 회수되어 3.3%로 낮았다. 교육서비스업(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소속의 공동연구원을 통해 약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는데 32개 학교에서 회수가 되었고, 보건업(병원)도 공동연구원을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회 등의 협조로 128개소 배포하여 모두 회수되었고, 장기요양기관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의 협조로 약 110개소 배포하여 모두 회수되었다. 이외 유통업, 콜센터 등 일부 업종에서는 회수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 3)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2022년 휴게시설 실태조사 연구수행 시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현황 중 공간, 비품 및 설비,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더불어, 노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휴게시설 운영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집한다.

### 4) 휴게시설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및 노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파악된 휴게시설 운영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원활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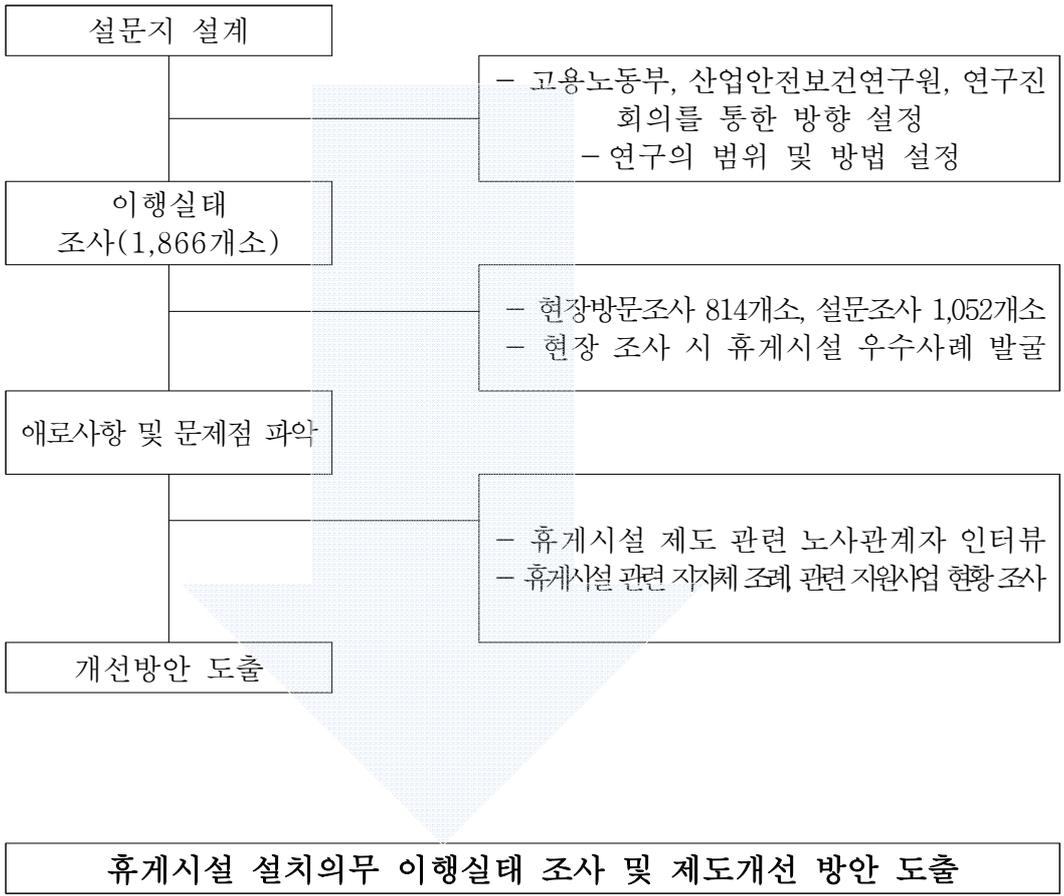
또한, 휴게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및 휴게시설 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제시한다.

#### 5) 주요 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발굴

휴게시설 현장방문 조사 시 주요 업종 · 규모별로 우수사례 사업장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 6) 연구 설계도

연구 설계도는 설문지 설계, 이행실태 조사,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순서이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연구설계도

## III. 연구결과



### Ⅲ. 연구결과

#### 1.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 1) 휴게시설 전체 운영실태 조사결과(조사 사업장 수)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한 사업장 수를 집계하여 정리하였다<표 Ⅲ-1>

총 1,866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였고, 비제조업 1,048개소, 제조업 417개소, 건설업 401개소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많았다.

<표 Ⅲ-1> 업종별 휴게시설 운영실태 조사 사업장 개소

(단위 : 개소(%))

구분	20인(억) 미만	20인~50인 (억)미만	50인~100인 (억)미만	100인 이상	합계
제조업	92(22.1)	173(41.5)	75(18.0)	77(18.5)	417(22.3)
비제조업	356(34)	299(28.5)	164(15.6)	229(21.9)	1,048(56.2)
건설업	100(24.9)	152(37.9)	149(37.2)*		401(21.5)
합계	548(29.4)	624(33.4)	388(20.8)	306(16.4)	1,866(100)

\* 건설업 50억 이상 사업장 개소는 구분 50인-100인(억)미만에 포함하였음

2)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표 III-2>는 전체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총 1,866개 사업장 중 휴게시설이 있음으로 응답한 사업장은 1,743개소(93.5%), 없음으로 응답한 사업장은 123개소(6.5%)로 조사되었다.

<표 III-2> 전체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구분	휴게시설 유무		합계
	있음 N(%)	없음 N(%)	
전 체	1,743(93.5)	123(6.5)	1,866(100)

작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있음으로 응답한 곳은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각각 91.0%, 89.8%, 89.8%로 조사되었으나 올해는 95.9%, 92.8%, 92.2%로 나타나 작년에 진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조업 4.9%, 비제조업 3.0%, 건설업에서 2.4%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표 III-2-1> 업종별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휴게시설 유무		합계
	있음 N(%)	없음 N(%)	
제조업	400(95.9)	17(4.1)	417(100)
비제조업	973(92.8)	75(7.2)	1,048(100)
건설업	370(92.2)	31(7.7)	401(100)

## 2-1) 업종별 규모별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표 III-2-2>는 업종별 규모별 휴게시설 유무 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휴게시설이 있음으로 응답한 사업장은 제조업 20인 미만 92.4%, 20인~50인 미만 96.0%, 50~100인 미만 98.7%, 100인 이상에서 97.4%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20인 미만 85.7%, 20인~50인 미만 95.3%, 50인~100인 미만 97.0%, 100인 이상 97.8%로 나타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은 20억 미만 87.0%, 20억~50억 미만 92.8%, 50억 이상 95.3%으로 공사금액 50억 이상에서 휴게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모두 50인 이상(5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단위 : 개소(%))

업종	구분	휴게시설 유무		합계
		있음 N(%)	없음 N(%)	
제조업 (N=417)	20인 미만	85(92.4)	7(7.6)	92(100)
	20인~50인 미만	166(96.0)	7(4.0)	173(100)
	50인~100인 미만	74(98.7)	1(1.3)	75(100)
	100인 이상	75(97.4)	2(2.6)	77(100)
비제조업 (N=1,048)	20인 미만	305(85.7)	51(14.3)	356(100)
	20인~50인 미만	285(95.3)	14(4.7)	299(100)
	50인~100인 미만	159(97.0)	5(3.0)	164(100)
	100인 이상	224(97.8)	5(2.2)	229(100)
건설업 (N=401)	20억 미만	87(87.0)	13(13.0)	100(100)
	20억~50억 미만	141(92.8)	11(7.2)	152(100)
	50억 이상	142(95.3)	7(4.2)	149(100)

### 3) 업종별 휴게시설 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 (1) 제조업 휴게시설 관리기준 조사결과(N=400)

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7개소를 제외한 400개 사업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휴게시설이 근무 위치에서 편리하고 가까운 곳 위치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관리기준 항목에 대해 미준수가 있었다. 이 중 “휴게시설 내 식수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미사용”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2.5%, 11%, 11%로 10%를 넘어 상대적으로 다른 관리기준에 비해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 제조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단위 : 사업장수(%))

관리기준 항목	미준수 사업장 수(%)*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0(0)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3(0.8)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5(1.3)
천장 높이 2.1 m 이상	6(1.5)
냉방시설	13(3.3)
난방시설	9(2.3)
습도기준	37(9.3)
조명기준	4(1.0)
환기가능	25(6.3)
소음노출	37(9.3)
<b>식수 설비</b>	<b>50(12.5)</b>
비품 구비	12(3)
담당자 지정	35(8.8)
휴게시설 청결 유지	1(0.3)
<b>표지판부착</b>	<b>44(11.0)</b>
<b>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b>	<b>44(11.0)</b>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7개소 제외한 총 400개 사업장 중 미준수 사업장 수

## (2) 비제조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비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75개소를 제외한 973개 사업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Ⅲ-4>과 같다. 모든 관리기준 항목에 대해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 “소음 노출”, “휴게시설 안내표지 부착”, “담당자 지정”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8.6%, 17.9%, 10.7%, 10.5%로 10%를 넘어 상대적으로 다른 관리기준에 비해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비제조업 휴게시설에 소음노출 항목과 휴게시설의 다른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보건업은 대부분 병원,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요양병원 관계자로 근로자 수가 많으면서 휴게시설이 별도로 떨어진 아늑한 공간이 아니라 근무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등 직종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 비제조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단위 : 사업장수(%))

관리기준 항목	미준수 사업장 수(%)*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22(2.3)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21(2.2)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23(2.4)
천장 높이 2.1 m 이상	16(1.6)
냉방시설	16(1.6)
난방시설	15(1.5)
습도기준	89(9.1)
조명기준	14(1.4)
환기가능	83(8.5)
<b>소음노출</b>	<b>174(17.9)</b>
식수 설비	80(8.2)
비품 구비	27(2.8)
<b>담당자 지정</b>	<b>102(10.5)</b>
휴게시설 청결 유지	20(2.1)
<b>표지판 부착</b>	<b>104(10.7)</b>
<b>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b>	<b>181(18.6)</b>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75개소 제외한 총 973개 사업장 중 미준수 사업장 수

## (3) 건설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건설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31개소를 제외한 370개 사업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Ⅲ-5>과 같다. 모든 관리기준 항목에 대해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미사용”, “소음 노출”, “냉방시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습도기준”, “담당자 지정”, “표지판 부착” 7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40%, 33.2%, 25.4%, 18.6%, 18.4%, 16.8%, 13.8%로 10%를 초과해 상대적으로 다른 관리기준에 비해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표 III-5> 건설업 관리기준 조사결과

(단위 : 사업장수(%))

관리기준 항목	미준수 사업장 수(%)*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1(0.3)
<b>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b>	<b>69(18.6)</b>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35(9.5)
천장 높이 2.1 m 이상	3(0.8)
<b>냉방시설</b>	<b>94(25.4)</b>
난방시설	31(8.4)
<b>습도기준</b>	<b>68(18.4)</b>
조명기준	36(9.7)
환기가능	11(3.0)
<b>소음노출</b>	<b>123(33.2)</b>
식수 설비	31(8.4)
비품 구비	35(9.5)
<b>담당자 지정</b>	<b>51(13.8)</b>
휴게시설 청결 유지	48(13.0)
<b>표지판 부착</b>	<b>62(16.8)</b>
<b>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b>	<b>148(40.0)</b>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31개소 제외한 총 370개 사업장 중 미준수 사업장 수

#### 4) 업종별 규모별 휴게시설 관리기준 조사결과

##### (1) 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조사결과

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7개소를 제외한 규모별 400개 사업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관리기준 항목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미준수 비율이 18.8%로 가장 높았고, 20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내 식수시설 구비” 미준수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50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 미준수 비율이 각각 10.8%, 8.0%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작년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미준수 비율은 약 13.5% 개선되었다.

<표 III-6> 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단위 : %)

관리기준 항목	400개* 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별 미준수 사업장 수(%)			
	20인 미만 (N=85)	20인~50인 미만 (N=166)	50인~100인 미만 (N=74)	100인 이상 (N=75)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2(2.4)	1(0.6)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1(1.2)	3(1.8)	1(1.4)	-
천장 높이 21 m 이상	3(3.5)	3(1.8)	-	-
냉방시설	2(2.4)	7(4.2)	3(4.1)	1(1.3)
난방시설	2(2.4)	4(2.4)	2(2.7)	1(1.3)
습도기준	8(9.4)	24(14.5)	2(2.7)	3(4.0)
조명기준	1(1.2)	2(1.2)	-	1(1.3)
환기가능	7(8.2)	9(5.4)	3(4.1)	6(8.0)
소음노출	13(15.3)	18(10.8)	3(4.1)	3(4.0)
식수 설비 구비	12(14.1)	32(19.3)	3(4.1)	3(4.0)
비품 구비	3(3.5)	6(3.6)	2(2.7)	1(1.3)
담당자 지정	10(11.8)	19(11.4)	3(4.1)	3(4.0)
휴게시설 청결 유지	1(1.2)	-	-	-
표지판 부착	16(18.8)	19(11.4)	6(8.1)	3(4.0)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사용	9(10.6)	21(12.7)	8(10.8)	6(8.0)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17개소) 제외

## (2) 비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조사결과

비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75개소를 제외한 973개 사업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관리기준 항목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미준수 비율이 17.7%로 가장 높아 제조업 미준수 항목과 같았고, 20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 미준수 비율이 14.0%로 가장 높았고, 50인~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 미준수 비율이 20.1%로 가장 높아 제조업 미준수 항목과 같았다.

한편,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음 노출” 미준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100인 이상 비제조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7> 비제조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단위 : %)

관리기준 항목	973개* 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별 미준수 사업장 수(%)			
	20인 미만 (N=305)	20인~50인 미만 (N=285)	50인~100인 미만 (N=159)	100인 이상 (N=224)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9(3.0)	-	1(0.6)	12(5.4)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8(2.6)	4(1.4)	2(1.3)	7(3.1)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10(3.3)	2(0.7)	1(0.6)	10(4.5)
천장 높이 2.1 m 이상	12(3.9)	-	-	4(1.8)
냉방시설	8(2.6)	3(1.1)	-	5(2.2)
난방시설	8(2.6)	-	-	7(3.1)
습도기준	33(10.8)	24(8.4)	10(6.3)	22(9.8)
조명기준	4(1.3)	3(1.1)	3(1.9)	4(1.8)
환기가능	21(6.9)	15(5.3)	12(7.5)	35(15.6)
소음노출	49(16.1)	36(12.6)	31(19.5)	58(25.9)
식수 설비 구비	30(9.8)	20(7.0)	13(8.2)	17(7.6)
비품 구비	5(1.6)	5(1.8)	7(4.4)	10(4.5)
담당자 지정	45(14.8)	23(8.1)	10(6.3)	24(10.7)
휴게시설 청결 유지	1(0.3)	4(1.4)	2(1.3)	13(5.8)
표지판 부착	53(17.4)	20(7.0)	11(6.9)	20(8.9)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사용	54(17.7)	40(14.0)	32(20.1)	55(24.6)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75개소) 제외

### (3) 건설업 규모별 관리기준 조사결과

건설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31개소를 제외한 370개 사업장의 공사금액 규모별 휴게시설 관리기준 항목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관리기준 세부 항목별로 보면 2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표지판 미부착” 미준수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고, 20억~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소음노출” 미준수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고,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 미준수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작년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표 III-8> 건설업 규모별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조사결과

(단위 : %)

관리기준 항목	370개* 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별 미준수 사업장 수(%)		
	20억 미만 (N=87)	20억~50억 미만(N=156)	50억 이상 (N=127)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	1(0.6)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5(5.7)	39(25.0)	25(19.7)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23(26.4)	7(4.5)	5(3.9)
천장 높이 2.1 m 이상	-	2(1.3)	1(0.8)
냉방시설	19(21.8)	67(42.9)	8(6.3)
난방시설	10(11.5)	15(9.6)	6(4.7)
습도기준	36(41.4)	18(11.5)	14(11.0)
조명기준	23(26.4)	5(3.2)	8(6.3)
환기가능	4(4.6)	6(3.8)	1(0.8)
소음노출	13(14.9)	85(54.5)	25(19.7)
식수 설비 구비	27(31.0)	4(2.6)	-
비품 구비	25(28.7)	7(4.5)	3(2.4)
담당자 지정	27(31)	19(12.2)	5(3.9)
휴게시설 청결 유지	35(40.2)	10(6.4)	3(2.4)
표지판 부착	38(43.7)	22(14.1)	2(1.6)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34(39.1)	78(50.0)	36(28.3)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31개소) 제외

## 5) 사업장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 결과

### (1) 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 결과

제조업은 총 417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표 III-9>. 417개소 중에 17개소를 제외한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고,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식당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천장높이, 조명 기준, 청결유지 항목 충족비율은 80.4~96.0%로 작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습도기준 항목은 올해 충족비율이 65~82.7%로 작년에 비해 약 5.5~21.2%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사업장 위치 (N=417)	산업단지(N=249)	43(46.7)	106(61.3)	50(66.7)	50(64.9)
	지식산업센터(N=16)	7(7.6)	5(2.9)	2(2.7)	2(2.6)
	기타(N=152)	42(45.7)	62(35.8)	23(30.7)	25(32.5)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417)	예(N=398)	80(87.0)	168(97.1)	75(100)	75(97.4)
	아니요(N=17)	12(13.0)	4(2.3)	-	1(1.3)
	결측치(N=2)	-	1(0.6)	-	1(1.3)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417)	있음(N=196)	26(28.3)	69(39.9)	39(52.0)	62(80.5)
	없음(N=221)	66(71.7)	104(60.1)	36(48.0)	15(19.5)
협력업체 휴게시설 유무 (N=417)	예(N=189)	25(27.2)	67(38.7)	37(49.3)	60(77.9)
	아니요(N=7)	1(1.1)	2(1.2)	2(2.7)	2(2.6)
	해당없음(N=221)	66(71.7)	104(60.1)	36(48.0)	15(19.5)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417)	원청 휴게시설 이용 (N=118)	13(14.1)	46(26.6)	25(33.3)	34(44.2)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64)	11(12.0)	20(11.6)	12(16.0)	21(27.3)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5)	1(1.1)	1(0.6)	-	3(3.9)
	결측치(N=2)	-	-	-	2(2.6)
	해당없음(N=228)	67(72.8)	106(61.3)	38(50.7)	17(22.1)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휴게시설 유무 (N=417)	예(N=400)	85(92.4)	166(96)	74(98.7)	75(97.4)
	아니요(N=17)	7(7.6)	7(4.0)	1(1.3)	2(2.6)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417)	예(N=274)	52(56.5)	106(61.3)	58(77.3)	58(75.3)
	아니요(N=126)	33(35.9)	60(34.7)	16(21.3)	17(22.1)
	결측치(N=17)	7(7.6)	7(4.0)	1(1.3)	2(2.6)
휴게 외 다른목적으 로 사용되는 용도 (N=126)	회의실(N=32)	6(18.2)	13(21.7)	6(37.5)	7(41.2)
	탈의실(N=68)	17(51.5)	33(55.0)	8(50.0)	10(58.8)
	식당(N=29)	9(27.3)	13(21.7)	5(31.3)	2(11.8)
	기타(N=20)	7(21.2)	11(18.3)	1(6.3)	1(5.9)
휴게시설 개수 (N=417)	1개(N=158)	50(54.3)	66(38.2)	28(37.3)	14(18.2)
	2개(N=113)	25(27.2)	55(31.8)	18(24.0)	15(19.5)
	3개이상(N=129)	10(10.9)	45(26.0)	28(37.3)	46(59.7)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휴게시설 평균면적		37.91±57.2	90.59±434.4	69.63±79.1	1273±5471.9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1.49명	약 16.6명	약 25.6명	약 317명
동시사용인 원 고려사항* (N=416)	교대근무(N=91)	10(10.9)	41(23.7)	17(22.7)	23(29.9)
	외근(N=15)	4(4.3)	4(2.3)	3(4.0)	4(5.2)
	작업형태(N=149)	28(30.4)	62(35.8)	28(37.3)	31(40.3)
	휴식주기(N=161)	42(45.7)	72(41.6)	27(36.0)	20(26.0)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휴게시설 위치* (N=439)	건물내지상(N=343)	67(72.8)	149(86.1)	61(81.3)	66(85.7)
	건물내지하(N=16)	2(2.2)	4(2.3)	6(8.0)	4(5.2)
	건물옥상(N=3)	1(1.1)	1(0.6)	1(1.3)	-
	건물밖(N=35)	7(7.6)	15(8.7)	6(8.0)	7(9.1)
	근무외장소(N=42)	13(14.1)	15(8.7)	4(5.3)	10(13)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417)	충족(N=362)	76(82.6)	151(87.3)	70(93.3)	65(84.4)
	일부충족(N=37)	9(9.8)	15(8.7)	4(5.3)	9(11.7)
	미충족(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417)	충족(N=356)	74(80.4)	145(83.8)	67(89.3)	70(90.9)
	일부충족(N=40)	9(9.8)	20(11.6)	7(9.3)	4(5.2)
	미충족(N=3)	2(2.2)	1(0.6)	-	-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417)	충족(N=363)	79(85.9)	148(85.5)	67(89.3)	69(89.6)
	일부충족(N=31)	5(5.4)	15(8.7)	6(8.0)	5(6.5)
	미충족(N=5)	1(1.1)	3(1.7)	1(1.3)	-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천장 높이 2.1 m 이상 (N=417)	충족(N=372)	80(87.0)	152(87.9)	72(96.0)	68(88.3)
	일부충족(N=20)	2(2.2)	11(6.4)	2(2.7)	5(6.5)
	미충족(N=6)	3(3.3)	3(1.7)	-	-
	결측치(N=2)	-	-	-	2(2.6)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냉방시설 (N=417)	충족(N=258)	77(83.7)	146(84.4)	70(93.3)	65(84.4)
	일부충족(N=28)	6(6.5)	13(7.5)	1(1.3)	8(10.4)
	미충족(N=13)	2(2.2)	7(4.0)	3(4.0)	1(1.3)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난방시설 (N=417)	충족(N=360)	77(83.7)	150(86.7)	69(92.0)	64(83.1)
	일부충족(N=30)	6(6.5)	12(6.9)	3(4.0)	9(11.7)
	미충족(N=9)	2(2.2)	4(2.3)	2(2.7)	1(1.3)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습도기준 (N=417)	충족(N=300)	60(65.2)	121(69.9)	62(82.7)	57(74.0)
	일부충족(N=62)	17(18.5)	21(12.1)	10(13.3)	14(18.2)
	미충족(N=37)	8(8.7)	24(13.9)	2(2.7)	3(3.9)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조명기준 (N=417)	충족(N=375)	79(85.9)	154(89.0)	72(96.0)	70(90.9)
	일부충족(N=20)	5(5.4)	10(5.8)	2(2.7)	3(3.9)
	미충족(N=4)	1(1.1)	2(1.2)	-	1(1.3)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환기가능 (N=417)	충족(N=326)	68(73.9)	145(83.8)	64(85.3)	49(63.6)
	일부충족(N=48)	10(10.9)	12(6.9)	7(9.3)	19(24.7)
	미충족(N=25)	7(7.6)	9(5.2)	3(4.0)	6(7.8)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소음노출 (N=417)	그렇다(N=37)	13(14.1)	18(10.4)	3(4.0)	3(3.9)
	일부그렇다(N=37)	11(12.0)	16(9.2)	5(6.7)	5(6.5)
	그렇지않다(N=325)	61(66.3)	132(76.3)	66(88.0)	66(85.7)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식수 설비 (N=417)	충족(N=292)	62(67.4)	111(64.2)	59(78.7)	60(77.9)
	일부충족(N=57)	11(12.0)	23(13.3)	12(16.0)	11(14.3)
	미충족(N=50)	12(13.0)	32(18.5)	3(4.0)	3(3.9)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비품 구비 (N=417)	충족(N=353)	75(81.5)	146(84.4)	67(89.3)	65(84.4)
	일부충족(N=34)	7(7.6)	14(8.1)	5(6.7)	8(10.4)
	미충족(N=12)	3(3.3)	6(3.5)	2(2.7)	1(1.3)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담당자 지정 (N=42)	충족(N=293)	57(62.0)	118(68.2)	61(81.3)	57(74.0)
	일부충족(N=71)	18(19.6)	29(16.8)	10(13.3)	14(18.2)
	미충족(N=35)	10(10.9)	19(11)	3(4.0)	3(3.9)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휴게시설 청결유지 (N=417)	충족(N=363)	74(80.4)	148(85.5)	72(96.0)	69(89.6)
	일부충족(N=35)	10(10.9)	18(10.4)	2(2.7)	5(6.5)
	미충족(N=1)	1(1.1)	-	-	-
	결측치(N=1)	-	-	-	1(1.3)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구분		상시 근로자수(N=417)			
		20인 미만 (N=92)	20인~50인 미만 (N=173)	50인~100인 미만 (N=75)	100인 이상 (N=77)
표지판부착 (N=417)	충족(N=299)	59(64.1)	126(72.8)	58(77.3)	56(72.7)
	일부충족(N=55)	10(10.9)	21(12.1)	10(13.3)	14(18.2)
	미충족(N=44)	16(17.4)	19(11.0)	6(8.0)	3(3.9)
	결측치(N=2)	-	-	-	2(2.6)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417)	그렇다(N=44)	9(9.8)	21(12.1)	8(10.7)	6(7.8)
	일부그렇다(N=62)	12(13.0)	28(16.2)	12(16.0)	10(13.0)
	그렇지않다(N=292)	64(69.6)	117(67.6)	54(72)	57(74.0)
	결측치(N=2)	-	-	-	2(2.6)
	해당없음(N=17)	7(7.6)	7(4.0)	1(1.3)	2(2.6)

\* 복수응답

## (2) 비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 결과

비제조업은 총 1,048개소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표 III-10>. 1,048개소 중에 75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휴게 외 회의실, 탈의실, 기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휴게시설 평균면적, 동시사용인원은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난방시설, 습도기준, 조명기준, 환기가능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휴게시설 청결유지, 휴게시설 내 식수 구비,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항목의 충족 비율은 59.8~76.3%로 작년과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나 습도기준 항목은 올해 충족비율이 64.4~79.3%로 작년에 비해 약 10.5~11.5%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비제조업 규모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사업장 위치 (N=1,048)	산업단지(N=154)	40(11.2)	50(16.7)	42(25.6)	22(9.6)
	지식산업센터(N=11)	4(1.1)	2(0.7)	-	5(2.2)
	기타(N=796)	235(66.0)	241(80.6)	120(73.2)	200(87.3)
	결측치(N=8)	2(0.6)	3(1.0)	1(0.6)	2(0.9)
	해당없음(N=79)	75(21.1)	3(1.0)	1(0.6)	-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1,048)	예(N=831)	212(59.6)	251(83.9)	151(92.1)	217(94.8)
	아니요(N=131)	67(18.8)	43(14.4)	10(6.1)	11(4.8)
	결측치(N=7)	2(0.6)	2(0.7)	2(1.2)	1(0.4)
	해당없음(N=79)	75(21.1)	3(1.0)	1(0.6)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1,048)	있음(N=456)	92(25.8)	114(38.1)	73(44.5)	177(77.3)
	없음(N=592)	264(74.2)	185(61.9)	91(55.5)	52(22.7)
협력업체 휴게시설 유무 (N=1,048)	예(N=404)	65(18.3)	102(34.1)	67(40.9)	170(74.2)
	아니요(N=52)	27(7.6)	12(4.0)	6(3.7)	7(3.1)
	해당없음(N=592)	264(74.2)	185(61.9)	91(55.5)	52(22.7)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1,048)	원청 휴게시설 이용 (N=211)	37(10.4)	52(17.4)	31(18.9)	91(39.7)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154)	20(5.6)	41(13.7)	31(18.9)	62(27.1)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 과 따로 이용(N=29)	5(1.4)	8(2.7)	4(2.4)	12(5.2)
	기타(N=9)	2(0.6)	1(0.3)	1(0.6)	5(2.2)
	결측치(N=1)	1(0.3)	-	-	-
	해당없음(N=644)	291(81.7)	197(65.9)	97(59.1)	59(25.8)
휴게시설 유무 (N=1,048)	예(N=973)	305(85.7)	285(95.3)	159(97)	224(97.8)
	아니요(N=75)	51(14.3)	14(4.7)	5(3.0)	5(2.2)
휴게시설 전용사용 (N=1,048)	예(N=662)	190(53.4)	206(68.9)	107(65.2)	159(69.4)
	아니요(N=311)	115(32.3)	79(26.4)	52(31.7)	65(28.4)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휴게 외 다른목적으 로 사용되는 용도* (N=311)	회의실(N=93)	36(31.3)	22(27.8)	20(38.5)	15(23.1)
	탈의실(N=135)	41(35.7)	41(51.9)	19(36.5)	34(52.3)
	식당(N=46)	18(15.7)	16(20.3)	5(9.6)	7(10.8)
	기타(N=78)	31(27.0)	13(16.5)	16(30.8)	18(27.7)
휴게시설 개수 (N=1,048)	1개(N=434)	192(53.9)	134(44.8)	62(37.8)	46(20.1)
	2개(N=230)	72(20.2)	72(24.1)	34(20.7)	52(22.7)
	3개이상(N=309)	41(11.5)	79(26.4)	63(38.4)	126(55.0)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휴게시설 평균면적	49.4±66.3	58.3±138.7	72.2±93.5	94.4±151.5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0명	약 14.8명	약 19.2명	약 32.1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946)	교대근무(N=227)	44(12.4)	65(21.7)	39(23.8)	79(34.5)
	외근(N=63)	18(5.1)	17(5.7)	13(7.9)	15(6.6)
	작업형태(N=212)	63(17.7)	72(24.1)	35(21.3)	42(18.3)
	휴식주기(N=386)	113(31.7)	125(41.8)	66(40.2)	82(35.8)
	기타(N=58)	18(5.1)	13(4.3)	11(6.7)	16(7.0)
휴게시설 위치* (N=1,061)	건물내지상(N=802)	234(65.7)	248(82.9)	142(86.6)	178(77.7)
	건물내지하(N=145)	58(16.3)	20(6.7)	13(7.9)	54(23.6)
	건물옥상(N=9)	2(0.6)	4(1.3)	2(1.2)	1(0.4)
	건물밖(N=48)	19(5.3)	18(6.0)	4(2.4)	7(3.1)
	근무외장소(N=57)	17(4.8)	16(5.4)	9(5.5)	15(6.6)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1,048)	충족(N=847)	276(77.5)	268(89.6)	138(84.1)	165(72.1)
	일부충족(N=103)	20(5.6)	17(5.7)	19(11.6)	47(20.5)
	미충족(N=22)	9(2.5)	-	1(0.6)	12(5.2)
	결측치(N=1)	-	-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1,048)	충족(N=855)	273(76.7)	261(87.3)	144(87.8)	177(77.3)
	일부충족(N=95)	24(6.7)	19(6.4)	12(7.3)	40(17.5)
	미충족(N=21)	8(2.2)	4(1.3)	2(1.2)	7(3.1)
	결측치(N=2)	-	1(0.3)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1,048)	충족(N=854)	269(75.6)	260(87.0)	144(87.8)	181(79.0)
	일부충족(N=93)	26(7.3)	21(7.0)	13(7.9)	33(14.4)
	미충족(N=23)	10(2.8)	2(0.7)	1(0.6)	10(4.4)
	결측치(N=3)	-	2(0.7)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천장 높이 2.1 m 이상 (N=1,048)	충족(N=897)	285(80.1)	272(91.0)	149(90.9)	191(83.4)
	일부충족(N=55)	8(2.2)	10(3.3)	9(5.5)	28(12.2)
	미충족(N=16)	12(3.4)	-	-	4(1.7)
	결측치(N=5)	-	3(1.0)	1(0.6)	1(0.4)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냉방시설 (N=1,048)	충족(N=875)	269(75.6)	267(89.3)	150(91.5)	189(82.5)
	일부충족(N=81)	28(7.9)	15(5.0)	8(4.9)	30(13.1)
	미충족(N=16)	8(2.2)	3(1.0)	-	5(2.2)
	결측치(N=1)	-	-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난방시설 (N=1,048)	충족(N=876)	268(75.3)	271(90.6)	151(92.1)	186(81.2)
	일부충족(N=81)	29(8.1)	14(4.7)	7(4.3)	31(13.5)
	미충족(N=15)	8(2.2)	-	-	7(3.1)
	결측치(N=1)	-	-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습도기준 (N=1,048)	충족(N=758)	229(64.3)	236(78.9)	130(79.3)	163(71.2)
	일부충족(N=124)	43(12.1)	25(8.4)	18(11.0)	38(16.6)
	미충족(N=89)	33(9.3)	24(8.0)	10(6.1)	22(9.6)
	결측치(N=2)	-	-	1(0.6)	1(0.4)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조명기준 (N=1,048)	충족(N=885)	281(78.9)	272(91.0)	145(88.4)	187(81.7)
	일부충족(N=73)	20(5.6)	10(3.3)	10(6.1)	33(14.4)
	미충족(N=14)	4(1.1)	3(1.0)	3(1.8)	4(1.7)
	결측치(N=1)	-	-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환기가능 (N=1,048)	충족(N=730)	228(64)	233(77.9)	128(78.0)	141(61.6)
	일부충족(N=158)	56(15.7)	36(12.0)	18(11.0)	48(21.0)
	미충족(N=83)	21(5.9)	15(5.0)	12(7.3)	35(15.3)
	결측치(N=2)	-	1(0.3)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소음노출 (N=1,048)	그렇다(N=174)	49(13.8)	36(12.0)	31(18.9)	58(25.3)
	일부그렇다(N=121)	28(7.9)	31(10.4)	15(9.1)	47(20.5)
	그렇지않다(N=677)	228(64.0)	218(72.9)	112(68.3)	119(52.0)
	결측치(N=1)	-	-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식수 설비 (N=1,048)	충족(N=723)	220(61.8)	229(76.6)	112(68.3)	162(70.7)
	일부충족(N=167)	55(15.4)	34(11.4)	33(20.1)	45(19.7)
	미충족(N=80)	30(8.4)	20(6.7)	13(7.9)	17(7.4)
	결측치(N=3)	-	2(0.7)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구분		상시 근로자수(N=1,048)			
		20인 미만 (N=356)	20인~50인 미만 (N=299)	50인~100인 미만 (N=164)	100인 이상 (N=229)
비품 구비 (N=1,048)	충족(N=850)	269(75.6)	265(88.6)	133(81.1)	183(79.9)
	일부충족(N=94)	31(8.7)	14(4.7)	18(11)	31(13.5)
	미충족(N=27)	5(1.4)	5(1.7)	7(4.3)	10(4.4)
	결측치(N=2)	-	1(0.3)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담당자 지정 (N=1,048)	충족(N=718)	213(59.8)	221(73.9)	123(75.0)	161(70.3)
	일부충족(N=149)	47(13.2)	38(12.7)	25(15.2)	39(17.0)
	미충족(N=102)	45(12.6)	23(7.7)	10(6.1)	24(10.5)
	결측치(N=4)	-	3(1.0)	1(0.6)	-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휴게시설 청결유지 (N=1,048)	충족(N=857)	272(76.4)	261(87.3)	142(86.6)	182(79.5)
	일부충족(N=92)	32(9.0)	18(6.0)	14(8.5)	28(12.2)
	미충족(N=20)	1(0.3)	4(1.3)	2(1.2)	13(5.7)
	결측치(N=4)	-	2(0.7)	1(0.6)	1(0.4)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표지판부착 (N=1,048)	충족(N=705)	193(54.2)	228(76.3)	126(76.8)	158(69.0)
	일부충족(N=157)	59(16.6)	36(12)	20(12.2)	42(18.3)
	미충족(N=104)	53(14.9)	20(6.7)	11(6.7)	20(8.7)
	결측치(N=7)	-	1(0.3)	2(1.2)	4(1.7)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 (N=1,048)	그렇다(N=181)	54(15.2)	40(13.4)	32(19.5)	55(24.0)
	일부그렇다(N=155)	47(13.2)	35(11.7)	28(17.1)	45(19.7)
	그렇지않다(N=631)	204(57.3)	208(69.6)	98(59.8)	121(52.8)
	결측치(N=6)	-	2(0.7)	1(0.6)	3(1.3)
	해당없음(N=75)	51(14.3)	14(4.7)	5(3.0)	5(2.2)

\* 복수응답

### (3) 건설업 공사금액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 결과

건설업은 총 40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다<표 III-11>. 401개소 중 31개소를 제외한 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휴게 외 회의실, 기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환기가능, 소음노출, 식수설비, 담당자 지정, 표지판부착,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설 전용면적, 동시사용인원은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건설업 공사금액별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억 미만 (N=149)
사업장 위치 (N=401)	산업단지(N=172)	9(9.0)	79(52.0)	84(56.4)
	지식산업센터(N=67)	32(32.0)	30(19.7)	5(3.4)
	기타(N=147)	56(56.0)	35(23.0)	56(37.6)
	결측치(N=15)	3(3.0)	8(5.3)	4(2.7)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N=401)	예(N=393)	99(99.0)	148(97.4)	146(98.0)
	아니요(N=8)	1(1.0)	4(2.6)	3(2.0)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401)	있음(N=282)	61(61.0)	106(69.7)	115(77.2)
	없음(N=119)	39(39.0)	46(30.3)	34(22.8)
협력업체 휴게시설 유무 (N=401)	예(N=228)	30(30.0)	86(56.6)	112(75.2)
	아니요(N=54)	31(31.0)	20(13.2)	3(2.0)
	해당없음(N=119)	39(39.0)	46(30.3)	34(22.8)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401)	원청 휴게시설 이용 (N=94)	23(23.0)	16(10.5)	55(36.9)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67)	3(3.0)	24(15.8)	40(26.8)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59)	-	45(29.6)	14(9.4)
	기타(N=8)	4(4.0)	1(0.7)	3(2.0)
	해당없음(N=173)	70(70.0)	66(43.4)	37(24.8)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인 미만 (N=149)
휴게시설 유무 (N=401)	예(N=370)	87(87.0)	141(92.8)	142(95.3)
	아니요(N=31)	13(13.0)	11(7.2)	7(4.7)
휴게시설 전용사용 (N=401)	예(N=192)	32(32.0)	46(30.3)	114(76.5)
	아니요(N=178)	55(55.0)	95(62.5)	28(18.8)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N=271)	회의실(N=75)	3(3.0)	56(36.8)	16(10.7)
	탈의실(N=60)	5(5.0)	52(34.2)	3(2.0)
	식당(N=65)	11(11.0)	42(27.6)	12(8.1)
	기타(N=71)	47(47.0)	15(9.9)	9(6.0)
휴게시설 개수 (N=401)	1개(N=259)	80(80.0)	110(72.4)	69(46.3)
	2개(N=46)	3(3.0)	17(11.2)	26(17.4)
	3개이상(N=65)	4(4.0)	14(9.2)	47(31.5)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휴게시설 평균면적		37.1±32.3	42.16±30.6	114.0±297.1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1명	약 11명	약 22.1명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 (N=417)	교대근무(N=69)	1(1.0)	21(13.8)	47(31.5)
	외근(N=138)	31(31.0)	81(53.3)	26(17.4)
	작업형태(N=30)	12(12.0)	11(7.2)	7(4.7)
	휴식주기(N=180)	17(17.0)	79(52.0)	84(56.4)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억 미만 (N=149)
휴게시설 위치* (N=531)	건물내지상(N=196)	21(23.1)	92(28.8)	83(39.3)
	건물내지하(N=86)	3(3.3)	66(20.6)	17(8.1)
	건물옥상(N=14)	3(3.3)	7(2.2)	4(1.9)
	건물밖(N=235)	60(65.9)	90(28.1)	85(40.3)
	근무외장소(N=91)	4(4.4)	65(20.3)	22(10.4)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401)	충족(N=311)	62(62.0)	136(89.5)	113(75.8)
	일부충족(N=56)	25(25.0)	3(2.0)	28(18.8)
	미충족(N=1)	-	1(0.7)	-
	결측치(N=2)	-	1(0.7)	1(0.7)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401)	충족(N=279)	81(81.0)	103(67.8)	95(63.8)
	일부충족(N=20)	1(1.0)	7(4.6)	12(8.1)
	미충족(N=69)	5(5.0)	30(19.7)	34(22.8)
	결측치(N=2)	-	1(0.7)	1(0.7)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401)	충족(N=300)	62(62.0)	125(82.2)	113(75.8)
	일부충족(N=33)	2(2.0)	8(5.3)	23(15.4)
	미충족(N=35)	23(23.0)	7(4.6)	5(3.4)
	결측치(N=2)	-	1(0.7)	1(0.7)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인 미만 (N=149)
천장 높이 2.1 m 이상 (N=401)	충족(N=355)	86(86.0)	136(89.5)	133(89.3)
	일부충족(N=11)	1(1.0)	2(1.3)	8(5.4)
	미충족(N=3)	-	2(1.3)	1(0.7)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냉방시설 (N=401)	충족(N=250)	66(66.0)	70(46.1)	114(76.5)
	일부충족(N=25)	2(2.0)	3(2.0)	20(13.4)
	미충족(N=94)	19(19.0)	67(44.1)	8(5.4)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난방시설 (N=401)	충족(N=305)	74(74.0)	118(77.6)	113(75.8)
	일부충족(N=33)	3(3.0)	7(4.6)	23(15.4)
	미충족(N=31)	10(10.0)	15(9.9)	6(4.0)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습도기준 (N=401)	충족(N=173)	43(43.0)	43(28.3)	87(58.4)
	일부충족(N=128)	8(8.0)	79(52.0)	41(27.5)
	미충족(N=68)	36(36)	18(11.8)	14(9.4)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억 미만 (N=149)
조명기준 (N=401)	충족(N=309)	60(60.0)	132(86.8)	117(78.5)
	일부충족(N=22)	2(2.0)	3(2.0)	17(11.4)
	미충족(N=36)	23(23.0)	5(3.3)	8(5.4)
	결측치(N=3)	2(2.0)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환기가능 (N=401)	충족(N=343)	80(80.0)	131(86.2)	132(88.6)
	일부충족(N=15)	3(3.0)	3(2.0)	9(6.0)
	미충족(N=11)	4(4.0)	6(3.9)	1(0.7)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소음노출 (N=401)	그렇다(N=123)	13(13.0)	75(49.3)	35(23.5)
	일부그렇다(N=35)	4(4.0)	3(2.0)	28(18.8)
	그렇지않다(N=208)	68(68.0)	62(40.8)	78(52.3)
	결측치(N=4)	2(2.0)	1(0.7)	1(0.7)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식수 설비 (N=401)	충족(N=325)	59(59.0)	132(86.8)	134(89.9)
	일부충족(N=13)	1(1.0)	4(2.6)	8(5.4)
	미충족(N=31)	27(27.0)	4(2.6)	-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구분		공사금액(N=401)		
		20억 미만 (N=100)	20억~50억 미만 (N=152)	50억~100인 미만 (N=149)
비품 구비 (N=401)	충족(N=315)	60(60.0)	128(84.2)	127(85.2)
	일부충족(N=19)	2(2.0)	5(3.3)	12(8.1)
	미충족(N=35)	25(25.0)	7(4.6)	3(2.0)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담당자 지정 (N=401)	충족(N=301)	58(58.0)	119(78.3)	124(83.2)
	일부충족(N=17)	2(2.0)	2(1.3)	13(8.7)
	미충족(N=51)	27(27.0)	19(12.5)	5(3.4)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휴게시설 청결유지 (N=401)	충족(N=299)	50(50.0)	127(83.6)	122(81.9)
	일부충족(N=22)	2(2.0)	3(2.0)	17(11.4)
	미충족(N=48)	35(35.0)	10(6.6)	3(2.0)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표지판부착 (N=401)	충족(N=294)	47(47.0)	115(75.7)	132(88.6)
	일부충족(N=13)	2(2.0)	3(2.0)	8(5.4)
	미충족(N=62)	38(38.0)	22(14.5)	2(1.3)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사용 (N=401)	그렇다(N=148)	34(34.0)	73(48.0)	41(27.5)
	일부그렇다(N=25)	3(3.0)	7(4.6)	15(10.1)
	그렇지않다(N=196)	50(50.0)	60(39.5)	86(57.7)
	결측치(N=1)	-	1(0.7)	-
	해당없음(N=31)	13(13.0)	11(7.2)	7(4.7)

\* 복수응답

## 6) 제조업 세부업종별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 (1) 식료품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식료품 제조업은 총 29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29개소 중 20인 미만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고,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식당 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냉방시설, 난방시설, 습도기준, 조명기준, 환기가능, 소음노출, 식수설비, 비품구매, 담당자 지정으로 나타났다<표 III-12>.

<표 Ⅲ-12> 식료품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사업장 위치 (N=29)	산업단지(N=10)	2(33.3)	3(42.9)	5(45.5)	-
	지식산업센터(N=2)	2(33.3)	-	-	-
	기타(N=17)	2(33.3)	4(57.1)	6(54.5)	5(100)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29)	예(N=28)	5(83.3)	7(100)	11(100)	5(100)
	아니요(N=1)	1(16.7)	-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29)	있음(N=12)	2(33.3)	2(28.6)	5(4.5)	3(60.0)
	없음(N=17)	4(66.7)	5(71.4)	6(54.5)	2(40.0)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29)	예(N=12)	2(33.3)	2(28.6)	5(45.5)	3(60.0)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17)	4(66.7)	5(71.4)	6(54.5)	2(40.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29)	원청 휴게시설 이용(N=8)	1(16.7)	2(28.6)	3(27.3)	2(40.0)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4)	1(16.7)	-	2(18.2)	1(20.0)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0)	-	-	-	-
	기타(N=0)	-	-	-	-
	해당없음 (N=17)	1(16.7)	5(71.4)	6(54.5)	2(40.0)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휴게시설 유무 (N=29)	예(N=28)	5(83.3)	7(100)	11(100)	5(100)
	아니요(N=1)	1(16.7)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29)	예(N=22)	3(50.0)	6(85.7)	10(90.9)	3(60.0)
	아니요(N=6)	2(33.3)	1(14.3)	1(9.1)	2(40.0)
	해당없음(N=1)	1(16.7)	-	-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6)	회의실(N=1)	1(50.0)	-	-	-
	탈의실(N=4)	2(100)	1(100)	1(100)	1(50.0)
	식당(N=1)	-	-	-	1(50.0)
	기타(N=0)	-	-	-	-
휴게시설 개수 (N=29)	1개(N=10)	3(50.0)	2(28.6)	3(27.3)	2(40.0)
	2개(N=13)	2(33.3)	4(57.1)	4(36.4)	3(60.0)
	3개이상(N=5)	-	1(14.3)	4(36.4)	-
	해당없음(N=1)	1(16.7)	-	-	-
휴게시설 평균면적		28.1±26.3	21.0±12.5	67.4±54.8	89±110.6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3.4명	약 17.4명	약 24.6명	약 88.4명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29)	교대근무(N=3)	1(16.7)	—	1(9.1)	1(60.0)
	외근(N=1)	1(16.7)	—	—	—
	작업형태(N=13)	2(33.3)	—	4(36.4)	2(40.0)
	휴식주기(N=13)	1(16.7)	—	9(81.8)	2(40.0)
	기타(N=3)	1(16.7)	—	—	2(40.0)
휴게시설 위치* (N=29)	건물내지상(N=26)	5(83.3)	—	11(100)	5(100)
	건물내지하(N=0)	—	—	—	—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0)	—	—	—	—
	근무외장소(N=2)	—	—	—	2(40.0)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29)	충족(N=26)	5(83.3)	6(85.7)	10(90.9)	5(100)
	일부충족(N=2)	—	1(14.3)	1(9.1)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29)	충족(N=27)	5(83.3)	7(100)	11(100)	4(80.0)
	일부충족(N=1)	—	—	—	1(2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29)	충족(N=27)	4(66.7)	7(100)	11(100)	5(100)
	일부충족(N=1)	1(16.7)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29)	충족(N=27)	5(83.3)	7(100)	10(90.9)	5(100)
	일부충족(N=1)	-	-	1(9.1)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냉방시설 (N=29)	충족(N=25)	5(83.3)	6(85.7)	10(90.9)	4(80.0)
	일부충족(N=1)	-	-	-	1(20.0)
	미충족(N=2)	-	1(14.3)	1(9.1)	-
	해당없음(N=1)	1(16.7)	-	-	-
난방시설 (N=29)	충족(N=27)	5(83.3)	7(100)	10(90.9)	5(8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1)	-	-	1(9.1)	-
	해당없음(N=1)	1(16.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습도기준 (N=29)	충족(N=23)	5(83.3)	4(57.1)	10(90.9)	4(80.0)
	일부충족(N=3)	-	2(28.6)	-	1(20.0)
	미충족(N=2)	-	1(14.3)	1(9.1)	-
	해당없음(N=1)	1(16.7)	-	-	-
조명기준 (N=29)	충족(N=27)	5(83.3)	6(85.7)	11(100.0)	5(100)
	일부충족(N=1)	-	1(14.3)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환기가능 (N=29)	충족(N=23)	3(50.0)	7(100)	9(81.8)	4(80.0)
	일부충족(N=2)	1(16.7)	-	1(9.1)	-
	미충족(N=3)	1(16.7)	-	1(9.1)	1(20.0)
	해당없음(N=1)	1(16.7)	-	-	-
소음노출 (N=29)	그렇다(N=2)	1(16.7)	1(14.3)	-	-
	일부그렇다(N=2)	-	1(14.3)	1(9.1)	-
	그렇지않다(N=24)	4(66.7)	5(71.4)	10(90.9)	5(100)
	해당없음(N=1)	1(16.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식수 설비 (N=29)	충족(N=18)	2(33.3)	3(42.9)	8(72.7)	5(100)
	일부충족(N=7)	2(33.3)	3(42.9)	2(18.2)	-
	미충족(N=3)	1(16.7)	1(14.3)	1(9.1)	-
	해당없음(N=1)	1(16.7)	-	-	-
비품 구비 (N=29)	충족(N=25)	5(83.3)	6(85.7)	10(90.9)	4(80.0)
	일부충족(N=2)	-	1(14.3)	-	1(20.0)
	미충족(N=1)	-	-	1(9.1)	-
	해당없음(N=1)	1(16.7)	-	-	-
담당자 지정 (N=29)	충족(N=21)	4(66.7)	5(71.4)	9(81.8)	3(60.0)
	일부충족(N=4)	1(16.7)	1(14.3)	1(9.1)	1(20.0)
	미충족(N=3)	-	1(14.3)	1(9.1)	1(20.0)
	해당없음(N=1)	1(16.7)	-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29)	충족(N=27)	4(66.7)	7(100)	11(100)	5(100)
	일부충족(N=1)	1(16.7)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9)			
		20인 미만 (N=6)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11)	100인 이상 (N=5)
표지판부착 (N=29)	충족(N=24)	5(83.3)	6(85.7)	9(81.8)	4(80.0)
	일부충족(N=4)	-	1(14.3)	2(18.2)	1(2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16.7)	-	-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29)	그렇다(N=0)	-	-	-	-
	일부그렇다(N=3)	1(16.7)	-	1(9.1)	1(20.0)
	그렇지않다(N=25)	4(66.7)	7(100)	10(90.9)	4(80.0)
	해당없음(N=1)	1(16.7)	-	-	-

\* 복수응답

##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총 34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표 III-13>. 34개소 중 20인 미만 1개소, 20인~50인 미만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고,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식당 순이었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습도(20인 미만 14.3%(N=1), 20인~50인 17.6%, 100인 이상 33.3%(N=1), 소음(20인 미만 14.3%(N=1), 20인~50인 11.8%), 식수(20인 미만 14.3%(N=1), 20인~50인 36.3%)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

<표 Ⅲ-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사업장 위치 (N=34)	산업단지(N=18)	2(28.6)	8(47.1)	7(100)	1(33.3)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16)	5(71.4)	9(52.9)	-	2(66.7)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34)	예(N=33)	6(85.7)	17(35.3)	7(100)	3(100)
	아니요(N=1)	1(14.3)	-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34)	있음(N=22)	4(57.1)	9(52.9)	6(85.7)	3(100)
	없음(N=12)	3(42.9)	8(47.1)	1(14.3)	-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34)	예(N=22)	4(57.1)	9(52.9)	6(85.7)	3(100)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12)	3(42.9)	8(47.1)	1(14.3)	-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34)	원청 휴게시설 이용 (N=16)	3(42.9)	7(41.2)	3(42.9)	3(100)
	원청이 설치하고 원 청과 따로 이용 (N=5)	-	2(11.8)	3(42.9)	-
	하청이 설치하고 원 청과 따로 이용 (N=1)	1(14.3)	-	-	-
	해당없음(N=12)	3(42.9)	8(47.1)	1(14.3)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휴게시설 유무 (N=34)	예(N=32)	6(85.7)	16(94.1)	7(100)	3(100)
	아니요(N=2)	1(14.3)	1(5.9)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34)	예(N=24)	3(42.9)	11(64.7)	7(100)	3(100)
	아니요(N=8)	3(42.9)	5(29.4)	-	-
	해당없음(N=2)	1(14.3)	1(5.9)	-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8)	회의실(N=1)	-	1(20.0)	-	-
	탈의실(N=6)	2(66.7)	4(80.0)	-	-
	식당(N=1)	1(33.3)	-	-	-
	기타(N=0)	-	-	-	-
휴게시설 개수 (N=34)	1개(N=9)	3(42.9)	5(29.4)	-	1(33.3)
	2개(N=9)	1(14.3)	5(29.4)	3(42.9)	-
	3개이상(N=14)	2(28.6)	6(35.3)	4(57.1)	2(66.7)
	해당없음(N=2)	1(14.3)	1(5.9)	-	-
휴게시설 평균면적		30.0±15.7	50.1±28.2	88±78.7	22.3±17.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3.6명	약 18명	약 42.3명	약 15명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62)	교대근무(N=14)	1(14.3)	6(35.3)	7(100)	-
	외근(N=1)	1(14.3)	-	-	-
	작업형태(N=19)	-	16(94.1)	2(28.6)	1(33.3)
	휴식주기(N=26)	3(42.9)	16(94.1)	7(100)	-
	기타(N=2)	1(14.3)	-	1(14.3)	-
휴게시설 위치* (N=34)	건물내지상(N=27)	6(85.7)	13(76.5)	6(85.7)	2(66.7)
	건물내지하(N=3)	-	1(5.9)	1(14.3)	1(33.3)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2)	-	2(11.7)	-	-
	근무외장소(N=0)	-	-	-	-
	결측값(N=2)	1(14.2)	1(5.9)	-	-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34)	충족(N=28)	6(85.7)	15(88.2)	6(85.7)	1(33.3)
	일부충족(N=4)	-	1(5.9)	1(14.3)	2(66.7)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14.3)	1(5.9)	-	-
유해물질 격리된 장소 (N=34)	충족(N=27)	5(71.4)	15(88.2)	4(57.1)	3(100)
	일부충족(N=5)	1(14.3)	1(5.9)	3(42.9)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14.3)	1(5.9)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34)	충족(N=30)	6(85.7)	16(94.1)	5(71.4)	3(100)
	일부충족(N=2)	-	-	2(28.6)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14.3)	1(5.9)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34)	충족(N=31)	6(85.7)	15(88.2)	7(100)	3(100)
	일부충족(N=1)	-	1(5.9)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14.3)	1(5.9)	-	-
냉방시설 (N=34)	충족(N=27)	6(85.7)	13(76.5)	6(85.7)	2(66.7)
	일부충족(N=3)	-	3(17.6)	-	-
	미충족(N=2)	-	-	1(14.3)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	-
난방시설 (N=34)	충족(N=26)	6(85.7)	12(70.6)	6(85.7)	2(66.7)
	일부충족(N=4)	-	4(23.5)	-	-
	미충족(N=2)	-	-	1(14.3)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습도기준 (N=34)	충족(N=18)	4(57.7)	10(58.8)	2(28.6)	2(66.7)
	일부충족(N=9)	1(14.3)	3(17.6)	5(71.4)	-
	미충족(N=5)	1(14.3)	3(17.6)	-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	-
조명기준 (N=34)	충족(N=28)	6(85.7)	14(82.4)	6(85.7)	2(66.7)
	일부충족(N=3)	-	2(11.8)	1(14.3)	-
	미충족(N=1)	-	-	-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	-
환기가능 (N=34)	충족(N=28)	6(85.7)	15(88.2)	5(71.4)	2(66.7)
	일부충족(N=3)	-	1(5.9)	2(28.6)	-
	미충족(N=1)	-	-	-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	-
소음노출 (N=34)	그렇다(N=3)	1(14.3)	2(11.8)	-	-
	일부그렇다(N=4)	-	2(11.8)	2(28.6)	-
	그렇지않다(N=25)	5(71.4)	12(70.6)	5(71.4)	3(100)
	해당없음(N=2)	1(14.3)	1(5.9)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식수 설비 (N=34)	충족(N=20)	5(71.4)	7(41.2)	5(71.4)	3(100)
	일부충족(N=5)	-	3(17.6)	2(28.6)	-
	미충족(N=18)	1(14.3)	6(35.3)	-	-
	해당없음(N=2)	1(14.3)	1(5.9)		
비품 구비 (N=34)	충족(N=28)	6(85.7)	14(82.4)	6(85.7)	2(66.7)
	일부충족(N=3)	-	1(5.9)	1(14.3)	1(33.3)
	미충족(N=1)	-	1(5.9)	-	-
	해당없음(N=2)	1(14.3)	1(5.9)		
담당자 지정 (N=34)	충족(N=23)	4(57.1)	11(64.7)	7(100)	1(33.3)
	일부충족(N=6)	1(14.3)	4(23.5)	-	1(33.3)
	미충족(N=3)	1(14.3)	1(5.9)	-	1(33.3)
	해당없음(N=2)	1(14.3)	1(5.9)		
휴게시설 청결유지 (N=34)	충족(N=29)	5(71.4)	15(88.2)	7(100)	2(66.7)
	일부충족(N=2)	-	1(5.9)	-	1(33.3)
	미충족(N=1)	1(14.3)	-	-	-
	해당없음(N=2)	1(14.3)	1(5.9)		

구분		상시근로자 수(N=34)			
		20인 미만 (N=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3)
표지판 부착 (N=34)	충족(N=24)	3(42.9)	14(82.4)	5(71.4)	2(66.7)
	일부충족(N=4)	1(14.3)	1(5.9)	1(14.3)	1(50.0)
	미충족(N=4)	2(28.6)	1(5.9)	1(14.3)	-
	해당없음(N=2)	1(14.3)	1(5.9)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34)	그렇다(N=3)	1(14.3)	1(5.9)	1(14.3)	-
	일부그렇다(N=5)	-	3(17.6)	2(28.6)	-
	그렇지않다(N=24)	5(71.4)	12(70.6)	4(57.1)	3(100)
	해당없음(N=2)	1(14.3)	1(5.9)		

\* 복수응답

### (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30개소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식료품 제조업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다르게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과 공용(전용이 아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식당, 회의실 순이었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습도(20인 미만 25%, 20인~50인 21.4%), 환기(20인 미만 37.5%), 식수(20인 미만 12.%, 20인~50인 28.6%)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14>.

<표 Ⅲ-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8)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1)
사업장 위치 (N=30)	산업단지(N=17)	3(37.5)	8(57.1)	5(71.4)	1(100)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13)	5(62.5)	6(42.9)	2(28.6)	-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30)	예(N=17)	3(37.5)	8(57.1)	5(71.4)	1(100)
	아니요(N=13)	5(62.5)	6(42.9)	2(28.6)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30)	있음(N=9)	2(25.0)	3(21.4)	3(42.9)	1(100)
	없음(N=21)	6(75.0)	11(78.6)	4(57.1)	-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30)	예(N=8)	1(12.5)	3(21.4)	3(42.9)	1(100)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21)	6(75.0)	11(78.6)	4(57.1)	-
	결측값(N=1)	1(12.5)	-	-	-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8)	원청 휴게시설 이용 (N=8)	1(12.5)	3(21.4)	3(42.9)	1(100)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0)	-	-	-	-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1)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8)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1)
휴게시설 유무 (N=30)	예(N=30)	8(100)	14(100)	7(100)	1(100)
	아니요(N=0)	-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30)	예(N=18)	4(50.0)	9(64.3)	4(57.1)	1(100)
	아니요(N=12)	4(50.0)	5(35.7)	3(42.9)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되는 용도 (N=11)	회의실(N=2)	2(50.0)	1(20.0)	1(33.3)	-
	탈의실(N=8)	-	-	-	-
	식당(N=6)	-	1(20.0)	-	-
	기타(N=1)	1(25.0)	-	2(66.7)	-
휴게시설 개수 (N=30)	1개(N=13)	5(62.5)	7(50.0)	-	1(100)
	2개(N=7)	2(25.0)	2(14.3)	3(42.9)	-
	3개이상(N=10)	1(12.5)	4(28.6)	4(57.1)	1(100)
휴게시설 평균면적		19.9±13.5	13±521.8	63.7±46.3	15±150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7.8명	약 21.1명	약 44.3명	약 25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31)	교대근무(N=6)	2(25.0)	3(21.4)	1(14.3)	-
	외근(N=1)	-	1(7.1)	-	-
	작업형태(N=13)	4(50.0)	7(50.0)	2(28.6)	-
	휴식주기(N=8)	1(12.5)	3(21.4)	3(42.9)	1(100)
	기타(N=3)	1(12.5)	-	1(14.3)	1(100)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8)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1)
휴게시설 위치* (N=33)	건물내지상(N=27)	6(75.0)	14(100)	6(85.7)	1(100)
	건물내지하(N=0)	-	-	-	-
	건물옥상(N=1)	-	-	1(14.3)	-
	건물밖(N=1)	-	1(7.1)	-	-
	근무외장소(N=4)	2(25.0)	2(14.3)	-	-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30)	충족(N=28)	6(75.0)	14(100)	7(100)	1(100)
	일부충족(N=2)	2(25.0)	-	-	-
	미충족(N=0)	-	-	-	-
유해물질과 적대된 장소 (N=30)	충족(N=27)	7(87.5)	14(100)	6(85.7)	-
	일부충족(N=2)	-	-	1(14.3)	1(100)
	미충족(N=1)	1(12.5)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30)	충족(N=28)	8(100)	14(100)	6(85.7)	-
	일부충족(N=2)	-	-	1(14.3)	1(100)
	미충족(N=0)	-	-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30)	충족(N=29)	7(87.5)	14(100)	7(100)	1(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1)	1(12.5)	-	-	-
냉방시설 (N=30)	충족(N=24)	6(75.0)	11(78.6)	7(100)	-
	일부충족(N=5)	2(25.0)	2(14.3)	-	1(100)
	미충족(N=1)	-	1(7.1)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8)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1)
난방시설 (N=30)	충족(N=26)	7(87.5)	12(85.7)	7(100)	-
	일부충족(N=3)	1(12.5)	1(7.1)	-	1(100)
	미충족(N=1)	-	1(7.1)	-	-
습도기준 (N=30)	충족(N=21)	3(37.5)	10(71.4)	7(100)	1(100)
	일부충족(N=4)	3(37.5)	1(7.1)	-	-
	미충족(N=5)	2(25.0)	3(21.4)	-	-
조명기준 (N=30)	충족(N=29)	8(100)	13(92.9)	7(100)	1(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1)	-	1(7.1)	-	-
환기가능 (N=30)	충족(N=22)	5(62.5)	11(78.6)	6(85.7)	-
	일부충족(N=5)	-	3(21.4)	1(14.3)	1(100)
	미충족(N=3)	3(37.5)	-	-	-
소음노출 (N=30)	그렇다(N=2)	1(12.5)	1(7.1)	-	-
	일부그렇다(N=2)	1(12.5)	1(7.1)	-	-
	그렇지않다(N=26)	6(75.0)	12(85.7)	7(100)	1(100)
식수 설비 (N=30)	충족(N=21)	5(62.5)	9(64.3)	6(85.7)	1(100)
	일부충족(N=4)	2(25.0)	1(7.1)	1(14.3)	-
	미충족(N=5)	1(12.5)	4(28.6)	-	-
비품 구비 (N=30)	충족(N=26)	7(87.5)	12(85.7)	6(85.7)	1(100)
	일부충족(N=4)	1(12.5)	2(14.3)	1(14.3)	-
	미충족(N=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8)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7)	100인 이상 (N=1)
담당자 지정 (N=30)	충족(N=23)	5(62.5)	11(78.6)	6(85.7)	1(100)
	일부충족(N=5)	2(25.0)	2(14.3)	1(14.3)	-
	미충족(N=2)	1(12.5)	1(7.1)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30)	충족(N=26)	6(75.0)	13(92.9)	6(85.7)	1(100)
	일부충족(N=4)	2(25.0)	1(7.1)	1(14.3)	-
	미충족(N=0)	-	-	-	-
표지판 부착 (N=30)	충족(N=23)	5(62.5)	11(78.6)	6(85.7)	1(100)
	일부충족(N=5)	2(25.0)	2(14.3)	1(14.3)	-
	미충족(N=2)	1(12.5)	1(7.1)	-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N=30)	그렇다(N=4)	1(12.5)	2(14.3)	1(14.3)	-
	일부그렇다(N=0)	-	-	-	-
	그렇지않다(N=26)	7(87.5)	12(85.7)	6(85.7)	1(100)

\* 복수응답

#### (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은 총 44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44개소 중 20인~50인 미만 1개소, 50~100인 미만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식당, 식당 및 기타 순이었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냉방시설(20인~50인 10.0%), 습도기준(20인 미만 13.3%, 50인 이상 16.7%), 환기(20인~50인 10.0%), 식수설비(20인 미만 13.3%, 20인~50인 21.4%, 100인 이상 21.1%(N=1)), 비품구비(20인 미만 6.7%, 20인~50인 10.5%),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13.3%, 20인~50인 15.8%), 표지판부착(20인 미만 20.2%, 20인~50인 10.5%)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15>.

<표 Ⅲ-1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휴게시설 설치현황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사업장 위치 (N=44)	산업단지(N=28)	9(60.0)	12(63.2)	4(66.7)	3(75.0)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16)	6(40.0)	7(36.8)	2(33.3)	1(25.0)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44)	예(N=42)	14(93.3)	18(94.7)	6(100)	4(100)
	아니요(N=2)	1(6.7)	1(5.3)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44)	있음(N=19)	4(26.7)	7(36.8)	4(66.7)	4(100)
	없음(N=25)	11(73.3)	12(63.2)	2(33.3)	-
협력업체 휴게시설 유무 (N=44)	예(N=18)	4(26.7)	7(36.8)	3(50)	4(100)
	아니요(N=1)	-	-	1(16.7)	-
	해당없음(N=25)	11(73.3)	12(63.2)	2(33.3)	-
협력업체 휴게시설형 태 (N=44)	원청 휴게시설 이용 (N=9)	2(13.3)	4(21.1)	1(16.7)	2(50.0)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9)	2(13.3)	3(15.8)	2(33.3)	2(50.0)
	해당없음(N=26)	11(73.3)	12(63.2)	3(50.0)	-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휴게시설 유무 (N=44)	예(N=42)	15(100)	18(94.7)	5(83.3)	4(100)
	아니요(N=2)	-	1(5.3)	1(16.7)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44)	예(N=25)	9(60.0)	10(52.6)	4(66.7)	2(50.0)
	아니요(N=17)	6(40.0)	8(42.1)	1(16.7)	2(50.0)
	해당없음(N=2)	-	1(5.3)	1(16.7)	-
휴게 외 다른목적으 로 사용되는 용도* (N=17)	회의실(N=3)	1(16.7)	-	1(100)	1(50.0)
	탈의실(N=11)	2(33.3)	7(87.5)	1(100)	1(50.0)
	식당(N=4)	1(16.7)	1(12.5)	1(100)	1(50.0)
	기타(N=3)	2(33.3)	-	-	1(50.0)
휴게시설 개수 (N=44)	1개(N=19)	9(60.0)	7(36.8)	2(33.3)	1(25.0)
	2개(N=10)	3(20.0)	6(31.6)	1(16.7)	-
	3개이상(N=13)	3(20.0)	5(26.3)	2(33.3)	3(75.0)
	해당없음(N=2)	-	1(5.3)	1(16.7)	-
휴게시설 평균면적		36.27±28.2	77.2±71.5	95.2±102.8	150.2±130.5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1.2명	약 17명	약 22.8명	약 49명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 (N=42)	교대근무(N=5)	1(6.7)	2(10.5)	1(16.7)	1(25.0)
	외근(N=1)	-	-	-	1(25.0)
	작업형태(N=12)	4(26.7)	5(26.3)	1(16.7)	2(50.0)
	휴식주기(N=20)	8(53.3)	11(57.9)	-	1(25.0)
	기타(N=4)	1(6.7)	-	3(50.0)	-
휴게시설 위치* (N=45)	건물내지상(N=31)	9(60.0)	15(78.9)	3(50.0)	4(100)
	건물내지하(N=1)	1(6.7)	-	-	-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5)	2(13.3)	2(10.5)	1(16.7)	-
	근무외장소(N=8)	5(33.3)	2(10.5)	1(16.7)	-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N=44)	충족(N=39)	14(93.3)	16(84.2)	5(83.3)	4(100)
	일부충족(N=3)	1(6.7)	2(10.5)	-	-
	미충족(N=0)	-	1(5.3)	1(16.7)	-
	해당없음(N=2)	15(100)	19(100)	6(100)	4(100)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44)	충족(N=37)	13(86.7)	15(78.9)	5(83.3)	4(100)
	일부충족(N=5)	2(13.3)	3(15.8)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	1(5.3)	1(16.7)	-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44)	충족(N=36)	14(93.3)	14(73.7)	4(66.7)	4(100)
	일부충족(N=6)	1(6.7)	4(21.1)	1(16.7)	-
	미충족(N=0)				
	해당없음(N=2)	-	1(5.3)	1(16.7)	-
천장 높이 2.1 m 이상 (N=44)	충족(N=29)	14(93.3)	16(84.2)	5(83.3)	4(100)
	일부충족(N=2)	-	2(10.5)	-	-
	미충족(N=1)	1(6.7)	-	-	-
	해당없음(N=2)	-	1(5.3)	1(16.7)	-
냉방시설 (N=44)	충족(N=37)	14(93.3)	14(73.7)	5(83.3)	4(100)
	일부충족(N=3)	1(6.7)	2(10.5)	-	-
	미충족(N=2)	-	2(10.5)	-	-
	해당없음(N=2)	-	1(5.3)	1(16.7)	-
난방시설 (N=44)	충족(N=37)	13(86.7)	15(78.9)	5(83.3)	4(100)
	일부충족(N=4)	2(13.3)	2(10.5)	-	-
	미충족(N=1)	-	1(5.3)	-	-
	해당없음(N=2)	-	1(5.3)	1(16.7)	-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습도기준 (N=44)	충족(N=33)	13(86.7)	12(63.2)	4(66.7)	4(100)
	일부충족(N=3)	2(13.3)	-	1(16.7)	-
	미충족(N=6)	-	6(31.6)	-	-
	해당없음(N=2)	-	1(5.3)	1(16.7)	-
조명기준 (N=44)	충족(N=38)	13(86.7)	16(84.2)	5(83.3)	4(100)
	일부충족(N=4)	2(13.3)	2(10.5)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	1(5.3)	1(16.7)	-
환기가능 (N=44)	충족(N=38)	13(86.7)	16(84.2)	5(83.3)	4(100)
	일부충족(N=2)	2(13.3)	-	-	-
	미충족(N=2)	-	2(10.5)	-	-
	해당없음(N=2)	-	1(5.3)	1(16.7)	-
소음노출 (N=44)	그렇다(N=1)	1(6.7)	-	-	-
	일부그렇다(N=6)	2(13.3)	4(21.1)	-	-
	그렇지않다(N=35)	12(80)	14(73.7)	5(83.3)	4(100)
	해당없음(N=2)	-	1(5.3)	1(16.7)	-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식수 설비 (N=44)	충족(N=29)	11(73.3)	11(57.9)	5(83.3)	2(50.0)
	일부충족(N=6)	2(13.3)	3(15.8)	-	1(25.0)
	미충족(N=7)	2(13.3)	4(21.1)	-	1(25.0)
	해당없음(N=2)	-	1(5.3)	1(16.7)	-
비품 구비 (N=44)	충족(N=37)	14(93.3)	15(78.9)	5(83.3)	3(75.0)
	일부충족(N=2)	-	1(5.3)	-	1(25.0)
	미충족(N=3)	1(6.7)	2(10.5)	-	-
	해당없음(N=2)	-	1(5.3)	1(16.7)	-
담당자 지정 (N=44)	충족(N=31)	11(73.3)	14(73.7)	3(50.0)	3(75.0)
	일부충족(N=6)	2(13.3)	1(5.3)	2(33.3)	1(25.0)
	미충족(N=5)	2(13.3)	3(15.8)	-	-
	해당없음(N=2)	-	1(5.3)	1(16.7)	-
휴게시설 청결유지 (N=44)	충족(N=38)	13(86.7)	16(84.2)	5(83.3)	4(100)
	일부충족(N=4)	2(13.3)	2(10.5)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	1(5.3)	1(16.7)	-

구분		상시 근로자수(N=44)			
		20인 미만 (N=15)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4)
표지판부착 (N=44)	충족(N=31)	9(60.0)	13(68.4)	5(83.3)	4(100)
	일부충족(N=6)	3(20.0)	3(15.8)	-	-
	미충족(N=5)	3(20.0)	2(10.5)	-	-
	해당없음(N=2)	-	1(5.3)	1(16.7)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44)	그렇다(N=3)	-	2(10.5)	1(16.7)	-
	일부그렇다(N=6)	3(20.0)	1(5.3)	1(16.7)	1(25.0)
	그렇지않다(N=33)	12(80.0)	15(78.9)	3(50.0)	3(75.0)
	해당없음(N=2)	-	1(5.3)	1(16.7)	-

\* 복수응답

####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총 22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22개 소 중 20인 미만 1개소, 20인~50인 미만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고, 휴게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회의실, 기타 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환기가능, 식수설비, 담당자 지정, 청결유지,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으로 나타나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관리기준 미충족 항목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16>.

<표 Ⅲ-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사업장 위치 (N=22)	산업단지(N=14)	2(50.0)	5(50.0)	5(83.3)	2(100)
	지식산업센터(N=2)	2(50.0)	-	-	-
	기타(N=6)	-	5(50.0)	1(16.7)	-
사업장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22)	예(N=19)	2(50.0)	9(90.0)	6(100)	2(100)
	아니요(N=3)	2(50.0)	1(10.0)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22)	있음(N=9)	-	4(40.0)	4(66.7)	1(50.0)
	없음(N=13)	4(100)	6(60.0)	2(33.3)	1(50.0)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22)	예(N=9)	-	4(40.0)	4(66.7)	1(50.0)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13)	4(100)	6(60.0)	2(33.3)	1(50.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22)	원청 휴게시설 이용(N=7)	-	2(20.0)	4(66.7)	1(50.0)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2)	-	2(20.0)	-	-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0)	-	-	-	-
	해당없음(N=13)	4(100)	6(60.0)	2(33.3)	1(50.0)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휴게시설 유무 (N=22)	예(N=20)	3(75.0)	9(90.0)	6(100)	2(100)
	아니요(N=2)	1(25.0)	1(10.0)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22)	예(N=14)	2(50.0)	6(60.0)	4(66.7)	2(100)
	아니요(N=6)	1(25.0)	3(30.0)	2(33.3)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휴게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N=6)	회의실(N=3)	1(100)	1(25.0)	1(50.0)	-
	탈의실(N=0)	-	-	-	-
	식당(N=0)	-	-	-	-
	기타(N=3)	-	2(75.0)	1(50.0)	-
휴게시설 개수 (N=22)	1개(N=8)	2(50.0)	3(30.0)	3(50.0)	-
	2개(N=6)	1(25.0)	5(50.0)	-	-
	3개이상(N=6)	-	1(10.0)	3(50.0)	2(100)
	해당없음(N=2)	1(25.0)	1(10.0)	-	-
휴게시설 평균면적		28.6±15.3	29.2±20.9	43±98.0	187.5±22.5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3.3명	약 17.8명	약 26.3명	약 80명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	교대근무(N=5)	-	2(20.0)	3(50.0)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N=22)	외근(N=1)	-	-	1(16.7)	-
	작업형태(N=11)	2(50.0)	6(60.0)	1(16.7)	2(100)
	휴식주기(N=3)	1(25.0)	1(10.0)	1(16.7)	-
	기타(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휴게시설 위치* (N=23)	건물내지상(N=17)	3(75.0)	8(80.0)	5(83.3)	1(50.0)
	건물내지하(N=2)	-	1(10.0)	-	1(50.0)
	건물옥상(N=1)	-	1(10.0)	-	-
	건물밖(N=2)	-	1(10.0)	1(16.7)	-
	근무외장소(N=1)	-	1(10.0)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22)	충족(N=20)	3(75.0)	9(90.0)	6(100)	2(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22)	충족(N=17)	2(50.0)	7(70.0)	6(100)	2(100)
	일부충족(N=3)	1(25.0)	2(20.0)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22)	충족(N=18)	3(75.0)	7(70.0)	6(100)	2(100)
	일부충족(N=2)	-	2(20.0)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22)	충족(N=19)	3(75.0)	8(80.0)	6(100)	2(100)
	일부충족(N=1)	-	1(10.0)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냉방시설 (N=22)	충족(N=18)	3(75.0)	8(80.0)	5(83.3)	2(100)
	일부충족(N=2)	-	1(10.0)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난방시설 (N=22)	충족(N=16)	3(75.0)	8(80.0)	4(66.7)	1(50.0)
	일부충족(N=4)	-	1(10.0)	2(33.3)	1(5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습도기준 (N=22)	충족(N=18)	3(75.0)	8(80.0)	5(83.3)	2(100)
	일부충족(N=2)	-	1(10.0)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조명기준 (N=22)	충족(N=18)	3(75.0)	8(80.0)	5(83.3)	2(100)
	일부충족(N=2)	-	1(10.0)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환기가능 (N=22)	충족(N=19)	3(75.0)	8(80.0)	6(100)	2(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1)	-	1(10.0)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소음노출 (N=22)	그렇다(N=2)	-	2(20.0)	-	-
	일부그렇다(N=1)	1(25.0)	-	-	-
	그렇지않다(N=17)	2(50.0)	7(70.0)	6(100)	2(100)
	해당없음(N=2)	1(25.0)	1(10.0)	-	-
식수 설비 구비 (N=22)	충족(N=14)	2(50.0)	7(70.0)	4(66.7)	1(50.0)
	일부충족(N=3)	-	1(10.0)	2(33.3)	-
	미충족(N=3)	1(25.0)	1(10.0)	-	1(50.0)
	해당없음(N=2)	1(25.0)	1(10.0)	-	-
비품 구비 (N=22)	충족(N=18)	2(50.0)	9(90.0)	5(83.3)	2(100)
	일부충족(N=2)	1(25.0)	-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22)			
		20인 미만 (N=4)	20인~50인 미만 (N=10)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담당자 지정 (N=22)	충족(N=15)	3(75.0)	6(60.0)	4(66.7)	2(100)
	일부충족(N=4)	-	2(20.0)	2(33.3)	-
	미충족(N=1)	-	1(10.0)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휴게시설 청결 유지 (N=22)	충족(N=18)	3(75.0)	7(70.0)	6(100)	2(100)
	일부충족(N=2)	-	2(20.0)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표지판 부착 (N=22)	충족(N=19)	3(75.0)	8(80.0)	6(100)	2(100)
	일부충족(N=1)	-	1(10.0)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1(25.0)	1(10.0)	-	-
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 (N=22)	그렇다(N=4)	-	2(20.0)	2(33.3)	-
	일부그렇다(N=4)	1(25.0)	2(20.0)	1(16.7)	-
	그렇지않다(N=12)	2(50.0)	5(50.0)	3(50.0)	2(100)
	해당없음(N=2)	1(25.0)	1(10.0)	-	-

## 6) 비제조업 세부업종별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 (1) 보건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보건업은 대부분 병원으로 128개소 중 20인~50인 이상, 50인~100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92.9%, 91.4%, 92.5%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인 미만에서는 75.0%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환기가능(50인~100인 미만 14.3%), 소음노출(20인 미만 16.7%, 20인~50인 미만 28.6%, 100인 이상 32.8%), 식수설비(20인~50인 미만 21.4%), 비품구매(20인~50인 미만 14.3%, 50인~100인 미만 11.4%, 100인 이상 10.4%),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16.7%, 100인 이상 10.4%), 표지판 부착(20인 미만 16.7%, 20인~50인 미만 28.6%, 100인 이상 13.4%),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50인~100인 미만 34.3%, 100인 이상 35.8%) 항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미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17>. 이는 보건업(병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III-17> 보건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사업장 위치 (N=128)	산업단지(N=12)	1(8.3)	3(21.4)	5(14.3)	3(4.5)
	지식산업센터(N=3)	2(16.7)	-	-	1(1.5)
	기타(N=112)	9(7.5)	11(78.6)	30(85.7)	62(92.5)
	결측치(N=1)	-	-	-	1(1.5)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128)	예(N=122)	10(83.3)	12(85.7)	34(97.1)	66(98.5)
	아니요(N=6)	2(16.7)	2(14.3)	1(2.9)	1(1.5)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128)	있음(N=77)	4(33.3)	5(35.7)	16(45.7)	52(77.6)
	없음(N=51)	8(66.7)	9(64.3)	19(54.3)	15(22.4)
협력업체 근로자 (N=77)	예(N=68)	3(25.0)	3(21.4)	14(40.0)	48(71.6)
	아니요(N=9)	1(8.3)	2(14.3)	2(5.7)	4(6.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77)	원청 휴게시설 이용 (N=33)	-	1(7.1)	8(22.9)	24(35.8)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28)	1(8.3)	1(7.1)	6(17.1)	20(29.9)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5)	1(8.3)	1(7.1)	-	3(4.5)
	기타(N=2)	1(8.3)	-	-	1(1.5)
휴게시설 유무 (N=128)	예(N=116)	9(75.0)	13(92.9)	32(91.4)	62(92.5)
	아니요(N=12)	3(25.0)	1(7.1)	3(8.6)	5(7.5)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128)	예(N=71)	7(58.3)	9(64.3)	20(57.1)	35(52.2)
	아니요(N=45)	2(16.7)	4(28.6)	12(34.3)	27(40.3)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되는 용도* (N=50)	회의실(N=8)	-	-	3(25.0)	5(18.5)
	탈의실(N=27)	2(100)	3(75.0)	7(58.3)	15(55.6)
	식당(N=4)	-	-	1(8.3)	3(11.1)
	기타(N=11)	-	1(25.0)	2(16.7)	8(29.6)
휴게시설 개수 (N=128)	1개(N=47)	3(25.0)	10(71.4)	18(51.4)	16(23.9)
	2개(N=29)	4(33.3)	2(14.3)	5(14.3)	18(26.9)
	3개이상(N=40)	2(16.7)	1(7.1)	9(25.7)	28(41.8)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휴게시설 평균면적		31.4±26.0	50.39±65.7	55.3±87.5	57.5±83.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8.4명	약 10명	약 13명	약 18명
동시사용인 원 고려사항 (N=116)	교대근무(N=37)	3(23.1)	4(33.3)	6(18.8)	24(40.7)
	외근(N=16)	-	3(25.0)	7(21.9)	6(10.2)
	작업형태(N=12)	5(38.5)	-	4(12.5)	8(13.6)
	휴식주기(N=46)	5(38.5)	5(41.7)	15(46.9)	21(35.6)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휴게시설 위치 (N=128)	건물내지상(N=101)	9(100)	13(92.9)	26(72.2)	53(75.7)
	건물내지하(N=14)	—	1(7.1)	3(8.3)	10(14.3)
	건물옥상(N=3)	—	—	2(5.6)	1(1.4)
	건물밖(N=4)	—	—	1(2.8)	3(4.3)
	근무외장소(N=7)	—	—	4(11.1)	3(4.3)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128)	충족(N=86)	9(75.0)	13(92.9)	26(74.3)	38(56.7)
	일부충족(N=22)	—	—	4(11.4)	18(26.9)
	미충족(N=7)	—	—	1(2.9)	6(9.0)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128)	충족(N=100)	9(75.0)	13(92.9)	27(77.1)	51(76.1)
	일부충족(N=11)	—	—	2(5.7)	9(13.4)
	미충족(N=4)	—	—	2(5.7)	2(3.0)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128)	충족(N=95)	8(66.7)	12(85.7)	28(80.0)	47(70.1)
	일부충족(N=15)	1(8.3)	—	3(8.6)	11(16.4)
	미충족(N=5)	—	1(7.1)	—	4(6.0)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천장 높이 2.1 m 이상 (N=128)	충족(N=105)	9(75.0)	13(92.9)	30(85.7)	53(79.1)
	일부충족(N=9)	-	-	1(2.9)	8(11.9)
	미충족(N=1)	-	-	-	1(1.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냉방시설 (N=128)	충족(N=102)	8(66.7)	13(92.9)	29(82.9)	52(77.6)
	일부충족(N=10)	1(8.3)	-	2(5.7)	7(10.4)
	미충족(N=3)	-	-	-	3(4.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난방시설 (N=128)	충족(N=101)	8(66.7)	13(92.9)	28(80.0)	52(77.6)
	일부충족(N=11)	1(8.3)	-	3(8.6)	7(10.4)
	미충족(N=3)	-	-	-	3(4.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습도기준 (N=128)	충족(N=95)	8(66.7)	13(92.9)	27(77.1)	47(70.1)
	일부충족(N=14)	1(8.3)	-	3(8.6)	10(14.9)
	미충족(N=6)	-	-	1(2.9)	5(7.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조명기준 (N=128)	충족(N=101)	9(75.0)	13(92.9)	28(80.0)	51(76.1)
	일부충족(N=10)	-	-	2(5.7)	8(11.9)
	미충족(N=4)	-	-	1(2.9)	3(4.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환기가능 (N=128)	충족(N=83)	7(58.3)	11(78.6)	24(68.6)	41(61.2)
	일부충족(N=22)	2(16.7)	1(7.1)	2(5.7)	17(25.4)
	미충족(N=10)	-	1(7.1)	5(14.3)	4(6.0)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소음노출 (N=128)	그렇다(N=31)	2(16.7)	4(28.6)	3(8.6)	22(32.8)
	일부그렇다(N=20)	-	-	6(17.1)	14(20.9)
	그렇지않다(N=64)	7(58.3)	9(64.3)	22(62.9)	26(38.8)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식수 설비 구비 (N=128)	충족(N=81)	8(66.7)	10(71.4)	22(62.9)	41(61.2)
	일부충족(N=23)	-	-	7(20.0)	16(23.9)
	미충족(N=11)	1(8.3)	3(21.4)	2(5.7)	5(7.5)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비품 구비 (N=128)	충족(N=87)	9(75.0)	11(78.6)	23(65.7)	44(65.7)
	일부충족(N=15)	-	-	4(11.4)	11(16.4)
	미충족(N=13)	-	2(14.3)	4(11.4)	7(10.4)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담당자 지정 (N=128)	충족(N=90)	6(50.0)	13(92.9)	26(74.3)	45(67.2)
	일부충족(N=15)	1(8.3)	-	4(11.4)	10(14.9)
	미충족(N=10)	2(16.7)	-	1(2.9)	7(10.4)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휴게시설 청결유지 (N=128)	충족(N=92)	9(75.0)	12(85.7)	27(77.1)	44(65.7)
	일부충족(N=16)	-	-	4(11.4)	12(17.9)
	미충족(N=7)	-	1(7.1)	-	6(9.0)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표지판 부착 (N=128)	충족(N=73)	5(41.7)	8(57.1)	23(65.7)	37(55.2)
	일부충족(N=24)	2(16.7)	1(7.1)	5(14.3)	16(23.9)
	미충족(N=18)	2(16.7)	4(28.6)	3(8.6)	9(13.4)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구분		상시근로자 수(N=128)			
		20인 미만 (N=12)	20인~50인 미만 (N=14)	50인~100인 미만 (N=35)	100인 이상 (N=67)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N=128)	그렇다(N=38)	1(8.3)	1(7.1)	12(34.3)	24(35.8)
	일부그렇다(N=24)	-	2(14.3)	4(11.4)	18(26.9)
	그렇지않다(N=53)	8(66.7)	10(71.4)	15(42.9)	20(29.9)
	결측치(N=1)	-	-	1(2.9)	-
	해당없음(N=12)	3(25.0)	1(7.1)	3(8.6)	5(7.5)

\* 복수응답

## (2)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총 110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고 시설급여제공기관, 재가급여제공기관 및 두기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은 20인 미만 57.6%, 20인~50인 미만 19.7%, 50인~100인 미만 3.0%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설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업무특성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외부(방문)에서 보내는 업무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소음노출(20인 미만 25.8%, 20인~50인 35.5%, 50인~100인 77.8%, 100인 이상 77.5%), 식수설비(20인~50인 미만 6.5%),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4.5%),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20인 미만 16.7%, 20인~50인 미만 25.8%, 50인 이상~100인 미만 44.4%, 100인 이상 50.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미충족 비율이 높았다<표 III-18>.

<표 III-18>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사회복지서비스업 종류 (N=110)	시설급여제공기관(N=6)	3(4.5)	2(6.5)	1(11.1)	-
	재가급여제공기관(N=4)	4(6.1)	-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N=100)	59(89.4)	29(93.5)	8(88.9)	4(100)
사업장 위치 (N=110)	산업단지(N=1)	1(1.5)	-	-	-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109)	65(98.5)	31(100)	9(100)	4(100)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110)	예(N=58)	35(53.0)	17(54.8)	5(55.6)	1(25.0)
	아니요(N=52)	31(47.0)	14(45.2)	4(44.4)	3(75.0)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110)	있음(N=40)	25(37.9)	8(25.8)	5(55.6)	2(50.0)
	없음(N=70)	41(62.1)	23(74.2)	4(44.4)	2(50.0)
협력업체 근로자 (N=40)	예(N=13)	5(20.0)	4(50.0)	3(60.0)	1(50.0)
	아니요(N=27)	20(80.0)	4(50.0)	2(40.0)	1(50.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13)	원청 휴게시설 이용(N=4)	3(60.0)	-	1(33.3)	-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9)	2(40.0)	4(100)	2(66.7)	1(100)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0)	-	-	-	-
	기타(N=0)	-	-	-	-
	해당없음(N=7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휴게시설 유무 (N=110)	예(N=57)	28(42.4)	18(27.3)	7(10.6)	4(6.1)
	아니요(N=53)	38(57.6)	13(19.7)	2(3.0)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110)	예(N=10)	6(9.1)	4(12.9)	-	-
	아니요(N=47)	22(33.3)	14(45.2)	7(77.8)	4(100)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57)	회의실(N=17)	7(28.0)	6(37.5)	3(27.3)	1(20.0)
	탈의실(N=13)	5(20.0)	4(25.0)	3(27.3)	1(20.0)
	식당(N=10)	4(16.0)	2(12.5)	3(27.3)	1(20.0)
	기타(N=17)	9(36.0)	4(25.0)	2(18.2)	2(40.0)
휴게시설 개수 (N=110)	1개(N=44)	20(30.3)	15(48.4)	5(55.6)	4(100)
	2개(N=9)	5(7.6)	2(6.5)	2(22.2)	-
	3개이상(N=4)	3(4.5)	1(3.2)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휴게시설 평균면적		10.6±3.9	15.1±10.5	41.9±79.3	59.4±103.7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6.0명	약 6.0명	약 7.2명	약 7.5명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 (N=57)	교대근무(N=2)	1(3.1)	-	1(14.3)	-
	외근(N=3)	2(6.3)	-	-	1(33.3)
	작업형태(N=11)	11(34.4)	2(13.3)	2(28.6)	1(33.3)
	휴식주기(N=33)	18(56.3)	13(86.7)	4(57.1)	1(33.3)
	기타(N=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휴게시설 위치* (N=62)	건물내지상(N=46)	23(76.7)	14(66.7)	5(71.4)	4(100)
	건물내지하(N=4)	2(6.7)	2(9.5)	—	—
	건물옥상(N=2)	1(3.3)	1(4.8)	—	—
	건물밖(N=5)	2(6.7)	2(9.5)	1(14.3)	—
	근무외장소(N=5)	2(6.7)	2(9.5)	1(14.3)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110)	충족(N=55)	28(42.4)	18(58.1)	6(66.7)	3(75.0)
	일부충족(N=2)	—	—	1(11.1)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110)	충족(N=53)	28(42.4)	17(54.8)	6(66.7)	2(50.0)
	일부충족(N=4)	—	1(3.2)	1(11.1)	2(5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110)	충족(N=51)	24(36.4)	17(54.8)	7(77.8)	3(75.0)
	일부충족(N=6)	4(6.1)	1(3.2)	—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	38(57.6)	13(41.9)	2(22.2)	—
천장 높이 2.1 m 이상 (N=110)	충족(N=52)	27(40.9)	17(54.8)	5(55.6)	3(75.0)
	일부충족(N=5)	1(1.5)	1(3.2)	2(22.2)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냉방시설 (N=110)	충족(N=47)	26(39.4)	12(38.7)	7(77.8)	2(50.0)
	일부충족(N=10)	2(3.0)	6(19.4)	—	2(5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난방시설 (N=110)	충족(N=48)	26(39.4)	14(45.2)	7(77.8)	1(25.0)
	일부충족(N=9)	2(3.0)	4(12.9)	—	3(7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습도기준 (N=110)	충족(N=55)	28(42.4)	18(58.1)	6(66.7)	3(75.0)
	일부충족(N=2)	—	—	1(11.1)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조명기준 (N=110)	충족(N=54)	28(42.4)	18(58.1)	6(66.7)	2(50.0)
	일부충족(N=3)	—	—	1(11.1)	2(50.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환기가능 (N=110)	충족(N=44)	22(33.3)	12(38.7)	7(77.8)	3(75.0)
	일부충족(N=13)	6(9.1)	6(19.4)	—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소음노출 (N=110)	그렇다(N=38)	17(25.8)	11(35.5)	7(77.8)	3(75.0)
	일부그렇다(N=7)	3(4.5)	3(9.7)	-	1(25.0)
	그렇지않다(N=12)	8(12.1)	4(12.9)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식수 설비 구비 (N=110)	충족(N=38)	20(30.3)	11(35.5)	5(55.6)	2(50.0)
	일부충족(N=15)	6(9.1)	5(16.1)	2(22.2)	2(50.0)
	미충족(N=4)	2(3.0)	2(6.5)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비품 구비 (N=110)	충족(N=56)	28(42.4)	17(54.8)	7(77.8)	4(100)
	일부충족(N=1)	-	1(3.2)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담당자 지정 (N=110)	충족(N=34)	16(24.2)	13(41.9)	4(44.4)	1(25.0)
	일부충족(N=19)	9(13.6)	4(12.9)	3(33.3)	3(75.0)
	미충족(N=4)	3(4.5)	1(3.2)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휴게시설 청결유지 (N=110)	충족(N=54)	26(39.4)	18(58.1)	6(66.7)	4(100)
	일부충족(N=3)	2(3.0)	-	1(11.1)	-
	미충족(N=53)	38(57.6)	13(41.9)	2(22.2)	-
표지판 부착 (N=110)	충족(N=33)	16(24.2)	11(35.5)	4(44.4)	2(50.0)
	일부충족(N=24)	12(18.2)	7(22.6)	3(33.3)	2(50.0)

구분		상시근로자 수(N=110)			
		20인 미만 (N=66)	20인~50인 미만 (N=31)	50인~100인 미만 (N=9)	100인 이상 (N=4)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N=110)	그렇다(N=25)	11(16.7)	8(25.8)	4(44.4)	2(50.0)
	일부그렇다 (N=22)	10(15.2)	7(22.6)	3(33.3)	2(50.0)
	그렇지않다(N=10)	7(10.6)	3(9.7)	-	-
	해당없음(N=53)	38(57.6)	13(41.9)	2(22.2)	-

\* 복수응답

### (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총 131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131개소 중 90%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70% 정도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회의실, 탈의실, 기타, 식당 순이었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습도기준(20인 미만 16.1%, 20인~50인 23.5%, 50인~100인 20.0%, 100인 이상 11.8%), 환기가능(20인 미만 12.6%, 20인~50인 17.6%, 100인 이상 23.5%), 식수설비(20인 미만 13.8%),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9.2%, 20인~50인 23.5%, 50인~100인 20.0%, 100인 이상 17.6%), 표지판부착(20인 미만 13.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미충족 비율이 높았다<표 III-19>.

<표 Ⅲ-1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사업장 위치 (N=131)	산업단지(N=10)	3(3.4)	3(17.6)	1(10.0)	3(17.6)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42)	9(10.3)	11(64.7)	8(80.0)	14(82.4)
	결측치(N=79)	75(86.2)	3(17.6)	1(10.0)	-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131)	예(N=44)	11(12.6)	11(64.7)	7(70.0)	15(88.2)
	아니요(N=8)	1(1.1)	3(17.6)	2(20.0)	2(11.8)
	결측치(N=79)	75(86.2)	3(17.6)	1(10.0)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131)	있음(N=12)	1(1.1)	2(11.8)	1(10.0)	8(47.1)
	없음(N=119)	86(98.9)	15(88.2)	9(90.0)	9(52.9)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131)	예(N=12)	1(1.1)	2(11.8)	1(10.0)	8(47.1)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119)	86(98.9)	15(88.2)	9(90.0)	9(52.9)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131)	원청 휴게시설 이용 (N=5)	1(1.1)	-	-	4(23.5)
	원청 설치하고 원청 과 따로 이용(N=6)	-	1(5.9)	1(10.0)	4(23.5)
	하청이 설치하고 원 청과 따로 이용 (N=1)	-	1(5.9)	-	-
	해당없음(N=119)	86(98.9)	15(88.2)	9(90.0)	9(52.9)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휴게시설 유무 (N=131)	예(N=128)	84(96.6)	17(100)	10(100)	17(100)
	아니요(N=3)	3(3.4)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131)	예(N=85)	56(64.4)	10(58.8)	6(60.0)	13(76.5)
	아니요(N=43)	28(32.2)	7(41.2)	4(40.0)	4(23.5)
	해당없음(N=3)	3(3.4)	-	-	-
휴게 외 다른목적으 로 사용되는 용도* (N=43)	회의실(N=21)	14(50.0)	3(42.9)	2(50.0)	2(50.0)
	탈의실(N=10)	5(17.9)	3(42.9)	1(25.0)	1(25.0)
	식당(N=6)	5(17.9)	1(14.3)	-	-
	기타(N=11)	7(25.0)	-	2(50.0)	2(50.0)
휴게시설 개수 (N=131)	1개(N=86)	64(73.6)	10(58.8)	5(50.0)	7(41.2)
	2개(N=19)	14(16.1)	2(11.8)	2(20.0)	1(5.9)
	3개이상(N=23)	6(6.9)	5(29.4)	3(30.0)	9(52.9)
	아니요(N=3)	3(3.4)	-	-	-
휴게시설 평균면적		52.0±58.6	59.3±46.6	61.4±56.8	69.5±101.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9명	약 15명	약 15.4명	약 20.7명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 (N=67)	교대근무(N=22)	8(9.2)	3(17.6)	4(40.0)	7(41.2)
	외근(N=6)	5(5.7)	-	-	1(5.9)
	작업형태(N=12)	5(5.7)	2(11.8)	1(10.0)	4(23.5)
	휴식주기(N=25)	9(10.3)	7(41.2)	4(40.)	5(29.4)
	기타(N=2)	1(1.1)	1(5.9)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휴게시설 위치* (N=143)	건물내지상(N=79)	44(50.6)	13(76.5)	10(100)	12(70.6)
	건물내지하(N=60)	48(55.2)	6(35.3)	1(10.0)	5(29.4)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4)	2(2.3)	—	—	2(11.8)
	근무외장소(N=0)	—	—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131)	충족(N=88)	63(72.4)	11(64.7)	6(60.0)	8(47.1)
	일부충족(N=37)	18(20.7)	6(35.3)	4(40.0)	9(52.9)
	미충족(N=3)	3(3.4)	—	—	—
	해당없음(N=3)	3(3.4)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131)	충족(N=95)	65(74.7)	12(70.6)	8(80.0)	10(58.8)
	일부충족(N=30)	17(19.5)	4(23.5)	2(20.0)	7(41.2)
	미충족(N=3)	2(2.3)	1(5.9)	—	—
	해당없음(N=3)	3(3.4)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131)	충족(N=98)	68(78.2)	13(76.5)	6(60.0)	11(64.7)
	일부충족(N=26)	13(14.9)	4(23.5)	4(40.0)	5(29.4)
	미충족(N=4)	3(3.4)	—	—	1(5.9)
	해당없음(N=3)	3(3.4)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천장 높이 2.1 m 이상 (N=131)	충족(N=112)	76(87.4)	16(94.1)	8(80.0)	12(70.6)
	일부충족(N=13)	5(5.7)	1(5.9)	2(20.0)	5(29.4)
	미충족(N=3)	3(3.4)	-	-	-
	해당없음(N=3)	3(3.4)	-	-	-
냉방시설 (N=131)	충족(N=98)	64(73.6)	14(82.4)	8(80.0)	12(70.6)
	일부충족(N=27)	19(21.8)	2(11.8)	2(20.0)	4(23.5)
	미충족(N=3)	1(1.1)	1(5.9)	-	1(5.9)
	해당없음(N=3)	3(3.4)	-	-	-
난방시설 (N=131)	충족(N=96)	62(71.3)	14(82.4)	8(80.0)	12(70.6)
	일부충족(N=28)	19(21.8)	3(17.6)	2(20.0)	4(23.5)
	미충족(N=4)	3(3.4)	-	-	1(5.9)
	해당없음(N=3)	3(3.4)	-	-	-
습도기준 (N=131)	충족(N=70)	43(49.4)	10(58.8)	6(60.0)	11(64.7)
	일부충족(N=35)	27(31.0)	3(17.6)	2(20.0)	3(17.6)
	미충족(N=22)	14(16.1)	4(23.5)	2(20.0)	2(11.8)
	결측치(N=1)	-	-	-	1(5.9)
	해당없음(N=3)	3(3.5)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조명기준 (N=131)	충족(N=101)	70(80.5)	12(70.6)	6(60.0)	13(76.5)
	일부충족(N=21)	10(11.5)	4(23.5)	3(30.0)	4(23.5)
	미충족(N=6)	4(4.6)	1(5.9)	1(10.0)	-
	해당없음(N=3)	3(3.4)	-	-	-
환기가능 (N=131)	충족(N=69)	42(48.3)	9(52.9)	7(70.0)	11(64.7)
	일부충족(N=41)	31(35.6)	5(29.4)	3(30.0)	2(11.8)
	미충족(N=18)	11(12.6)	3(17.6)	-	4(23.5)
	해당없음(N=3)	3(3.4)	-	-	-
소음노출 (N=131)	그렇다(N=8)	4(4.6)	1(5.9)	1(10.0)	2(11.8)
	일부그렇다(N=29)	16(18.4)	6(35.3)	2(20.0)	5(29.4)
	그렇지않다(N=91)	64(73.6)	10(58.8)	7(70.0)	10(58.8)
	해당없음(N=3)	3(3.4)	-	-	-
식수 설비 구비 (N=131)	충족(N=79)	50(57.5)	13(76.5)	4(40.0)	12(70.6)
	일부충족(N=34)	22(25.3)	3(17.6)	6(60.0)	3(17.6)
	미충족(N=15)	12(13.8)	1(5.9)	-	2(11.8)
	해당없음(N=3)	3(3.4)	-	-	-
비품 구비 (N=131)	충족(N=97)	67(77.0)	14(82.4)	6(60.0)	10(58.8)
	일부충족(N=29)	15(17.2)	3(17.6)	4(40.0)	7(41.2)
	미충족(N=2)	2(2.3)	-	-	-
	해당없음(N=3)	3(3.4)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131)			
		20인 미만 (N=87)	20인~50인 미만 (N=17)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7)
담당자 지정 (N=131)	충족(N=75)	53(60.9)	7(41.2)	6(60.0)	9(52.9)
	일부충족(N=36)	23(26.4)	6(35.3)	2(20.0)	5(29.4)
	미충족(N=17)	8(9.2)	4(23.5)	2(20.0)	3(17.6)
	해당없음(N=3)	3(3.4)	-	-	-
청결유지 (N=131)	충족(N=97)	68(78.2)	10(58.8)	7(70.0)	12(70.6)
	일부충족(N=27)	16(18.4)	5(29.4)	2(20.0)	4(23.5)
	미충족(N=4)	-	2(11.8)	1(10.0)	1(5.9)
	해당없음(N=3)	3(3.4)	-	-	-
표지판부착 (N=131)	충족(N=75)	48(55.2)	10(58.8)	6(60.0)	11(64.7)
	일부충족(N=37)	24(27.6)	6(35.3)	4(40.0)	3(17.6)
	미충족(N=15)	12(13.8)	1(5.9)	-	2(11.8)
	결측치(N=1)	-	-	-	1(5.9)
	해당없음(N=3)	3(3.4)	-	-	-
휴게시설이 다른목적 (N=131)	그렇다(N=10)	5(5.7)	2(11.8)	1(10.0)	2(11.8)
	일부그렇다(N=32)	17(19.5)	6(35.3)	3(30.0)	6(35.3)
	그렇지않다(N=86)	62(71.3)	9(52.9)	6(60.0)	9(52.9)
	해당없음(N=3)	3(3.4)	-	-	-

\* 복수응답

## 3) 도매 및 소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도매 및 소매업은 총 97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97개소 중 조사 사업장 모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0% 이상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0% 정도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기타, 회의실, 식당 순이었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환기가능(20인~50인 19.0%, 100인 이상 40.5%), 소음노출(20인 미만 10.5%, 20인~50인 14.3%, 50인~100인 13.3%),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10.5%, 20인~50인 9.5%, 50인~100인 13.3%, 100인 이상 19.0%), 표지판 부착(20인 미만 15.8%, 100인 이상 14.3%),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20인 미만 36.3%, 20인~50인 4.8%, 50인~100인 20.0%, 100인 이상 7.1%)이 다른 항목에 비해 미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Ⅲ-20>.

<표 III-20> 도매 및 소매업 휴게시설 설치현황

구분		상시근로자 수(N=97)			
		20인 미만 (N=19)	20인~50인 미만 (N=21)	50인~100인 미만 (N=15)	100인 이상 (N=42)
사업장 위치 (N=97)	산업단지(N=15)	2(10.5)	4(19.0)	6(40.0)	3(7.1)
	지식산업센터(N=1)	-	-	-	1(2.4)
	기타(N=80)	17(89.5)	17(81.0)	9(60.0)	37(88.1)
	결측치(N=1)	-	-	-	1(2.4)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97)	예(N=91)	15(78.9)	20(95.2)	14(93.3)	42(100)
	아니요(N=6)	4(21.1)	1(4.8)	1(6.7)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97)	있음(N=70)	7(36.8)	13(61.9)	9(60.0)	41(97.6)
	없음(N=27)	12(63.2)	8(38.1)	6(40.0)	1(2.4)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97)	예(N=68)	6(31.6)	12(57.1)	9(60.0)	41(97.6)
	아니요(N=2)	1(5.3)	1(4.8)	-	-
	해당없음(N=27)	12(63.2)	8(38.1)	6(40.0)	1(2.4)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97)	원청 휴게시설 이용 (N=45)	2(10.5)	6(28.6)	5(33.3)	32(76.2)
	원청 설치하고 원청 과 따로 이용 (N=16)	3(15.8)	6(28.6)	3(20.0)	4(9.5)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5)	1(5.3)	-	1(6.7)	3(7.1)
	기타(N=2)	-	-	-	2(4.8)
	해당없음(N=29)	13(68.4)	9(42.9)	6(40.0)	1(2.4)

구분		상시근로자 수(N=97)			
		20인 미만 (N=19)	20인~50인 미만 (N=21)	50인~100인 미만 (N=15)	100인 이상 (N=42)
휴게시설 유무 (N=97)	예(N=95)	19(100)	21(100)	15(100)	42(100)
	아니오(N=0)	-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97)	예(N=75)	12(63.2)	12(57.1)	12(80.0)	39(92.9)
	아니오(N=22)	7(36.8)	9(42.9)	3(20.0)	3(7.1)
휴게 외 다른목적으 로 사용되는 용도* (N=26)	회의실(N=5)	1(14.3)	3(33.3)	1(33.3)	-
	탈의실(N=12)	4(57.1)	5(55.6)	1(33.3)	2(66.7)
	식당(N=3)	-	2(22.2)	1(33.3)	-
	기타(N=6)	2(28.6)	2(22.2)	1(33.3)	1(33.3)
휴게시설 개수 (N=97)	1개(N=33)	11(57.9)	11(52.4)	5(33.3)	6(14.3)
	2개(N=26)	2(10.5)	6(28.6)	3(20.0)	15(35.7)
	3개이상(N=38)	6(31.6)	4(19.0)	7(46.7)	21(50.0)
휴게시설 평균면적		49.5±70.5	151.5±475.4	125.9±115	84.8±89.0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6명	약 13명	약 338명	약34.5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102)	교대근무(N=30)	3(15.8)	5(23.8)	3(20.0)	19(45.2)
	외근(N=7)	2(10.5)	1(4.8)	2(13.3)	2(4.8)
	작업형태(N=17)	3(15.8)	6(28.6)	5(33.3)	3(7.1)
	휴식주기(N=37)	9(47.4)	7(33.3)	5(33.3)	16(38.1)
	기타(N=11)	3(15.8)	3(14.3)	3(20.0)	2(4.8)

구분		상시근로자 수(N=97)			
		20인 미만 (N=19)	20인~50인 미만 (N=21)	50인~100인 미만 (N=15)	100인 이상 (N=42)
휴게시설 위치* (N=99)	건물내지상(N=79)	3(15.8)	2(9.5)	1(6.7)	14(33.3)
	건물내지하(N=20)	19(100)	21(100)	15(100)	39(92.9)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0)	-	-	-	-
	근무외장소(N=0)	-	-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97)	충족(N=79)	18(94.7)	20(95.2)	14(93.3)	27(64.3)
	일부충족(N=15)	1(5.3)	1(4.8)	1(6.7)	12(28.6)
	미충족(N=3)	-	-	-	3(7.1)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97)	충족(N=80)	17(89.5)	20(95.2)	15(100)	30(71.4)
	일부충족(N=11)	1(5.3)	1(4.8)	-	9(21.4)
	미충족(N=4)	1(5.3)	-	-	3(7.1)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97)	충족(N=83)	17(89.5)	19(90.5)	14(93.3)	33(78.6)
	일부충족(N=10)	1(5.3)	2(9.5)	1(6.7)	6(14.3)
	미충족(N=4)	1(5.3)	-	-	3(7.1)
천장 높이 2.1 m 이상 (N=97)	충족(N=88)	18(94.7)	21(100)	15(100)	34(81)
	일부충족(N=5)	-	-	-	5(11.9)
	미충족(N=3)	1(5.3)	-	-	2(4.8)
	결측치(N=1)	-	-	-	1(2.4)
냉방시설 (N=97)	충족(N=86)	17(89.5)	21(100)	14(93.3)	34(81.0)
	일부충족(N=8)	-	-	1(6.7)	7(16.7)
	미충족(N=3)	2(10.5)	-	-	1(2.4)

구분		상시근로자 수(N=97)			
		20인 미만 (N=19)	20인~50인 미만 (N=21)	50인~100인 미만 (N=15)	100인 이상 (N=42)
난방시설 (N=97)	충족(N=88)	18(94.7)	21(100)	15(100)	34(81.0)
	일부충족(N=7)	-	-	-	7(16.7)
	미충족(N=2)	1(5.3)	-	-	1(2.4)
습도기준 (N=97)	충족(N=76)	18(94.7)	18(85.7)	13(86.7)	27(64.3)
	일부충족(N=9)	-	-	1(6.7)	8(19.0)
	미충족(N=12)	1(5.3)	3(14.3)	1(6.7)	7(16.7)
조명기준 (N=97)	충족(N=87)	19(100)	20(95.2)	15(100)	33(78.6)
	일부충족(N=9)	-	1(4.8)	-	8(19.0)
	미충족(N=1)	-	-	-	1(2.4)
환기가능 (N=97)	충족(N=62)	17(89.5)	15(71.4)	11(73.3)	19(45.2)
	일부충족(N=12)	1(5.3)	2(9.5)	3(20.0)	6(14.3)
	미충족(N=23)	1(5.3)	4(19.0)	1(6.7)	17(40.5)
소음노출 (N=97)	그렇다(N=8)	2(10.5)	3(14.3)	2(13.3)	1(2.4)
	일부그렇다(N=18)	1(5.3)	-	2(13.3)	15(35.7)
	그렇지않다(N=71)	16(84.2)	18(85.7)	11(73.3)	26(61.9)
식수 설비 구비 (N=97)	충족(N=85)	18(94.7)	20(95.2)	13(86.7)	34(81.0)
	일부충족(N=9)	1(5.3)	-	2(13.3)	6(14.3)
	미충족(N=3)	-	1(4.8)	-	2(4.8)
비품 구비 (N=97)	충족(N=90)	19(100)	20(95.2)	15(100)	36(85.7)
	일부충족(N=6)	-	1(4.8)	-	5(11.9)
	미충족(N=1)	-	-	-	1(2.4)

구분		상시근로자 수(N=97)			
		20인 미만 (N=19)	20인~50인 미만 (N=21)	50인~100인 미만 (N=15)	100인 이상 (N=42)
담당자 지정 (N=97)	충족(N=74)	16(84.2)	16(76.2)	13(86.7)	29(69.0)
	일부충족(N=9)	1(5.3)	3(14.3)	-	5(11.9)
	미충족(N=14)	2(10.5)	2(9.5)	2(13.3)	8(19.0)
휴게시설 청결 유지 (N=97)	충족(N=84)	18(94.7)	19(90.5)	15(100)	32(76.2)
	일부충족(N=7)	-	2(9.5)	-	5(11.9)
	미충족(N=6)	1(5.3)	-	-	5(11.9)
표지판 부착 (N=97)	충족(N=78)	15(78.9)	19(90.5)	13(86.7)	31(73.8)
	일부충족(N=9)	1(5.3)	2(9.5)	1(6.7)	5(11.9)
	미충족(N=9)	3(15.8)	-	-	6(14.3)
	결측치(N=1)	-	-	1(6.7)	-
휴게시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N=97)	그렇다(N=12)	5(26.3)	1(4.8)	3(20.0)	3(7.1)
	일부그렇다(N=12)	1(5.3)	2(9.5)	3(20.0)	6(14.3)
	그렇지않다(N=73)	13(68.4)	18(85.7)	9(60.0)	33(78.6)

\* 복수응답

#### (4) 운수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운수업은 총 56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56개소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은 66.7%, 20인~50인 미만 91.3%, 50인 이상~100인 미만 70%, 100인 이상 사업장은 78.6%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회의실, 기타, 탈의실, 식당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근무장소와 독립공간 위치, 냉방시설, 난방시설, 습도기준, 소음노출, 식수설비, 담당자 지정, 표지판부착,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등이 있었고, 운수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미충족 항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표 III-21> 운수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5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23)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4)
사업장 위치 (N=56)	산업단지(N=14)	6(66.7)	3(13.0)	4(40.0)	1(7.1)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41)	3(33.3)	19(82.6)	6(60.0)	13(92.9)
	결측치(N=1)	-	1(4.3)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56)	예(N=45)	7(77.8)	18(78.3)	10(100.0)	10(71.4)
	아니요(N=9)	1(11.1)	4(17.4)	-	9(28.6)
	결측치(N=2)	1(11.1)	1(4.3)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56)	있음(N=30)	5(55.6)	12(52.2)	5(50.0)	8(57.1)
	없음(N=26)	4(44.4)	11(47.8)	5(50.0)	6(42.9)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56)	예(N=29)	4(44.4)	12(52.2)	5(50.0)	8(57.1)
	아니요(N=1)	1(11.1)	-	-	-
	해당없음(N=26)	4(44.4)	11(47.8)	5(50.0)	6(42.9)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56)	원청 휴게시설 이용 (N=14)	3(33.3)	9(39.1)	1(10.0)	1(7.1)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12)	1(11.1)	2(8.7)	4(40.0)	5(35.7)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3)	-	1(4.3)	-	2(14.3)
	해당없음(N=27)	5(55.6)	11(47.8)	5(50.0)	6(42.9)

구분		상시근로자 수(N=5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23)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4)
휴게시설 유무 (N=56)	예(N=54)	8(88.9)	23(100.0)	9(90.0)	14(100)
	아니요(N=0)	-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56)	예(N=45)	6(66.7)	21(91.3)	7(70.0)	11(78.6)
	아니요(N=11)	3(33.3)	2(8.7)	3(30.0)	3(21.4)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11)	회의실(N=5)	2(66.7)	1(50.0)	1(33.3)	1(33.3)
	탈의실(N=2)	-	-	-	2(66.7)
	식당(N=1)	-	1(50.0)	-	-
	기타(N=3)	1(33.3)	-	2(66.7)	-
휴게시설 개수 (N=56)	1개(N=27)	5(55.6)	14(60.9)	6(60.0)	2(14.3)
	2개(N=14)	2(22.2)	6(26.1)	2(20.0)	4(28.6)
	3개이상(N=15)	2(22.2)	3(13)	2(20.0)	8(57.1)
휴게시설 평균면적		65±82.7	74.6±93.5	72.7±61.6	220.7±451.5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2.3명	약 17.5명	약 27명	약 127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62)	교대근무(N=17)	2(22.2)	6(27.3)	4(40.0)	5(35.7)
	외근(N=6)	3(33.3)	1(4.5)	-	2(14.3)
	작업형태(N=14)	4(44.4)	7(31.8)	-	3(21.4)
	휴식주기(N=23)	4(44.4)	9(40.9)	7(70.0)	3(21.4)
	기타(N=2)	-	-	1(10.0)	1(7.1)

구분		상시근로자 수(N=5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23)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4)
휴게시설 위치* (N=60)	건물내지상(N=52)	8(88.9)	20(90.9)	10(100)	14(100)
	건물내지하(N=1)	-	-	-	1(7.1)
	건물옥상(N=5)	1(11.1)	4(18.2)	-	-
	건물밖(N=2)	-	2(9.1)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56)	충족(N=52)	9(100)	20(87.0)	10(100)	13(92.9)
	일부충족(N=4)	-	3(13.0)	-	1(7.1)
	미충족(N=0)	-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56)	충족(N=49)	8(88.9)	19(82.6)	10(100)	12(85.7)
	일부충족(N=7)	1(11.1)	4(17.4)	-	2(14.3)
	미충족(N=0)	-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56)	충족(N=51)	8(88.9)	21(91.3)	10(100)	12(85.7)
	일부충족(N=4)	-	2(8.7)	-	2(14.3)
	미충족(N=1)	1(11.1)	-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56)	충족(N=56)	9(100)	23(100)	10(100)	14(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냉방시설 (N=56)	충족(N=51)	8(88.9)	20(87.0)	10(100)	13(92.9)
	일부충족(N=4)	-	3(13.0)	-	1(7.1)
	미충족(N=1)	1(11.1)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5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23)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4)
난방시설 (N=56)	충족(N=52)	8(88.9)	21(91.3)	10(100)	13(92.9)
	일부충족(N=2)	-	2(8.7)	-	-
	미충족(N=2)	1(11.1)	-	-	1(7.1)
습도기준 (N=56)	충족(N=46)	8(88.9)	18(78.3)	9(90.0)	11(78.6)
	일부충족(N=8)	-	5(21.7)	1(10.0)	2(14.3)
	미충족(N=2)	1(11.1)	-	-	1(7.1)
조명유지 (N=56)	충족(N=53)	9(100)	22(95.7)	10(100)	12(85.7)
	일부충족(N=3)	-	1(4.3)	-	2(14.3)
	미충족(N=0)	-	-	-	-
환기가능 (N=56)	충족(N=49)	8(88.9)	21(91.3)	9(90.0)	11(78.6)
	일부충족(N=5)	1(11.1)	1(4.3)	1(10.0)	2(14.3)
	미충족(N=2)	-	1(4.3)	-	1(7.1)
소음노출 (N=56)	그렇다(N=5)	-	1(4.3)	3(30.0)	1(7.1)
	일부그렇다(N=6)	-	4(17.4)	-	2(14.3)
	그렇지않다(N=45)	9(100)	18(78.3)	7(70.0)	11(78.6)
식수 설비 구비 (N=56)	충족(N=50)	7(77.8)	22(95.7)	8(80.0)	13(92.9)
	일부충족(N=4)	1(11.1)	1(4.3)	1(10.0)	1(7.1)
	미충족(N=2)	1(11.1)	-	1(10.0)	-
비품 구비 (N=56)	충족(N=54)	7(77.8)	23(100)	10(100)	14(100)
	일부충족(N=2)	2(22.2)	-	-	-
	미충족(N=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5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23)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14)
담당자 지정 (N=56)	충족(N=49)	5(55.6)	22(95.7)	10(100)	12(85.7)
	일부충족(N=3)	1(11.1)	-	-	2(14.3)
	미충족(N=3)	3(33.3)	-	-	-
	결측치(N=1)	-	1(4.3)	-	-
청결유지 (N=56)	충족(N=55)	9(100)	22(95.7)	10(100)	14(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결측치(N=1)	-	1(4.3)	-	-
표지판 부착 (N=56)	충족(N=47)	6(66.7)	19(82.6)	8(80.0)	14(100)
	일부충족(N=5)	2(22.2)	2(8.7)	1(10.0)	-
	미충족(N=4)	1(11.1)	2(8.7)	1(10.0)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56)	그렇다(N=7)	1(11.1)	4(17.4)	2(20.0)	-
	일부그렇다(N=7)	1(11.1)	1(4.3)	3(30.0)	2(14.3)
	그렇지않다(N=42)	7(77.8)	18(78.3)	5(50.0)	12(85.7)

\* 복수응답

## (5) 숙박 및 음식점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총 36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36개소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은 11.1%, 20~50인 18.2%, 50인 이상 30.0%, 100인 이상 사업장은 66.7%로 규모가 작을수록 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적었다.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습도(20인~50인 18.2%), 환기(50인~100인 미만 20.0%, 100인 이상 66.7%), 식수설비(20인 미만 22.2%, 50인~100인 미만 20.0%)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충족 비율이 높았다<표 III-22>.

<표 III-22> 숙박 및 음식점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3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11)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6)
사업장 위치 (N=36)	산업단지(N=6)	1(11.1)	2(18.2)	3(30.0)	-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29)	8(88.9)	9(81.8)	6(60.0)	6(100)
	결측치(N=1)	-	-	1(10.0)	-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36)	예(N=30)	6(66.7)	11(100)	7(70.0)	6(100)
	아니요(N=4)	3(33.3)	-	1(10.0)	-
	결측치(N=2)	-	-	2(20.0)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36)	있음(N=19)	3(33.3)	7(63.6)	5(50.0)	4(66.7)
	없음(N=17)	6(66.7)	4(36.4)	5(50.0)	2(33.3)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36)	예(N=19)	3(33.3)	7(63.6)	5(50.0)	4(66.7)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17)	6(66.7)	4(36.4)	5(50.0)	2(33.3)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36)	원청 휴게시설 이용 (N=16)	2(22.2)	7(63.6)	3(30.0)	4(66.7)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3)	1(11.1)	-	2(20.0)	-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0)	-	-	-	-
	해당없음(N=17)	6(66.7)	4(36.4)	5(50.0)	2(33.3)

구분		상시근로자 수(N=3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11)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6)
휴게시설 유무 (N=36)	예(N=32)	9(100)	11(100)	10(100)	6(100)
	아니요(N=0)	-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36)	예(N=24)	6(66.7)	5(45.5)	9(90.0)	4(66.7)
	아니요(N=12)	3(33.3)	6(54.5)	1(10.0)	2(33.3)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N=12)	회의실(N=1)	-	1(20.0)	-	-
	탈의실(N=11)	3(50.0)	5(100)	1(11.1)	2(50.0)
	식당(N=0)	-	-	-	-
	기타(N=0)	-	-	-	-
휴게시설 개수 (N=36)	1개(N=10)	5(55.6)	2(18.2)	3(30.0)	-
	2개(N=22)	4(44.4)	8(72.7)	5(50.0)	5(83.3)
	3개이상(N=4)	-	1(9.1)	2(20.0)	1(16.7)
휴게시설 평균면적		18.5±11.2	49.5±38.4	36.14±23.8	186.28±14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6명	약 15.9명	약 16.2명	약 50.3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36)	교대근무(N=22)	4(36.4)	8(80.0)	5(83.3)	5(13.9)
	외근(N=1)	-	-	-	1(2.8)
	작업형태(N=3)	1(9.1)	1(10.0)	-	1(2.8)
	휴식주기(N=13)	3(27.3)	3(30.0)	5(83.3)	2(5.6)
	기타(N=1)	1(9.1)	-	-	-
휴게시설 위치* (N=36)	건물내지상(N=23)	7(63.6)	9(90.0)	6(100)	1(2.8)
	건물내지하(N=13)	1(9.1)	2(20.0)	4(66.7)	6(16.7)

구분		상시근로자 수(N=3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11)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6)
	건물옥상(N=2)	1(9.1)	1(10.0)	-	-
	건물밖(N=0)	-	-	-	-
	근무외장소(N=1)	1(9.1)	-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36)	충족(N=33)	9(100)	10(90.9)	9(90.0)	5(83.3)
	일부충족(N=3)	-	1(9.1)	1(10.0)	1(16.7)
	미충족(N=0)	-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36)	충족(N=34)	1(11.1)	2(18.2)	3(30.0)	4(66.7)
	일부충족(N=2)	9(100)	11(100)	9(90.0)	5(83.3)
	미충족(N=0)	-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36)	충족(N=33)	8(88.9)	9(81.8)	10(100)	6(100)
	일부충족(N=2)	1(11.1)	1(9.1)	-	-
	미충족(N=1)	-	1(9.1)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36)	충족(N=33)	8(88.9)	11(100)	8(80.0)	6(100)
	일부충족(N=2)	-	-	2(20.0)	-
	미충족(N=1)	1(11.1)	-	-	-
냉방시설 (N=36)	충족(N=35)	8(88.9)	11(100)	10(100)	6(100)
	일부충족(N=1)	1(11.1)	-	-	-
	미충족(N=0)	-	-	-	-
난방시설 (N=36)	충족(N=34)	7(77.8)	11(100)	10(100)	6(100)
	일부충족(N=2)	2(22.2)	-	-	-
	미충족(N=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11)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6)
습도기준 (N=36)	충족(N=26)	7(77.8)	8(72.7)	7(70.0)	4(66.7)
	일부충족(N=8)	2(22.2)	1(9.1)	3(30.0)	2(33.3)
	미충족(N=2)	-	2(18.2)	-	-
조명기준 (N=36)	충족(N=36)	9(100)	11(100)	10(100)	6(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환기가능 (N=36)	충족(N=27)	6(66.7)	11(100)	8(80.0)	2(33.3)
	일부충족(N=2)	2(22.2)	-	-	-
	미충족(N=7)	1(11.1)	-	2(20.0)	4(66.7)
소음노출 (N=36)	그렇다(N=3)	-	1(9.1)	1(10.0)	1(16.7)
	일부그렇다(N=3)	-	-	3(30.0)	-
	그렇지않다(N=30)	9(100)	10(90.9)	6(60.0)	5(83.3)
식수 설비 구비 (N=36)	충족(N=26)	6(66.7)	9(81.8)	6(60.0)	5(83.3)
	일부충족(N=6)	1(11.1)	2(18.2)	2(20.0)	1(16.7)
	미충족(N=4)	2(22.2)	-	2(20.0)	-
비품 구비 (N=36)	충족(N=29)	5(55.6)	11(100)	7(70.0)	6(100)
	일부충족(N=6)	4(44.4)	-	2(20.0)	-
	미충족(N=1)	-	-	1(10.0)	-
담당자 지정 (N=36)	충족(N=29)	7(77.8)	10(90.9)	6(60.0)	6(100)
	일부충족(N=5)	1(11.1)	-	4(40.0)	-
	미충족(N=2)	1(11.1)	1(9.1)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6)			
		20인 미만 (N=9)	20인~50인 미만 (N=11)	50인~100인 미만 (N=10)	100인 이상 (N=6)
휴게시설 청결유지 (N=36)	충족(N=35)	8(88.9)	11(100)	10(100)	6(100)
	일부충족(N=1)	1(11.1)	-	-	-
	미충족(N=0)	-	-	-	-
표지판 부착 (N=36)	충족(N=31)	7(77.8)	10(90.9)	9(90.0)	5(83.3)
	일부충족(N=2)	1(11.1)	-	-	1(16.7)
	미충족(N=3)	1(11.1)	1(9.1)	1(10.0)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N=36)	그렇다(N=5)	1(11.1)	2(18.2)	1(10.0)	1(16.7)
	일부그렇다(N=7)	1(11.1)	2(18.2)	2(20.0)	2(33.3)
	그렇지않다(N=24)	7(77.8)	7(63.6)	7(70.0)	3(50.0)

\* 복수응답

## 6) 통신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통신업은 총 49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87.5%로 나타나 통신업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규모의 사업장은 모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은 70.8%, 20~50인 94.7%, 50인 이상 50.0%,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0%로 나타났다.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소음노출(20인~50인 10.5%), 식수설비(20인 미만 8.3%), 담당자 지정(20인 미만 8.3%), 표지판부착(20인 미만 8.3%) 항목의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23>.

<표 III-23> 통신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사업장 위치 (N=49)	산업단지(N=2)	-	-	-	2(50.0)
	지식산업센터(N=1)	-	-	-	1(25.0)
	기타(N=45)	23(95.8)	19(100)	2(100)	1(25.0)
	결측치(N=1)	1(4.2)	-	-	-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49)	예(N=39)	16(66.7)	17(89.5)	2(100)	4(100)
	아니요(N=10)	8(33.3)	2(10.5)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49)	있음(N=25)	12(50.0)	10(52.6)	-	3(75.0)
	없음(N=24)	12(50.0)	9(47.4)	2(100)	1(25.0)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49)	예(N=20)	9(37.5)	8(42.1)	-	3(75.0)
	아니요(N=5)	3(12.5)	2(10.5)	-	-
	해당없음(N=24)	12(50.0)	9(47.4)	2(100)	1(25.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49)	원청 휴게시설 이용(N=6)	3(12.5)	1(5.3)	-	2(50.0)
	원청 설치하고 원 청과 따로 이용 (N=6)	2(8.3)	4(21.1)	-	-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7)	3(12.5)	3(15.8)	-	1(25.0)
	기타(N=1)	1(4.2)	-	-	-
	해당없음(N=29)	15(62.5)	11(57.9)	2(100)	1(25.0)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휴게시설 유무 (N=49)	예(N=46)	21(87.5)	19(100)	2(100)	4(100)
	아니요(N=3)	3(12.5)	-	-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49)	예(N=40)	17(70.8)	18(94.7)	1(50.0)	4(100)
	아니요(N=6)	4(16.7)	1(5.3)	1(50.0)	-
	해당없음(N=3)	3(12.5)	-	-	-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N=6)	회의실(N=2)	-	1(100)	1(100)	-
	탈의실(N=2)	2(50.0)	-	-	-
	식당(N=0)	-	-	-	-
	기타(N=3)	3(75.0)	-	-	-
휴게시설 개수 (N=49)	1개(N=28)	15(62.5)	10(52.6)	2(100)	1(25.0)
	2개(N=10)	4(16.7)	5(26.3)	-	1(25.0)
	3개이상(N=8)	2(8.3)	4(21.1)	-	2(50.0)
	해당없음(N=3)	3(12.5)	-	-	-
휴게시설 평균면적		42±71.7	45.9±49.2	136.5±146.3	25.67±10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1명	약 13명	약 12명	약 18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49)	교대근무(N=5)	3(12.5)	1(5.3)	1(50.0)	-
	외근(N=10)	4(16.7)	6(31.6)	-	-
	작업형태(N=15)	8(33.3)	6(31.6)	-	1(25.0)
	휴식주기(N=18)	6(25)	7(36.8)	2(100)	3(75.0)
	기타(N=2)	1(4.2)	1(5.3)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휴게시설 위치* (N=49)	건물내지상(N=45)	21(87.5)	19(100)	2(100)	3(75.0)
	근무외장소(N=1)	-	-	-	1(25.0)
	해당없음(N=3)	3(12.5)	-	-	-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49)	충족(N=46)	21(87.5)	19(100)	2(100)	(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49)	충족(N=46)	21(87.5)	19(100)	2(100)	4(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49)	충족(N=45)	21(87.5)	18(94.7)	2(100)	4(100)
	일부충족(N=1)	-	1(5.3)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49)	충족(N=45)	21(87.5)	19(100)	2(100)	3(75.0)
	일부충족(N=1)	-	-	-	1(25.0)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냉방시설 (N=49)	충족(N=46)	21(87.5)	19(100)	2(100)	4(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난방시설 (N=49)	충족(N=46)	21(87.5)	19(100)	2(100)	4(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습도기준 (N=49)	충족(N=41)	19(79.2)	17(89.5)	2(100)	3(75.0)
	일부충족(N=3)	1(4.2)	1(5.3)	-	1(25.0)
	미충족(N=2)	1(4.2)	1(5.3)	-	-
	해당없음(N=3)	3(12.5)	-	-	-
조명기준 (N=49)	충족(N=43)	19(79.2)	18(94.7)	2(100)	4(100)
	일부충족(N=2)	2(8.3)	1(5.3)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환기가능 (N=49)	충족(N=40)	19(79.2)	17(89.5)	2(100)	2(50.0)
	일부충족(N=5)	1(4.2)	2(10.5)	-	2(50.0)
	미충족(N=1)	1(4.2)	-	-	-
	해당없음(N=3)	3(12.5)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소음노출 (N=49)	그렇다(N=4)	1(4.2)	2(10.5)	1(50.0)	-
	일부그렇다(N=0)	-	-	-	-
	그렇지않다(N=42)	20(83.3)	17(89.5)	1(50.0)	4(100)
	해당없음(N=3)	3(12.5)	-	-	-
식수 설비 구비 (N=49)	충족(N=36)	16(66.7)	15(78.9)	2(100)	3(75.0)
	일부충족(N=7)	3(12.5)	3(15.8)	-	1(25.0)
	미충족(N=3)	2(8.3)	1(5.3)	-	-
	해당없음(N=3)	3(12.5)	-	-	-
비품 구비 (N=49)	충족(N=45)	20(83.3)	19(100)	2(100)	4(100)
	일부충족(N=1)	1(4.2)	-	-	-
	미충족(N=0)				
	해당없음(N=3)	3(12.5)	-	-	-
담당자 지정 (N=49)	충족(N=41)	19(79.2)	17(89.5)	1(50.0)	4(100)
	일부충족(N=1)	-	1(5.3)	-	-
	미충족(N=4)	2(8.3)	1(5.3)	1(50.0)	-
	해당없음(N=3)	3(12.5)	-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49)	충족(N=43)	19(79.2)	18(94.7)	2(100)	4(100)
	일부충족(N=3)	2(8.3)	1(5.3)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3)	3(12.5)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9)			
		20인 미만 (N=24)	20인~50인 미만 (N=19)	50인~100인 미만 (N=2)	100인 이상 (N=4)
표지판 부착 (N=49)	충족(N=41)	16(66.7)	19(100)	2(100)	4(100)
	일부충족(N=3)	3(12.5)	-	-	-
	미충족(N=2)	2(8.3)	-	-	-
	해당없음(N=3)	3(12.5)	-	-	-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 (N=49)	그렇다(N=6)	2(8.3)	3(15.8)	-	1(25.0)
	일부그렇다(N=3)	2(8.3)	-	1(50.0)	-
	그렇지않다(N=37)	17(70.8)	16(84.2)	1(50.0)	3(75.0)
	해당없음(N=3)	3(12.5)	-	-	-

\* 복수응답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20인 미만 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은 38.5%, 20~50인 77.8%, 50인 이상 66.7%, 100인 이상 사업장은 50%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식당, 기타 순이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휴게시설 제도 준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으로는 표지판 부착(20인 미만 23.1%) 항목의 미충족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표 III-24>.

<표 Ⅲ-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사업장 위치 (N=30)	산업단지(N=10)	5(38.5)	1(11.1)	4(66.7)	-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20)	8(61.5)	8(88.9)	2(33.3)	2(100)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30)	예(N=29)	12(92.3)	9(100)	6(100)	2(100)
	아니요(N=1)	1(7.7)	-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30)	있음(N=8)	1(7.7)	3(33.3)	2(33.3)	2(100)
	없음(N=22)	12(92.3)	6(66.7)	4(66.7)	-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30)	예(N=8)	1(7.7)	3(33.3)	2(33.3)	2(100)
	아니요(N=0)	-	-	-	-
	결측치(N=0)	-	-	-	-
	해당없음(N=22)	12(92.3)	6(66.7)	4(66.7)	-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8)	원청 휴게시설 이용(N=4)	1(7.7)	-	2(33.3)	1(50.0)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4)	-	3(33.3)	-	1(50.0)
	해당없음(N=22)	12(92.3)	6(66.7)	4(66.7)	-
휴게시설 유무 (N=30)	예(N=29)	12(92.3)	9(100)	6(100)	2(100)
	아니요(N=1)	1(7.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30)	예(N=17)	5(38.5)	7(77.8)	4(66.7)	1(50.0)
	아니요(N=12)	7(53.8)	2(22.2)	2(33.3)	1(50.0)
	해당없음(N=1)	1(7.7)	-	-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14)	회의실(N=4)	1(14.3)	2(100)	1(50.0)	-
	탈의실(N=5)	4(57.1)	-	1(50.0)	-
	식당(N=3)	2(28.6)	-	-	1(100)
	기타(N=2)	1(14.3)	-	1(50.0)	-
휴게시설 개수 (N=30)	1개(N=14)	7(53.8)	5(55.6)	2(33.3)	-
	2개(N=7)	4(30.8)	1(11.1)	2(33.3)	-
	3개이상(N=8)	1(7.7)	3(33.3)	2(33.3)	2(100)
	해당없음(N=1)	1(7.7)	-	-	-
휴게시설 평균면적		56.13±93.2	31.1±16.6	65.0±60.1	116.5±6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0명	약 11명	약 23.5명	약 47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30)	교대근무(N=1)	2(15.4)	-	-	-
	외근(N=4)	1(7.7)	2(22.2)	1(16.7)	-
	작업형태(N=11)	3(23.1)	3(33.3)	4(66.7)	1(50.0)
	휴식주기(N=11)	5(38.5)	4(44.4)	1(16.7)	1(50.0)
	기타(N=2)	2(15.4)	-	-	-
휴게시설 위치* (N=29)	건물내지상(N=27)	13(100)	8(80.0)	6(100)	2(100)
	건물내지하(N=2)	-	2(20.0)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30)	충족(N=28)	12(92.3)	9(100)	5(83.3)	2(100)
	일부충족(N=1)	-	-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30)	충족(N=25)	9(69.2)	9(100)	5(83.3)	2(100)
	일부충족(N=4)	3(23.1)	-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30)	충족(N=25)	9(69.2)	9(100)	5(83.3)	2(100)
	일부충족(N=3)	2(15.4)	-	1(16.7)	-
	미충족(N=1)	1(7.7)	-	-	-
	해당없음(N=1)	1(7.7)	-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30)	충족(N=27)	11(84.6)	8(88.9)	6(100)	2(100)
	일부충족(N=2)	1(7.7)	1(11.1)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냉방시설 (N=30)	충족(N=28)	11(84.6)	9(100)	6(100)	2(100)
	일부충족(N=1)	1(7.7)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난방시설 (N=30)	충족(N=29)	12(92.3)	9(100)	6(100)	2(100)
	일부충족(N=0)	-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습도기준 (N=30)	충족(N=21)	8(61.5)	5(55.6)	6(100)	2(100)
	일부충족(N=3)	1(7.7)	2(22.2)	-	-
	미충족(N=5)	3(23.1)	2(22.2)	-	-
	해당없음(N=1)	1(7.7)	-	-	-
조명기준 (N=30)	충족(N=28)	11(84.6)	9(100)	6(100)	2(100)
	일부충족(N=1)	1(7.7)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환기가능 (N=30)	충족(N=23)	8(61.5)	9(100)	4(66.7)	2(100)
	일부충족(N=3)	2(15.4)	-	1(16.7)	-
	미충족(N=3)	2(15.4)	-	1(16.7)	-
	해당없음(N=1)	1(7.7)	-	-	-
소음노출 (N=30)	그렇다(N=2)	2(15.4)	-	-	-
	일부그렇다(N=1)	-	1(11.1)	-	-
	그렇지않다(N=26)	10(76.9)	8(88.9)	6(100)	2(100)
	해당없음(N=1)	1(7.7)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식수 설비 구비 (N=30)	충족(N=24)	10(76.9)	7(77.8)	5(83.3)	2(100)
	일부충족(N=5)	2(15.4)	2(22.2)	1(16.7)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비품 구비 (N=30)	충족(N=27)	11(84.6)	8(88.9)	6(100)	2(100)
	일부충족(N=2)	1(7.7)	1(11.1)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담당자 지정 (N=30)	충족(N=19)	5(38.5)	7(77.8)	6(100)	1(50.0)
	일부충족(N=4)	3(23.1)	1(11.1)	-	-
	미충족(N=6)	4(30.8)	1(11.1)	-	1(50.0)
	해당없음(N=1)	1(7.7)	-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30)	충족(N=27)	10(76.9)	9(100)	6(100)	2(100)
	일부충족(N=2)	2(15.4)	-	-	-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1)	1(7.7)	-	-	-
표지판부착 (N=30)	충족(N=21)	7(53.8)	7(77.8)	5(83.3)	2(100)
	일부충족(N=3)	2(15.4)	1(11.1)	-	-
	미충족(N=5)	3(23.1)	1(11.1)	1(16.7)	-
	해당없음(N=1)	1(7.7)	-	-	-
휴게시설외 다른목적	그렇다(N=5)	4(30.8)	1(11.1)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30)			
		20인 미만 (N=13)	20인~50인 미만 (N=9)	50인~100인 미만 (N=6)	100인 이상 (N=2)
사용 (N=30)	일부그렇다(N=7)	3(23.1)	3(33.3)	1(16.7)	-
	그렇지않다(N=17)	5(38.5)	5(55.6)	5(83.3)	2(100)
	해당없음(N=1)	1(7.7)	-	-	-

\* 복수응답

## 8) 교육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교육서비스업은 총 44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0%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규모의 사업장은 모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인~50인 71.4%, 50인 이상 100%, 100인 이상 사업장은 59.3%로 나타났다.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탈의실, 회의실, 기타 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휴게시설 편리한 위치, 유해물질과 격리 장소, 근무장소와 독립공간, 습도기준, 환기가능, 소음노출, 식수설비, 비품구매, 담당자 지정, 표지판부착, 휴게시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표 III-25> 교육서비스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사업장 위치 (N=44)	산업단지(N=1)	-	-	1(20.0)	-
	지식산업센터(N=2)	1(20.0)	-	-	1(3.7)
	기타(N=41)	4(80.0)	7(100)	4(80.0)	26(96.3)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44)	예(N=41)	3(60.0)	6(85.7)	5(100)	27(100)
	아니요(N=3)	2(40.0)	1(14.3)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44)	있음(N=29)	1(20.0)	1(14.3)	3(60.0)	24(88.9)
	없음(N=15)	4(80.0)	6(85.7)	2(40.0)	3(11.1)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44)	예(N=29)	1(20.0)	1(14.3)	3(60.0)	24(88.9)
	아니요(N=0)	-	-	-	-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44)	해당없음(N=15)	4(80.0)	6(85.7)	2(40.0)	3(11.1)
	원청 휴게시설 이용 (N=7)	1(20.0)	-	-	6(22.2)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20)	-	1(14.3)	2(40.0)	17(63.0)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N=2)	-	-	1(20.0)	1(3.7)
휴게시설 유무 (N=44)	해당없음(N=15)	4(80.0)	6(85.7)	2(40.0)	3(11.1)
	예(N=42)	3(60.0)	7(100)	5(100)	27(100)
	아니요(N=2)	2(40.0)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44)	예(N=26)	-	5(71.4)	5(100)	16(59.3)
	아니요(N=16)	3(60.0)	2(28.6)	-	11(40.7)
	해당없음(N=2)	2(40.0)	-	-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16)	회의실(N=6)	1(33.3)	-	-	5(54.5)
	탈의실(N=7)	2(66.7)	2(100)	-	3(63.6)
	식당(N=0)	-	-	-	-
	기타(N=3)	-	-	-	3(27.3)
휴게시설 개수 (N=44)	1개(N=9)	1(20.0)	3(42.9)	1(20.0)	4(14.8)
	2개(N=5)	2(40.0)	-	1(20.0)	2(7.4)
	3개이상(N=28)	-	4(57.1)	3(60.0)	21(77.8)
	아니요(N=2)	2(40.0)	-	-	-
휴게시설 평균면적		225.0±181.8	30.0±34.3	138.6±174.7	148.2±180.3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11명	약 5.7명	약 7명	약 38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42)	교대근무(N=7)	-	2(28.6)	2(40.0)	3(11.1)
	외근(N=0)	-	-	-	-
	작업형태(N=9)	-	1(14.3)	1(20.0)	7(25.9)
	휴식주기(N=21)	3(60.0)	5(71.4)	1(20.0)	14(51.9)
	기타(N=3)	-	-	-	3(11.1)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휴게시설 위치* (N=48)	건물내지상(N=39)	3(60.0)	6(85.7)	5(100)	25(92.6)
	건물내지하(N=7)	-	1(14.3)	1(20.0)	5(18.5)
	건물옥상(N=0)	-	-	-	-
	건물밖(N=0)	-	-	-	-
	근무외장소(N=2)	-	-	-	2(7.4)
휴게시설 이 편리한 위치 (N=44)	충족(N=36)	3(60.0)	7(100)	5(100)	21(77.8)
	일부충족(N=4)	-	-	-	4(14.8)
	미충족(N=2)	-	-	-	2(7.4)
	해당없음(N=2)	2(40.0)	-	-	-
유해물질 과 격리된 장소 (N=44)	충족(N=34)	3(60.0)	5(71.4)	4(80.0)	22(81.5)
	일부충족(N=5)	-	-	1(20.0)	4(14.8)
	미충족(N=2)	-	1(14.3)	-	1(3.7)
	결측치(N=1)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44)	충족(N=35)	3(60.0)	6(85.7)	5(100)	21(77.8)
	일부충족(N=5)	-	-	-	5(18.5)
	미충족(N=1)	-	-	-	1(3.7)
	결측치(N=1)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천장 높이 2.1 m 이상 (N=44)	충족(N=36)	3(60.0)	6(85.7)	4(80.0)	23(85.2)
	일부충족(N=5)	-	-	1(20.0)	4(14.8)
	미충족(N=1)	-	-	-	-
	결측치(N=2)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냉방시설 (N=44)	충족(N=35)	3(60.0)	7(100)	5(100)	20(74.1)
	일부충족(N=7)	-	-	-	7(25.9)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2(40.0)	-	-	-
난방시설 (N=44)	충족(N=34)	3(60.0)	7(100)	5(100)	19(70.4)
	일부충족(N=8)	-	-	-	8(29.6)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2(40.0)	-	-	-
습도기준 (N=44)	충족(N=34)	3(60.0)	6(85.7)	5(100)	20(74.1)
	일부충족(N=6)	-	-	-	6(22.2)
	미충족(N=2)	-	1(14.3)	-	1(3.7)
	해당없음(N=2)	2(40.0)	-	-	-
조명기준 (N=44)	충족(N=38)	3(60.0)	7(100)	5(100)	23(85.2)
	일부충족(N=4)	-	-	-	4(14.8)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2(40.0)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환기가능 (N=44)	충족(N=31)	3(60.0)	5(71.4)	5(100)	18(66.7)
	일부충족(N=9)	-	-	-	9(33.3)
	미충족(N=1)	-	1(14.3)	-	-
	결측치(N=1)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소음노출 (N=44)	그렇다(N=25)	-	3(42.9)	3(60.0)	19(70.4)
	일부그렇다(N=5)	-	-	-	5(18.5)
	그렇지않다(N=12)	3(60.0)	4(57.1)	2(40.0)	3(11.1)
	해당없음(N=2)	2(40.0)	-	-	-
식수 설비 구비 (N=44)	충족(N=23)	2(40.0)	3(42.9)	5(100)	13(48.1)
	일부충족(N=13)	-	3(42.9)	-	10(37)
	미충족(N=5)	1(20.0)	-	-	4(14.8)
	결측치(N=1)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비품 구비 (N=44)	충족(N=36)	3(60.0)	7(100)	5(100)	21(77.8)
	일부충족(N=5)	-	-	-	5(18.5)
	미충족(N=1)	-	-	-	1(3.7)
	해당없음(N=2)	2(40.0)	-	-	-
담당자 지정 (N=44)	충족(N=31)	2(40.0)	4(57.1)	5(100)	20(74.1)
	일부충족(N=8)	1(20.0)	1(14.3)	-	6(22.2)
	미충족(N=2)	-	1(14.3)	-	1(3.7)

구분		상시근로자 수(N=44)			
		20인 미만 (N=5)	20인~50인 미만 (N=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27)
	결측치(N=1)	-	1(14.3)	-	-
	해당없음(N=2)	2(40.0)	-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44)	충족(N=37)	3(60.0)	7(100)	5(100)	22(81.5)
	일부충족(N=5)	-	-	-	5(18.5)
	미충족(N=0)	-	-	-	-
	해당없음(N=2)	2(40.0)	-	-	-
표지판 부착 (N=44)	충족(N=31)	3(60.0)	6(85.7)	5(100)	17(63.0)
	일부충족(N=8)	-	-	-	8(29.6)
	미충족(N=1)	-	1(14.3)	-	-
	결측치(N=2)	-	-	-	2(7.4)
	해당없음(N=2)	2(40.0)	-	-	-
다른목적 으로 사용 (N=44)	그렇다(N=24)	1(20.0)	4(57.1)	3(60.0)	16(59.3)
	일부그렇다(N=6)	-	-	-	6(22.2)
	그렇지않다(N=9)	2(40.0)	2(28.6)	2(40.0)	3(11.1)
	결측치(N=3)	-	1(14.3)	-	2(7.4)
	해당없음(N=2)	2(40.0)	-	-	-

\* 복수응답

### 9) 폐기물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폐기물업은 총 65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되었고, 그 중 모두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6>.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고, 휴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는 식당, 탈의실, 회의실, 기타 순이었다.

일부 미충족 관리기준 항목으로는 유해물질격리, 천장높이, 냉방시설, 습도기준, 소음노출, 비품구비가 있었다.

<표 Ⅲ-26> 폐기물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구분		상시근로자 수(N=65)			
		20인 미만 (N=32)	20인~50인 미만 (N=2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1)
사업장 위치 (N=65)	산업단지(N=19)	7(21.9)	9(33.3)	2(40.0)	1(100)
	지식산업센터(N=0)	-	-	-	-
	기타(N=45)	24(75.0)	18(66.7)	3(60.0)	-
	결측치(N=1)	1(3.1)	-	-	-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N=65)	예(N=63)	31(96.9)	26(96.3)	5(100)	1(100)
	아니요(N=1)	-	1(3.7)	-	-
	결측치(N=1)	1(3.1)	-	-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N=65)	있음(N=9)	4(12.5)	4(14.8)	-	1(100)
	없음(N=56)	28(87.5)	23(85.2)	5(100)	-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65)	예(N=9)	4(12.5)	4(14.8)	-	1(100)
	아니요(N=0)	-	-	-	-
	해당없음(N=56)	28(87.5)	23(85.2)	5(100)	-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N=65)	원청 휴게시설 이용(N=8)	4(12.5)	3(11.1)	-	1(100)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N=1)	-	1(3.7)	-	-
	해당없음(N=56)	28(87.5)	23(85.2)	5(100)	-
휴게시설 유무 (N=65)	예(N=65)	32(100)	27(100)	5(100)	1(100)
	아니요(N=0)	-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65)			
		20인 미만 (N=32)	20인~50인 미만 (N=2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1)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N=65)	예(N=48)	21(65.6)	21(77.8)	5(100)	1(100)
	아니요(N=17)	11(34.4)	6(22.2)	-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N=65)	회의실(N=4)	2(18.2)	1(16.7)	-	-
	탈의실(N=6)	4(36.4)	2(33.3)	-	-
	식당(N=8)	5(45.5)	3(50.0)	-	-
	기타(N=2)	2(18.2)	-	-	-
휴게시설 개수 (N=65)	1개(N=28)	17(53.1)	10(37.0)	1(20.0)	-
	2개(N=18)	12(37.5)	6(22.2)	-	-
	3개이상(N=19)	3(9.4)	11(40.7)	4(80.0)	1(100)
휴게시설 평균면적		35.6±25.7	55.2±59.1	74.6±53.9	180±00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 7명	약 20명	약 58명	약 20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N=64)	교대근무(N=10)	3(9.4)	6(22.2)	1(20.0)	-
	외근(N=0)	-	-	-	-
	작업형태(N=25)	12(37.5)	9(33.3)	3(60.0)	1(100)
	휴식주기(N=31)	17(53.1)	14(51.9)	-	-
	기타(N=2)	2(6.3)	-	-	-
휴게시설 위치* (N=65)	건물내지상(N=46)	20(62.5)	21(77.8)	4(80.0)	1(100)
	건물내지하(N=1)	1(3.1)	-	-	-
	건물밖옥외(N=10)	7(21.9)	3(11.1)	-	-
	근무외장소(N=12)	6(18.8)	5(18.5)	1(20.0)	-

구분		상시근로자 수(N=65)			
		20인 미만 (N=32)	20인~50인 미만 (N=2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1)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N=65)	충족(N=61)	30(93.8)	26(96.3)	4(80.0)	1(100)
	일부충족(N=3)	1(3.1)	1(3.7)	1(20.0)	-
	미충족(N=1)	1(3.1)	-	-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N=65)	충족(N=58)	30(93.8)	24(88.9)	4(80.0)	-
	일부충족(N=4)	1(3.1)	2(7.4)	1(20.0)	-
	미충족(N=3)	1(3.1)	1(3.7)	-	1(100)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N=65)	충족(N=62)	31(96.9)	26(96.3)	5(100)	-
	일부충족(N=2)	1(3.1)	-	-	1(100)
	미충족(N=1)	-	1(3.7)	-	-
천장 높이 2.1 m 이상 (N=65)	충족(N=55)	28(87.5)	22(81.5)	5(100)	-
	일부충족(N=5)	1(3.1)	3(11.1)	-	1(100)
	미충족(N=3)	3(9.4)	-	-	-
	결측치(N=2)	-	2(7.4)	-	-
냉방시설 (N=65)	충족(N=59)	27(84.4)	26(96.3)	5(100)	1(100)
	일부충족(N=2)	2(6.3)	-	-	-
	미충족(N=4)	3(9.4)	1(3.7)	-	-
난방시설 (N=65)	충족(N=60)	27(84.4)	27(100)	5(100)	1(100)
	일부충족(N=3)	3(9.4)	-	-	-
	미충족(N=2)	2(6.3)	-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65)			
		20인 미만 (N=32)	20인~50인 미만 (N=2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1)
습도기준 (N=65)	충족(N=45)	20(62.5)	20(74.1)	5(100)	-
	일부충족(N=9)	5(15.6)	4(14.8)	-	-
	미충족(N=11)	7(21.9)	3(11.1)	-	1(100)
조명기준 (N=65)	충족(N=60)	29(90.6)	26(96.3)	5(100)	-
	일부충족(N=4)	3(9.4)	-	-	1(100)
	미충족(N=1)	-	1(3.7)	-	-
환기가능 (N=65)	충족(N=57)	31(96.9)	24(88.9)	2(40.0)	-
	일부충족(N=6)	1(3.1)	2(7.4)	3(60.0)	-
	미충족(N=2)	-	1(3.7)	-	1(100)
소음노출 (N=65)	그렇다(N=5)	3(9.4)	2(7.4)	-	-
	일부그렇다(N=10)	4(12.5)	5(18.5)	-	1(100)
	그렇지않다(N=50)	25(78.1)	20(74.1)	5(100)	-
식수 설비 구비 (N=65)	충족(N=58)	29(90.6)	23(85.2)	5(100)	1(100)
	일부충족(N=5)	3(9.4)	2(7.4)	-	-
	미충족(N=1)	-	1(3.7)	-	-
	결측치(N=1)	-	1(3.7)	-	-
비품 구비 (N=65)	충족(N=57)	30(93.8)	21(77.8)	5(100)	1(100)
	일부충족(N=4)	1(3.1)	3(11.1)	-	-
	미충족(N=3)	1(3.1)	2(7.4)	-	-
	결측치(N=1)	-	1(3.7)	-	-

구분		상시근로자 수(N=65)			
		20인 미만 (N=32)	20인~50인 미만 (N=27)	50인~100인 미만 (N=5)	100인 이상 (N=1)
담당자 지정 (N=65)	충족(N=44)	22(68.8)	18(66.7)	4(80.0)	-
	일부충족(N=12)	3(9.4)	7(25.9)	1(20.0)	1(100)
	미충족(N=8)	7(21.9)	1(3.7)	-	-
	결측치(N=1)	-	1(3.7)	-	-
휴게시설 청결유지 (N=65)	충족(N=54)	28(87.5)	22(81.5)	4(80.0)	-
	일부충족(N=10)	4(12.5)	4(14.8)	1(20.0)	1(100)
	결측치(N=1)	-	1(3.7)	-	-
표지판부착 (N=65)	충족(N=34)	13(40.6)	16(59.3)	4(80.0)	1(100)
	일부충족(N=15)	8(25.0)	6(22.2)	1(20.0)	-
	미충족(N=15)	11(34.4)	4(14.8)	-	-
	결측치(N=1)	-	1(3.7)	-	-
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 (N=65)	그렇다(N=8)	5(15.6)	3(11.1)	-	-
	일부그렇다(N=6)	3(9.4)	2(7.4)	1(20.0)	-
	그렇지않다(N=50)	24(75.0)	21(77.8)	4(80.0)	1(100)
	결측치(N=1)	-	1(3.7)	-	-

\* 복수응답

## 7) 취약직종 설문지 조사결과

설문조사 결과 취약직종이 있는 사업장은 총 993개소였다<표 III-27>. 작년에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그리고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은 각각 3.4%, 6.3%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기타 취약직종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1.8%, 1.4%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약직종별 관리기준 항목의 준수여부(충족으로 응답한 비율)는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가 60~91.8%, 건물 경비원 69.2~90.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8.7~91.3%으로 충족 비율이 작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직종을 구분한 조사결과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표 III-27> 취약직종 설문지 항목별 조사결과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사업장 위치	산업단지	12(10.9)	102(30.2)	122(24.6)	11(22.0)
	지식산업센터	8(7.3)	1(0.3)	3(0.6)	1(2.0)
	기타	90(81.8)	156(46.2)	288(58.2)	38(76.0)
	결측치	-	1(0.3)	3(0.6)	-
	해당없음	-	78(23.1)	79(16)	-
전용면적 300 m <sup>2</sup> 이상	예	94(85.5)	254(75.1)	402(81.2)	50(100)
	아니요	14(12.7)	5(1.5)	12(2.4)	-
	결측치	-	1(0.3)	2(0.4)	-
	해당없음	-	78(23.1)	79(16)	-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있음	94(85.5)	182(53.8)	291(58.8)	30(60.0)
	없음	14(12.7)	156(46.2)	204(41.2)	20(40.0)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65)	예	48(43.6)	174(51.5)	282(57)	28(56.0)
	아니요	6(5.5)	8(2.4)	9(1.8)	2(4.0)
	해당없음	56(50.9)	156(46.2)	204(41.2)	20(40.0)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원청 휴게시설 이용	27(24.5)	92(27.2)	158(31.9)	20(40.0)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	67(19.8)	102(20.6)	6(12.0)
	하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13(11.8)	11(3.3)	16(3.2)	2(4.0)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기타	8(7.3)	3(0.9)	4(0.8)	-
	결측치	-	1(0.3)	2(0.4)	-
	해당없음	62(56.4)	164(48.5)	213(43.0)	22(44.0)
휴게시설 유무	예	110(100)	332(98.2)	488(98.6)	50(100)
	아니요	-	6(1.8)	7(1.4)	-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예	80(72.7)	262(77.5)	380(76.8)	37(74.0)
	아니요	30(27.3)	70(20.7)	108(21.8)	13(26.0)
	해당없음	-	6(1.8)	7(1.4)	-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회의실	10(9.1)	22(31.4)	35(32.4)	4(8.0)
	탈의실	12(10.9)	30(32.4)	53(49.1)	6(12.0)
	식당	6(5.5)	14(33.4)	14(13.0)	3(6.0)
	기타	3(2.7)	18(34.4)	26(24.1)	3(6.0)
휴게시설 개수	1개	51(46.4)	121(35.8)	152(30.7)	24(48.0)
	2개	23(20.9)	73(21.6)	137(27.7)	12(24.0)
	3개이상	36(32.7)	138(40.8)	199(40.2)	14(28.0)
	해당없음	-	6(1.8)	7(1.4)	-
휴게시설 평균면적		69.1±47.1	293.8±242	22.8±201	53.1±51.4
휴게시설 동시사용인원		약26.6명	약82명	약 65명	약22.5명
동시사용인 원 고려사항	교대근무	24(21.8)	75(27.8)	128(30.1)	14(28.0)
	외근	5(4.5)	21(7.8)	32(7.5)	4(8.0)
	작업형태	23(20.9)	85(31.5)	122(28.7)	11(22.0)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휴식주기	58(52.7)	96(35.6)	154(36.2)	24(48.0)
	기타	7(6.4)	25(9.3)	35(8.2)	2(4.0)
휴게시설 위치	건물내지상	89(80.9)	248(27.8)	381(78.1)	45(90.0)
	건물내지하	19(17.3)	84(7.8)	115(23.6)	5(10.0)
	옥상	—	1(31.5)	4(0.8)	—
	건물밖옥외	10(9.1)	20(35.6)	20(4.1)	3(6.0)
	근무외장소	8(7.3)	21(9.3)	25(5.1)	1(2.0)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충족	92(83.6)	287(84.9)	425(85.9)	47(94.0)
	일부충족	11(10.0)	40(11.8)	57(11.5)	2(4.0)
	미충족	7(6.4)	5(1.5)	6(1.2)	1(2.0)
	해당없음	—	6(1.8)	7(1.4)	—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충족	94(85.5)	286(84.6)	424(85.7)	45(90.0)
	일부충족	11(10.0)	39(11.5)	54(10.9)	2(4.0)
	미충족	5(4.5)	7(2.1)	10(2.0)	3(6.0)
	해당없음	—	6(1.8)	7(1.4)	—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충족	95(86.4)	296(87.6)	439(88.7)	46(92.0)
	일부충족	8(7.3)	29(8.6)	41(8.3)	3(6.0)
	미충족	7(6.4)	7(2.1)	8(1.6)	1(2.0)
	해당없음	—	6(1.8)	7(1.4)	—
천장 높이 2.1 m	충족	94(85.5)	305(90.2)	452(91.3)	44(88.0)
	일부충족	10(9.1)	23(6.8)	29(5.9)	3(6.0)

문항	세부문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이상	미충족	6(5.5)	4(1.2)	5(1.0)	3(6.0)
	결측치	—	—	2(0.4)	—
	해당없음	—	6(1.8)	7(1.4)	—
냉방시설	충족	101(91.8)	295(87.3)	442(89.3)	48(96.0)
	일부충족	7(6.4)	34(10.1)	43(8.7)	2(4.0)
	미충족	2(1.8)	3(0.9)	3(0.6)	—
	해당없음	—	6(1.8)	7(1.4)	—
난방시설	충족	100(90.9)	295(87.3)	440(88.9)	47(94.0)
	일부충족	7(6.4)	34(10.1)	45(9.1)	3(6.0)
	미충족	3(2.7)	3(0.9)	3(0.6)	—
	해당없음	—	6(1.8)	7(1.4)	—
습도기준	충족	83(75.5)	245(72.5)	366(73.9)	45(90.0)
	일부충족	15(13.6)	59(17.5)	76(15.4)	1(2.0)
	미충족	12(10.9)	28(8.3)	45(9.1)	4(8.0)
	결측치	—	—	1(0.2)	—
	해당없음	—	6(1.8)	7(1.4)	—
조명기준	충족	98(89.1)	301(89.1)	443(89.5)	48(96.0)
	일부충족	8(7.3)	24(7.1)	38(7.7)	2(4.0)
	미충족	4(3.6)	7(2.1)	7(1.4)	—
	해당없음	—	6(1.8)	7(1.4)	—

문항	세부문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환기가능	충족	86(78.2)	234(69.2)	340(68.7)	43(86.0)
	일부충족	17(15.5)	69(20.4)	93(18.8)	2(4.0)
	미충족	7(6.4)	29(8.6)	55(11.1)	5(10.0)
	해당없음	-	6(1.8)	7(1.4)	-
소음노출	그렇다	28(25.5)	23(6.8)	37(7.5)	9(18.0)
	일부그렇다	16(14.5)	41(12.1)	59(11.9)	5(10.0)
	그렇지않다	66(60.0)	267(79)	391(79.0)	36(72)
	결측치	-	1(0.3)	1(0.2)	-
	해당없음	-	6(1.8)	7(1.4)	-
식수 설비 구비	충족	77(70.0)	236(69.8)	354(71.5)	41(82.0)
	일부충족	20(18.2)	65(19.2)	87(17.6)	5(10.0)
	미충족	13(11.8)	30(8.9)	46(9.3)	4(8.0)
	결측치	-	1(0.3)	1(0.2)	-
	해당없음	-	6(1.8)	7(1.4)	-
비품 구비	충족	95(86.4)	286(84.6)	426(86.1)	44(88.0)
	일부충족	9(8.2)	39(11.5)	53(10.7)	4(8.0)
	미충족	6(5.5)	6(1.8)	8(1.6)	2(4.0)
	결측치	-	1(0.3)	1(0.2)	-
	해당없음	-	6(1.8)	7(1.4)	-
담당자 지정	충족	71(64.5)	244(72.2)	376(76)	38(76.0)
	일부충족	25(22.7)	63(18.6)	73(14.7)	5(10.0)

문항	세부문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110)	건물경비원 (N=3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495)	기타 취약직종 (N=50)
	미충족	14(12.7)	24(7.1)	38(7.7)	7(14.0)
	결측치	—	1(0.3)	1(0.2)	—
	해당없음	—	6(1.8)	7(1.4)	—
휴게시설 청결유지	충족	95(86.4)	291(86.1)	435(87.9)	44(88.0)
	일부충족	12(10.9)	38(11.2)	46(9.3)	2(4.0)
	미충족	3(2.7)	2(0.6)	5(1.0)	4(8.0)
	결측치	—	1(0.3)	2(0.4)	—
	해당없음	—	6(1.8)	7(1.4)	—
표지판부착	충족	72(65.5)	248(73.4)	384(77.6)	41(82.0)
	일부충족	15(13.6)	54(16.0)	63(12.7)	3(6.0)
	미충족	22(20.0)	28(8.3)	36(7.3)	6(12.0)
	결측치	—	2(0.6)	5(1.0)	—
	해당없음	—	6(1.8)	7(1.4)	—
휴게시설외 다른목적 사용	그렇다	18(16.4)	26(7.7)	41(8.3)	4(8.0)
	일부그렇다	10(9.1)	48(14.2)	72(14.5)	6(12.0)
	그렇지않다	82(74.5)	256(75.7)	372(75.2)	40(80.0)
	결측치	—	2(0.6)	3(0.6)	—
	해당없음	—	6(1.8)	7(1.4)	—

## 2. 노사 휴게시설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의견

### 1) 노동계 관계자 의견

노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은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노동계 관계자 애로사항

구분	휴게시설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건설, 토목	<p>○ 토목,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치, 규모, 점검 등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하면 설치율과 관리기준 준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소규모현장도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해 놓으면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이후 감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으면 함.</p> <p>○ 공사 부지가 협소한 소규모 건설현장 및 도심지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부지가 협소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사무실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컨테이너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를 휴게시설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 임대 버스를 활용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함. 특히 폭염 시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p>
취약 노동자 (배달원 및 대학 내 취약 노동자)	<p>○ 배달원 -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회사는 배달 지정권한이 대부분 플랫폼 회사에 있고, 주문배송 통합 플랫폼으로 기본이 1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최근에는 쿠팡 등에서 알뜰배달(인접 배송 코스를 대상으로)이라고 하여 2건도 배송하고 있음. 픽업 배송 구조로 인접한 위치의 식당에서 제품을 연이어 픽업한 뒤 배달도 연이어 실시하는 구조임.</p>

- 반면에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의 회사는 가게(식당 등)에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에서 배달 업체를 부르는 방식임. 그러므로 배달전문 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묶음 배송을 흔히 하고 있고, 배달원은 상가 회사 지점 소속으로 가입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 휴대폰 어플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함.

- 지점은 사무실겸 배달원의 대기실로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점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로 2-3 m, 세로 5~7 m 정도,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훨씬 넓음. 지점 내에는 의자, 테이블, 식수설비, 에어컨 등의 시설이 보통 갖춰져 있어 배달원이 잠시나마 휴게를 취할 수는 있지만, 휴게시설 전용 공간은 아니며 지점에 따라 10명 이상에서 많게는 백 명씩 소속되어 있어 공간이 부족하며 또한 배달원들이 휴대폰 콜 주문을 받거나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게시설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렇다고 지점의 면적을 대폭 증가시키거나 지점 내에 별도로 휴게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은 휴게의 실효성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배달원들이 항상 지점에 나오지는 않으며, 지점에 거의 방문하지 않는 배달원도 많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배달원들은 편의점, 길거리 그늘, 카페 등에서 잠시 쉬며 콜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라이더에 적합한 휴게시설 안으로는 첫째, 이동쉼터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2023년 하반기 기준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국에 6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 12개소, 경기도 20개소, 부산 3개소 등이며 이동 쉼터는 사실상 인근의 배달원 위주로 이용하고,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 확충과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각 지자체(구)마다 최소 1개씩의 이동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배달원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동쉼터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이동 쉼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배달 차량(오토바이 등)을 주차할 곳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고층부에 쉼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다고 함. 따라서, 이동쉼터는 상가 밀집구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배달 차량을 안전하게(오토바이 주차 편리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충족) 주차할 수 공간이 있는 곳에 마련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됨. 둘째, 배달 상품을 픽업하는 B마트(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배달몰)와 같은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유아한 청년들” 등과 관계 법령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대학 내 취약직종(환경미화원, 경비원, 조리원 등)
- 대학 내 취약직종(청소 및 환경미화, 조리, 시설관리 등) 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등에 제시된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에 나타남.
  - 취약직종 노동자 대부분이 매일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고,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휴게시설 내 비품 구비 부족, 방음, 습기, 냄새 문제 등이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됨. 따라서, 필요한 시설개선과 비품을 마련하는 휴게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함.
  - 산업법 이외에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함. 특히, 1인당 적정 면적, 작업공간과 휴게공간과의 거리, 필수비품, 내부 환경, 장판 도배·소모품 교체주기 등 휴게시설 조성과 관리 운영의 원칙을 가이드 라인에 담아 마련해야 함.
  - 대학이 가이드라인 준수 시 지자체에서는 시설 개보수, 필요 설비 및 비품 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대학 내 모든 노동자는 권리 차원에서 휴식(시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함.
  - 휴게시설 제도와 활용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2) 경영계 관계자 의견

경영계 관계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은 <표 III-29>과 같다.

<표 III-29> 경영계 관계자 애로사항

구분	휴게시설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건설,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휴게시설 규정을 건축 공사 현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무리가 있음. 컨테이너를 확보하여 휴게시설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인원)의 규모에 따라 컨테이너를 다수 비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함. 따라서, 골조 올라가기 시작하면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li> <li>-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고층부에서 1층으로 이동에 따른 불편과 시간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물내에서 휴게시설의 이동설치가 용이 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는 1층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이후 중고층부 공사작업시에는 10층 이상에 휴게시설을 이동 설치하여 이용함. 이와 같은 건축중인 건물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음 (에어컨 등을 이용한 실내온도 기준과 창문 등을 이용한 환기조건에서 있어 건설현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개선)</li> </ul>
주택관리업 (아파트 관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공간을 휴게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 제도 실시 후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최대한 노력함</li> <li>- 아파트 동 마다 있는 경비실 중 비어 있는 경비실을 경비원 휴게시설로 사용하기도 함(과거에 비해 경비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능). 그러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보통 지하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초 휴게시설 용도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조건(창문 등을 이용한 환기, 공간의 높이 등)은 부득이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따라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간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함.</li> </ul>

보건업

○ 중소병원

- 보건의료 분야는 휴게시간 편차가 직종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의무화 하는 것 보다는 보건의료 분야 는 유연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중소병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상시 간호사 부족문제, 잦은 이직으로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확보가 필요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음. 더불어 병원종사자 중 간호 인력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특성상 70% 이상의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식시간을 별도로 가지기에 애로사항이 많음. 실제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에 4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 30분 등 명시되어 있으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상시 연장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간호사 병동에 별도의 휴게시설과 탈의실이 필요하며 남·녀 구분도 필요함

-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어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소병원 실정임. 본인의 병원도 법적 준수를 위한 크기와 위치 구색을 갖추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병상 간 1미터 간격유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도입 시설 환경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환자 불편감 개선을 위해 직원(간호인력)이 탈의실 공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병원도 있음. 창고나 빈 병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소병원도 있음. 간호처치실, 주사준비실은 필요하기에 근무조당 인원수의 의자 몇 개만 제공하기도 함.

-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로 중소병원은 경영운영 상 환자수 감소로 빈 병실을 휴게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즉, 법 개정으로 형식적 의무 준수를 하기에 실효성이 없는 공간 낭비가 되는 면도 있음. 사업주는 휴게시설 위치가 해당 병동(층) 소속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간호관리자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간호부서 간호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병행하듯 마찬가지로 중소병원의 실정임.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병원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시 남·녀 구분 휴게시설과 탈의공간 확보가 더 요구됨.

○ 노인요양시설

- 기존에 이미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휴게시설을 별도로 가지지 않은 기관이 많으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실, 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을 휴게시설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시설 및 설비기준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30명이상인 경우에 요양보호사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에는 이 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별도의 돌봄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은 되었으나 법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기관이 많은 실정임. 일부 공간이 충분한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은 공간을 휴게시설로 만들어 운영 중인 시설도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도 많으므로 기존 요양보호사실 등에 편히 설 수 있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및 설비를 갖추어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새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6년마다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갱신 심사를 실시하는데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설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준 강화를 통해 휴게시설 제도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운영 관련 직원의 후생복지 지표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시 가점을 주는 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서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3) 전문가 및 보건관리자 관계자 의견

전문가 및 보건관리자 관계자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전문가 및 보건관리자 관계자 애로사항

#### 휴게시설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비용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고용노동부의 시기 적절한 휴게시설 지원정책 제도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고, 관심도 거의 없기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민관기관의 협업으로 해당되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정부 지원정책을 알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
-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되지 않음. 업종을 구별하지 않는 정부의 적극적인 휴게시설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됨
- 건설업과 그 외 업종에서 휴게시설의 설치장소가 건물 내 부족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야외 휴게시설 설치의 활성화 필요
- 야간작업자 또는 교대 근무자가 많은 사업장은 휴게시설 중에 암막 커튼의 설치로 짧은 시간 휴식을 취하더라도 깊고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반 근무자의 휴식 공간과 구분하여 설치하면 좋겠음
- 휴게시설은 남, 여 구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질의 회신 사례 및 안내에서 '휴게공간 설치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을 휴게공간으로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대부분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5번 조명 적절한 밝기 (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항목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밝기가 100~200럭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럭스 수치는 삭제해 보임.
- 산안법 시행규칙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적용함에 따라 직장 내 휴게공간에 대한 개념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장소만이 휴게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됨.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의미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中)

○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저변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법 시행 이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예를 들어 카페테리아, 라운지 등 운용)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던 곳은 관리기준에 맞추어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음. 위의 ‘휴게시설’의 정의와 같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폭넓게 휴게공간으로 인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가이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가이드를 세분화할 경우 특히 취약직종으로 분류된 7개 직종(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의 휴게공간은 최근 전체사업장 모든 직종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해당 직종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열악한 휴게공간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있어 취약직종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상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일부기준 적용제외 항목 중 전용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크기,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상주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또한 별도로 정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사무직의 경우 지정된 좌석이 있는 경우 정해진 휴식시간은 상사, 동료의 눈치를 안보고 사무환경을 조정(소등 등)하여 자리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4) 건설업 관계자 의견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휴게시설 사전확보, 토목공사, 온습도 기준, 교육인식,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및 기타 제도개선으로 구분하였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2023.10.05.) 제7조1항6호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3.06.28.) p.64에 따르면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설치의 사용불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표 III-31>.

<표 III-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휴게시설 관련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부분 안전관리자 인건비, 각종 안전용품 등으로 사용되어 휴게시설 관련 예산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비 효율 향상 및 휴게시설 관련 별도 예산 마련 등 지원 범위 확대되어야 함</li> </u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게시설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불가함(혹서기, 혹한기 제외)</li> <li>휴게시설 설치하려는 컨테이너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 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함</li> <li>휴게시설 관리비용 및 부자재 비용에 대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li> <li>휴게시설 임대 또는 구매비용을 혹한기, 혹서기에만 인정되는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 관련 비용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ul>

## (2) 휴게시설 사전 확보 문제점 및 개선방안

휴게시설 사전 확보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큰 비용, 청소 및 관리 담당자 미지정, 컨테이너 설치 시 공간부족,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출력인원 고려가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비용은 도급시 공사내역 포함, 청소 및 관리 담당자 주체 지정, 공사 준공 전 휴게시설 위치 지정, 현장 인근 외부 시설 임대하여 휴게공간 마련, 현장 출력인원에 맞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표 III-32>.

<표 III-32> 휴게시설 확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의 문제가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관련 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했으면 좋겠음</li> <li>• 휴게시설 설치 예산을 도급내역에 포함시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담당자 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청소 및 관리 등 담당자 주체 불명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협력업체 등의 휴게시설 청소, 관리 등의 담당자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li> </ul>
휴게시설 설치 장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내 컨테이너 설치 등 공간이 부족하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준공 전 휴게시설 위치 파악 등 작업구간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공간 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함</li> <li>• 현장 인근의 외부 시설 등을 임대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립이 필요함</li> </ul>
출력인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장당 출력인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출력 인원이 동시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li> <li>• 현장 출력인원의 성비를 고려 할 때 한 명의 여성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휴게시설의 크기 등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출력 인원에 따른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산출</li> <li>• 현장 출력인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li> </ul>

### (3) 토목공사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목공사현장의 문제점은 초기공사, 이동공사 등 공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장의 특성상 도로확장공사, 도심지 현장 특성상 간헐적,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작업이 많아 고정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냉난방시설 구비, 조도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 핸드 선풍기, 충전식 선풍기와 같은 대체품을 허용 해야 되고, 휴게시설 내 적정온도를 지키는 것보다 핫팩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 대형버스 등을 쉼터로 꾸며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III-33>.

<표 III-33> 토목공사현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특성상 간헐적,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작업이 많아 고정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움</li> <li>• 전기사용에 제한이 있어 냉난방시설 구비, 조도 등의 확보가 어려움</li> <li>• 전원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세균등의 오염원인 이 됨.</li> <li>• 도로확장공사, 도심지 현장 등의 현장 상황은 공간이 부족하여 휴게시설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li>• 철거공사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장 내 모든 자재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반입이 어려움.</li> <li>• 소음이나 분진 등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도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 핸드 선풍기, 충전식 선풍기 등 가스난로 등과 같은 냉난방기 대체품 허용</li> <li>• 휴게시설의 적정온도를 지키는 것보다 햇볕 등을 지급하여 관리하는 방안</li> <li>• 토목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휴게시설 관련 비용처리, 설치 위치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li> <li>• 토목현장에 대형버스 등을 쉼터로 꾸며 휴게시설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li> </ul>
휴게시설 왕복 이동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현장은 현장 작업 범위가 넓어 지정된 휴게시설 왕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최소면적(6 m<sup>2</sup>)의 이동식 파라솔, 원터치 쉼터 등의 이동이 편리한 임시 휴게시설 허용 하도록 완화</li> <li>• 공용으로 설 수 있는 휴게공간과 별도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설 수 있는 그늘 및 간이 의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li> <li>• 왕복 이동시간 보다는 작업장에서 휴게쉼터까지의 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함 (작업장으로부터 100m이내 설치한다 등)</li> </ul>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비로 휴게시설에 필요한 물품(책상, 의자 등) 구매 불가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 시 휴게시설을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예산확보 하는 것이 적절함</li> </ul>

#### (4) 온·습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옥외에서 시행하는 작업이 많아 옥외근로자용 휴게시설을 구비하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습도 및 조절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공종별 진행에 따른 단서조항이 필요하고, 옥외근로자용 휴게시설에도 적정습도 유지방법 및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

<표 III-34> 온습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 작업특성상, 옥외에서 시행하는 작업이 많으므로 ‘옥외근로자용 휴게시설’을 구비하여 이용중에 있으나, 대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습도 조절하기가 매우 제한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종별 진행에 따른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옥외근로자용 휴게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정습도 유지방법 및 대안 공유 필요</li> </ul>

(5) 교육 인식변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근로자는 휴식시간 및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많이 제공되면 좋을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

<표 III-35> 교육 인식변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간의 중요성,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필요</li> </ul>

(6)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및 기타의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시설 최소바닥면적은 6 m<sup>2</sup>으로 되어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냉난방과 같은 설비를 갖추었을 때 2명 이상 쉬는데 좁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한 장소에 머물면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설까지 가는데 무리가 있고,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없어 정수기와 같은 비품을 구비해두었을 때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건설 현장 기준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증대 및 휴게시설 위치 기준 명확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포함되는 비품(생수, 물 등) 지급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표 III-36>

<표 III-36>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최소 바닥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인 6m<sup>2</sup>는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냉난방 설비를 갖추었을 때 2명이상 쉬기에 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현장 기준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기준 증대</li> </ul>
휴게시설 왕복 이동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작업특성 상 한 장소에 머물러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설 위치 기준이 애매함</li> <li>• 작업반경이 넓은 근로자의 경우 기존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작업 진행도에 따라 휴게시설 위치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li> <li>• 휴게시간이 10분일 경우 왕복 이동시간 20%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됨. 하지만 자재적재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현장 기준 휴게시설 위치 기준 명확화</li> </ul>
비품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작업시 작업장으로 이동시 개인 또는 팀별 물통(시원한 생수 or 얼음물)을 준비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함</li> <li>• 전기 공급이 안되는 곳에서 식수 설비는 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법령에 '지급' 문구도 포함</li> </ul>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p>오염이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도가 높은 장소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 비품을 구비해도 관리감독자가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li> </ul>	
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에 맞지않는 법적 관리기준으로 형식적 휴게시설 운영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건설현장 차등적 관리기준 적용(건설 현장은 소규모, 본부지의 잔여부지 협소로 잦은 이동)</li> <li>건설현장 법적 관리기준 완화(텐트형, 지하주차장등 작업장 활용한 휴게시설 인정)</li> <li>점심시간에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로 사용인정</li> <li>혹서기/혹한기 등 냉난방 시설을 갖춘 이동식 휴게시설(4m*2m) 인정(조도 및 분진 일부 위법됨)</li> <li>노사 협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적 관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함</li> </ul>
휴식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짧은 사용시간 대비 휴게시설 설치/관리비용 과다</li> <li>(건설업 근로자 작업간 10분 휴식시 휴게시설 미사용, 점심시간만 휴게시설 필요, 남녀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장 주변 팀별 간이 휴게시설 운영(간이 휴게시설 운영지침 정립)</li> </ul>
설치 기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특성상 한 곳에 머무르며 작업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위치적 어려움이 있음.</li> <li>전기연결 작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적절한 온습도, 조명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li> <li>분진, 소음에 노출기준 및 이격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여 위치, 온습도 조명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li> <li>분진, 소음 노출기준 및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li> </ul>

## 5)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의견

### (1) 공동주택단지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사업자(사업장) : 보통 위탁관리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음

○ 소유자(입주자) : 공동주택단지 내의 자산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의사결정 : 공동주택단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을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비용부담 :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을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입주자들의 거부감이 있으며, 또한 추가 비용 부담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음

○ 기타사항 : 경비원 및 미화원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위치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각 경비초소 또는 근무위치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공간부족(지상 공간 또는 주민공동시설 공간) 등의 한계점이 있음

## (2) 제도개선 방향

##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동의를 받기가 수월함. 공간확보가 가능한 휴게시설, 온도, 습도, 조명, 환기 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치 비용 지원이 요구됨

## ○ 휴게시설로 용도변경 요건 완화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등 2분의 1이상의 동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자등이 반대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입주자등 2분의 1이상의 동의 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 ○ 지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완화

: 공동주택단지 특성상 지하 공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근무 장소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다수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지하공간에 환기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 완화 또는 공기청정기 등 대안 제시가 요구됨

## ○ 법 적용의 대상자와 책임자의 일치 필요

: 사업자와 소유자의 휴게시설 관련 권리행사 범위가 다르고, 산안법상 책임범위가 달라 주체적인 설치가 어려움. 따라서 최소한의 책임범위를 지정하여 권리행사 가능한 대상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이 필요

## ○ 법 적용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원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유예조치 필요

: 50인 미만 현장에 법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완벽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및 현장 상황에 따른 1~3차 단계적 유예조치 등 고려 필요

### 3. 휴게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지원 사업 현황

#### 1)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건축조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지자체는 34개 기관으로 <표 III-37>와 같다.

<표 III-37>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건축조례

자치단체		건축조례 조항	관련내용	
광역시 (5)	서울	제17조 3항 별표 2의2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 조립식,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부산	제18조 3항 7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대구	제22조 3항 5호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인천	제18조 3항 7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것	
	광주	제22조	•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기초 (29)	부산 (1)	부산 기장	제23조 3항 8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고양	제24조 별표2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 구조 제한없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경기 (22)	용인	제23조 2항 14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성남	제15조 2항 3호	•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자치단체		건축조례 조항	관련내용
	부천	제19조 2항 별표2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조립식,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남양주	제20조 2항 9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안양	제20조 2항 5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층으로 한정, 조립식, 컨테이너 등,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평택	제23조 3항 6호, 17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휴게시설로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에 한정한다)
	시흥	제19조 2항 2의2호, 5호	• 공장부지내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과주	제20조 3항 9호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용도: 휴게시설)
	광주	제22조 3항 6호	•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광명	제21조 3항 6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군포	제19조 2항 4호	• 아파트단지 내 근무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및 휴게시설: 1층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자치단체		건축조례 조항	관련내용
	오산	제21조 2항 8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이천	제20조 2항 10호	•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휴게시설 (다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할 것, 1층에 설치할 것, 옥상 설치 외)
	안성	제25조 3항 14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포천	제19조 2항 21호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 포함)
	의왕	제21조 2항 6호	•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양평	제17조 2항 5의3호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여주	제23조 2항 10호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동두천	제21조 3항 8호	•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
	과천	제17조 2항 6호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자치단체		건축조례 조항	관련내용
			구조의 건축물
	연천	제20조 8호	• 공동주택 단지(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에 한한다)
강원 (2)	동해	제21조 2항 별표 1의2	•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근로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정선	제19조 2항 11호	•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충남 (2)	아산	제25조 3항 8호, 14호	•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1층 이하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서산	제24조 2항 11호	•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층에 한함)
경북 (1)	영주	제7조 2항 16호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경남 (1)	밀양	제18조 2항 11호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 2)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주택조례

휴게시설과 관련한 주택관련 조례는 <표 III-38>과 같다.

<표 III-38> 지자체 휴게시설 관련 주택조례

자치단체	주택조례 조항	관련내용
서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충북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장 경비원등의 인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2021.09.29.개정) 제32조(경비원등의 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이하 "경비원등"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등에게 휴게시설(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경비원등의 인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지원금
경기	수원시 주택조례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4조(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제6조(주민공동시설) ④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거동(주민공동시설 옥상 포함)의 옥상 중 1개소 이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 텃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지붕, 조경

자치단체	주택조례 조항	관련내용
		<p>식재, 옥상구조물 설치 등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텃밭의 일부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등)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여건에 따라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lt;본조 신설 2016.06.14.&gt;</p>
	<p>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p>	<p>제32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부대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수 또는 설치 등에 한정하며,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4. 경비원, 미화원 등 용역원 휴게시설</p>
<p>인천</p>	<p>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p>	<p>제3조의4(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p> <p>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24.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lt;신설 2020.7.13.&gt;</p>
<p>경남</p>	<p>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p>	<p>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한정한다. 2. 경로당, 경비실,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냉·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lt;개정 2019.8.14., 2020. 10. 12.&gt;</p> <p>제5조의2(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lt;제목개정,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gt; 3.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를</p>

자치단체	주택조례 조항	관련내용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충남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공용현관, 우편 수취함 등 유지보수<신설 2017.12.20><개정 2019.5.31>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조례	제6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2022. 8. 10.>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보조사업의 종류)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동화장실·어린이놀이터·경로당·조경시설·장애인 편의시설·자전거 보관대·주민운동시설·휴게시설 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 11. 5.)
전남	완도군 공유재산 관례 조례	제47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조 신설 2023. 8. 8.>
광주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4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1·2>

3)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 (총 69개소)

전국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6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Ⅲ-39>.

<표 Ⅲ-39>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

자치단체		면적(m <sup>2</sup> )	운영시간	주이용대상	
서울 (12)	직영 (5)	서초	151	14:00~06:00	대리기사
		북창	333	08:30~20:00	퀵서비스기사
		합정	252	09:00~06:00	대리기사
		상암	204	09:30~18:00	방송미디어 종사자
		녹번	181	09:00~18:00	셔틀버스기사
	자치구 운영 (7)	서대문구	40	10:00~19:00	택배/배달기사
		강남(1호)	5	24시간	배달/대리운전
		강남(2호)	10	24시간	배달/대리운전
		중랑	18.9	09:00~18:00	배달/대리운전
		성동	50	10:00~19:00	배달/대리운전
		도봉	42	19:00~18:00	배달기사
		영등포	114	10:00~21:00	배달/택배기사
경기 (20)	자치구 (20)	하남	204	12:00~06:00	배달/택배/대리기사
		광명	282	9:00~6:00	배달/택배/대리기사
		수원	230	10:00~6:00	배달/대리기사
		광주	270	10:00~06:00	배달/대리기사
		성남	202	09:00~7:00	배달/대리기사

자치단체		면적(m <sup>2</sup> )	운영시간	주이용대상	
		부천	199	10:30~05:30	배달/대리기사
		시흥	109	09:00~05:00	배달/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안양	127	10:00~2:00	배달/대리기사
		고양(화정)	27	24시간	배달/대리기사
		고양(장항)	27	24시간	배달/대리기사
		의왕	329	10:00~02:00	대리/ 배달 기사 및 일반 노동자
		포천	140	10:30~05:30	배달/택배기사
		파주	27	24시간	배달/대리기사
		군포	8.7	06:00~21:50	이동노동자
		안산	152	09:00~06:00	배달/대리기사
		오산	20	24시간	배달/택배/대리기사
		이천	240	24시간	배달/대리기사
		이천	27	24시간	택배/화물기사
		구리	27	24시간	배달/대리기사
		용인	27	24시간	배달/택배/대리기사
부산 (3)	직영 (3)	서면	201	10:00~익일06:00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해운대	244	14:00~06:00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사상	196	14:00~06:00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자치단체		면적(m <sup>2</sup> )	운영시간	주이용대상	
울산 (5)	직영 (2)	남구	224	13:00~06:00	대리기사/택배기사/ 배달/학습지교사 등
		북구	127	13:00~06:00	대리기사/택배기사/ 배달/학습지교사 등
	자치구 (3)	남구(무거)	213.5	24시간 운영	대리기사/배달원
		남구(삼산)	80.2	24시간 운영	대리기사/배달원
		동구	185	10:00~07:00	이동 및 여성노동자, 각위커
경남 (7)	자치구 (7)	창원	260	13:00~06:00	대리기사
		창원	40	13:00~06:00	대리기사
		김해	143	15:00~06:00	대리기사/배달원
		김해(내동)	27	24시간	대리기사/배달원
		김해(구산)	27	24시간	대리기사/배달원
		진주	30	13:00~03:00	대리기사/배달원
		합천	66	24시간	대리기사/배달원
대구 (2)	직영 (2)	수성	159	12:00~06:00	대리기사/배달원
		달서	194	12:00~06:00	대리기사/배달원
광주 (1)	직영 (1)	서구	132	09:00~05:30	대리기사/배달원
대전 (2)	직영 (2)	유성구	223	14:00~06:00	대리기사/배달원
		대덕구	190	13:00~06:00	대리기사/배달원
전남 (2)	자치구 (2)	여수	212	16:00~06:00	대리기사, 쿼서비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나주	125	10:00~24:00	대리기사, 배달원 등

자치단체		면적(m <sup>2</sup> )	운영시간	주이용대상	
전북 (3)	자치구 (3)	익산	165	10:30~05:00	대리기사, 배달원, 생활관리사 등
		전주	33	11:00~03:00	대리기사, 배달원, 생활관리사 등
		전주	33	11:00~03:00	대리기사, 배달원, 생활관리사 등
경북 (4)	자치구 (4)	포항(남구)	27	22:00~02:00	대리기사, 배달원, 학습지교사 등
		포항(북구)	27	22:00~02:00	대리기사, 배달원, 학습지교사 등
		구미	30	10:00~06:00	대리기사, 배달원, 학습지교사 등
		구미	30	10:00~06:00	대리기사, 배달원, 학습지교사 등
충남 (5)	직영 (5)	천안	135	14:00~06:00(주중) ,14:00~22:00(토)	대리기사, 라이더
		천안	48	24시간	대리기사, 라이더
		아산	49	24시간	대리기사, 라이더
		서산	40	24시간	대리기사, 라이더
		당진	33	24시간	대리기사, 라이더
제주 (3)	직영 (3)	제주	159	24시간(평일) 16:00~09:00(토, 일, 공휴일)	대리기사, 배달원 등
		서귀포	215		대리기사, 배달원 등
		신제주	240		대리기사, 배달원 등

4) 지자체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23년 기준)

(1) 광역

광역 자치단체 6개 기관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대상으로는 인천, 전북 등 2곳이 있었으며, 산단 근로자 대상은 광주,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충북, 감정노동자 대상으로는 부산, 경남이 있었다 <표 III-40>.

<표 III-40> 광역 자치단체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자치단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예산
인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준공 20년 이상 공동주택	15백만원
전북	공동주택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00백만원
광주	산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산단 입주기업	150백만원
충북	근무환경 개선사업 (휴게시설 개보수 포함)	시군 소재 중소기업	196백만원
부산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	90백만원
경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인 이하 중소기업 등	250백만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감정노동 사업장	209백만원

(2) 기초

기초 자치단체 57개 기관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대상으로는 36곳, 사회복지시설 22곳, 요양병원 17곳 등 취약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었다<표 III-41>.

<표 III-41> 기초 자치단체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구분	자치단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초	서울 (6)	성동구	폭염기 냉방비 지원사업	공동주택단지	24백만원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0백만원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7년 이상 경과된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5백만원
		노원구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	경비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150백만원
			학교노동자 휴게시설 샤워실 지원	학교	332백만원
		서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3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47백만원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50백만원	
	인천 (1)	서구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20백만원
	광주 (4)	동구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20년 이상)	36백만원
		남구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470백만원
		북구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90백만원
		광산구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5년이상 매출액 150억 이하 중소기업	100백만원
	경기 (29)	수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장노동자	12.6백만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10백만원
고양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중소제조업체	15백만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내 공동주택	150백만원
용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현장근로자	50백만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140백만원
성남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6.3백만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업체	34백만원
부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	90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100백만원
화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63백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소제조기업	100백만원
안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업체	50백만원
남양주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130백만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60백만원
안양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제조업체	24백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86백만원
평택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휴게시설	24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공동주택	140백만원
시흥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30백만원

		공동주택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50백만원
	파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56백만원
	의정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49백만원
	김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24백만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50백만원
	광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48백만원
	군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내 복지시설, 중소기업, 요양병원	18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50백만원
	하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24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44백만원
	양주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10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의무관리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50백만원
	이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24백만원
	안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24백만원
		공동주택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50백만원
	포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	50백만원
	구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10백만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50백만원
	의왕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	54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100백만원
	양평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공동주택(아파트)	20백만원
	여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15백만원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30백만원
	동두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기업	30백만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백만원
	과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내 현장휴게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체	10백만원
	연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체, 요양, 복지시설	30백만원
	가평	공동주택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40백만원
강원 (2)	고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15백만원
	춘천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굴 지원사업	기업	5백만원
충남 (1)	아산시	아파트 휴게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아파트	50백만원
전북 (4)	전주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	30백만원
	군산	공동주택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75백만원
	익산	노후 공동주택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공간	30백만원
	장수	공동주택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10백만원

경북 (1)	안동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조중소기업	7백만원
경남 (9)	창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	40백만원
	사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25백만원
	김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10백만원
	거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35백만원
	양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제조업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20백만원
	의령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10백만원
	함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25백만원
	함양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10백만원
	합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업)	12백만원

(3) 교육

교육청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경북, 세종시 2개 기관이었고, 지원액은 각각 13.7억, 10.6억으로 조사되었다<표 Ⅲ-42>.

<표 Ⅲ-42> 교육청 휴게시설 지원 현황

기관	대상	시설대상	지원액
경북교육청	현업업무 종사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휴게시설	13.7억
세종시교육청	현업업무 종사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10.6억

### 3) 행정안전부 무더위 쉼터 현황

2023년 7월 3일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에 따르면 경기 7,734개소, 전남 7,640개소, 경남 6,47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다<표 III-43>.

무더위 쉼터의 종류에는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사무소, 종교시설, 금융기관, 기타 등이 있다(표 III-36). 쉼터명칭, 주소, 운영시간 등은 관할 지자체(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3(b)). 일반적으로 이용기간은 5월 하순에서 9월 중하순까지 운영하고, 이용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이지만, 폭염 수위가 매우 높다던지 필요시에는 일부 쉼터에서 21시까지 운영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용대상자는 대부분의 쉼터에서 해당지역 주민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43> 행정안전부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2023.7 기준) URL: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bar9ZLkk9DzaWI9gtiCIRzD.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01438#none](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bar9ZLkk9DzaWI9gtiCIRzD.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01438#none)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 소	주민 센터	읍면 동사 무소	중교 시설	금융 기관	기타	합계
서울	3130	160	48	1	426	0	9	97	160	4031
부산	847	63	21	12	171	0	0	66	103	1283
대구	520	27	0	14	147	11	1	226	68	1014
인천	630	81	1	2	134	0	1	105	34	988
광주	1298	7	1	11	83	0	2	76	64	1542
대전	780	24	5	6	81	0	0	21	25	942
울산	564	14	0	3	31	22	0	304	25	963
세종	431	1	10	0	12	11	0	20	4	489
경기	6905	37	246	1	204	96	1	103	141	7734
강원	973	16	58	48	87	60	2	62	31	1337
충북	2168	11	162	47	16	95	6	89	20	2614
충남	4345	22	880	15	35	70	0	12	31	5410
전북	4255	188	272	109	53	113	18	276	72	5356
전남	6620	44	665	96	68	95	0	27	25	7640
경북	4733	36	229	8	43	38	0	17	13	5117
경남	5675	119	392	16	80	124	0	56	16	6478
제주	415	6	26	0	19	5	0	0	2	473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 민방위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재난심리상담 | 재난현황 | 참여와 신고

재난현황 > 지역상황 > 필터

필터

무더위쉼터 | 미세먼지쉼터 | 한파쉼터

지역구분: 인천광역시 | 연수구 | 읍면동선택

시설유형/구분: 실내 | 시설구분선택 | 시설명

검색

위치	시설	이용가능인원
신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 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643-1	옥련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85명
신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1 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336-11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39명
신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14번길 19 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561-10	대암경로당 (노인시설)	35명
신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82 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336-11	옥련2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126명

(a) 국민재난안전포털 무더위쉼터 검색 사이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htw/htweaiList.html?menuSeq=862>)

No	위치명	운영여부	도호명주소	지번주소	시설유형	시설면적	이용가능인원 (명)	운영일		운영시간		주말공휴일		냉방기보유현황		점검사항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냉방기	에어컨(대)	냉방기구비	홍식공간	야간개방	최정온도	전기료지원	간담부착	홍보물배치	홍발개방
1	옥련1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640.00	85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N	Y	Y	N	N
2	새마을금고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금융기관	156.00	39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3	대암경로당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175.00	35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4	옥련1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650.00	136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5	원대3차 경로당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00.00	3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6	신학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248.00	63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7	관학시원(아양로)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00.00	3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8	신학동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137.00	34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9	남인천동일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금융기관	604.00	76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0	연수1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630.00	82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1	연수2동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306.00	51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2	공평동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43.00	3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3	연수3차 경로당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10.00	35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4	연수1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592.00	68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5	연수2동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10.00	32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6	대동아로 경로당(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19.00	34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7	연수2차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211.00	32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18	신학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금융기관	467.00	50	2020-05-17	2020-09-30			1	0	N	Y	N	N	N	N	N	N	N
19	중공차이로브 경로(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79.00	24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0	연수3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588.00	69	2020-05-20	2020-09-30	09:00:00	21:00:00	0	0	Y	Y	N	Y	Y	Y	Y	N	N
21	새마을금고(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40.00	3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2	중공차이로브 경로(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61.00	1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3	남인천동일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01.00	30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4	동학동 주민센터(주요)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주민센터	684.00	86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5	동학동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133.00	23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6	중공차이로브 경로(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290.00	37	2020-05-20	2020-09-30	09:00:00	17:00:00	0	0	Y	Y	N	Y	Y	Y	Y	N	N
27	중공차이로브 경로(미운영)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137.00	24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28	동학동 주민센터(주요)	미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노인시설	69.00	17	2020-05-20	2020-09-30	09:00:00	18:00:00	0	0	Y	Y	N	Y	Y	Y	Y	N	N

(b)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관내의 무더위쉼터 목록, 운영기간, 운영시간 등  
([https://www.yeonsu.go.kr/etc/bbs/SearchView.asp?bbs\\_code=board\\_56&seq=8574](https://www.yeonsu.go.kr/etc/bbs/SearchView.asp?bbs_code=board_56&seq=8574))

[그림 III-1] 무더위쉼터 위치, 운영시간, 운영시간 등 검색 예시

#### 4. 휴게시설 우수사례

##### (1)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2]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청소원 및 경비원 인원이 각각 12명이 있었다. 휴게시설 입구에 '휴게실' 표지판이 있었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비품 및 전자레인지 등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의자 및 책상 등이 비치 되어있었다. 휴게시설 내에 여직원 휴게시설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 커튼 등을 설치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소파 및 의자가 있었다. 휴게시설 이용 시 휴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분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미충족하는 항목은 없었다.

[그림 III-3]은 통신업으로 상시근로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 면적은 약 85 m<sup>2</sup>로 동시사용인원은 15명이다.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은 작업형태이며 휴게시설의 면적은 노사가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휴게시설은 분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4]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지만,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시간과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이 명확히 분리되고 있었다. 면적은 약 45 m<sup>2</sup>으로 동시사용인원은 8명이다. 동시사용기준 휴게시설 면적은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고려사항은 교대근무였다. 휴게시설은 분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었으며, 근무 장소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였다.



[그림 Ⅲ-2]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3]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4] 2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2) 20인 이상 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5]은 인천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업체로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등을 실시한다. 환경이 열악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이며 또한 50인 미만 업체임에도 자체예산으로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휴게시설에 샤워실도 함께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구분 설치하여 이용 실효성도 높게 하고 있었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그림 III-6]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을 탈의실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시간과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휴게시설은 건물 내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휴게시설 입구에 표지판이 부착되었고, 휴게시설 내부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창문, 식수, 의자 등 비품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림 III-7]은 운수업으로 상시근로자 44명, 협력업체 근로자는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설치된 휴게시설은 총 5개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휴게시설 면적은 158㎡이며, 동시사용인원은 30명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가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8]은 전기, 가스, 수도사업 비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소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 및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장 높이는 2.1m 이상 되었다. 또한, 습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의자 등의 비품,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표지판 부착, 다른 목적으로 미사용 항목이 충족으로 나타나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림 Ⅲ-5]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6]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7]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8] 20인~50인 미만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3)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9]은 기타 비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66명 중 취약직종 중 청소원 1명, 건물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휴게시설 개수는 2개이고 면적은 총 100 m<sup>2</sup>로 동시사용인원은 60명이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 및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천장 높이가 2.1m 이상이었다. 또한, 냉·난방 시설 구비 및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설비, 음용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표지판 부착 및 휴게시설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었다.

[그림 III-10]는 운수업으로 상시근로자 70명, 협력업체 30명 근무를 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총 2개로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휴게시설 면적은 약 115.7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40명으로 조사되었고,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은 휴식주기이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깝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적절한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고,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가능하였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등 항목을 충족하였다.

[그림 III-11]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상시근로자 120명, 협력업체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원청이 설치하고 하청업체와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휴게시설 개수는 4개로 총 면적은 132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50명,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은 휴식주기로 조사되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Ⅲ-9]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10]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11] 5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3)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2]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없으며, 휴게시설을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휴게시설 면적은 80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20명이며, 휴식주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휴게시설 면적이 적정하다고 조사되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3]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0명, 협력업체 근로자 5명으로 휴게시설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휴게공간은 휴게 외에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 동시사용인원은 35명으로 교대근무, 외근, 작업형태, 휴식주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습도, 조명, 환기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4]은 기타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는 47명, 협력업체 근로자는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하청이 따로 이용하고 있었고, 휴게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용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또한, 천장 높이 2.1m 이상 되었고 냉·난방 시설, 습도, 조명, 환기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5]은 농공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7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총 3개이며 휴게시설 면적은 100 m<sup>2</sup>

, 동시사용인원 3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며 조명, 환기, 식수, 비품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림 III-16]은 전자 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총 3개로 면적은 86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39명이다.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은 작업형태이며, 면적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7]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30명, 협력업체 근로자 11명, 청소원 1명, 경비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협력업체 휴게시설은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휴게시설은 총 3개로 면적은 50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14명이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2]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3]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4]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5]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16]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17] 20인~50인 미만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4)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8]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77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휴게시설 개수는 4개로 총 면적은 300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80명이다. 휴게시설은 건물 내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9]은 1차 금속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97명, 협력업체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 외 회의실, 탈의실,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시간과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총 4개로 면적은 114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30명이다. 동시사용인원 고려사항은 교대근무, 휴식주기였으며 노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20]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70명, 협력업체 근로자 20명, 취약직종 청소원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 개수는 2개로 총 면적은 140 m<sup>2</sup>, 동시사용인원은 30명이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2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타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협력업체가 5명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쓰고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노동조합 여부는 없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18]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19]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20]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Ⅲ-21] 5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5) 100인 이상 비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그림 III-22]은 운수업이고 상시근로자 100명, 협력업체 근로자가 약 152명, 취약직종 전화상담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휴게시설 외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 기능, 습도, 조명, 환기,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22] 100인 이상 제조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 (6) 건설업 50억 미만 우수사례

[그림 III-23]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상시근로자는 3명, 협력업체 근로자는 9명이다. 휴게시설은 총 3개로 휴게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시사용인원은 4명인데, 동시사용인원 기준으로 휴게시설 면적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청 및 하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휴게시설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 있었다. 천장 높이 2.1m 이상이고, 냉방 시설 기능, 조명, 환기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및 담당자 지정되어 있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III-23] 50억 미만 건설업 휴게시설 우수사례

(7) 건설업 100억 이상 우수사례

포스코이앤씨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에너지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동식 근로자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Ⅲ-24). 간선설비 공사애로사항이 있는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겠다(<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84>).



[그림 Ⅲ-24] 100억 이상 건설업 우수사례

## 5. 휴게시설 제도개선 방안

### 1) 휴게시설 관리기준 이행실태를 통한 환경개선 우선순위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휴게시설 내 식수 시설을 구비하고(20~50인 사업장),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미사용(50~100인 사업장)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관리기준 중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미사용(50억 이상 현장)과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음노출(20~50억 사업장)을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간에 구분 없이 단일 규정이다. 비록 조선업 등에서 습도 조건, 그늘막에서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에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소규모 건설현장, 아파트 등) 사업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현행 제도가 느슨한 규제로 비취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전용 휴게시설이 아니더라도 휴게시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휴게시설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휴게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쾌적한 휴식이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치된 휴게시설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데,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관서(근로감독관)에서 많은 사업장을 감독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 병원, 폐기물업체, 건설업 등 업종별로 각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과 관계 법령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별 사업장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래 표 <표 III-44>는 업종별 제도개선안 기술하였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환경오염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고 환경보건의 정의는 “환경 요인으로부터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념”이므로 폐기물 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또한 광범위의 환경보건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폐기물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44> 대상별 휴게시설 관련 규정 및 내용

업종	규정	제도개선 제안
아파트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2 [2020.1.7. 신설]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연구진 제안	건설공사 착공 신고시 필요서류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포함
	연구진 제안	현행 법규(건축법)는 현장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간선설비(전기, 수도 등)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돈이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민의 휴식을 위한 농막은 전기/수도/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법을 참조하여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업종	연구진 제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에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병원, 요양시설	연구진 제안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은 정기적으로 기관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기관평가 항목에 “직원건강관리” 항목은 있으나 건강검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평가 등의 항목은 있으나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목은 없다. 따라서 기관평가 항목에 휴게시설을 신설하여 휴게시설 제도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등 인력이 많고 휴게시설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를 넘어 근로자 규모, 직종,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일부 업종에서는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한 휴게시설의 필요성 검토

휴게시설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어, 근로자 수가 많은 제조업 및 일부 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비제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이 협소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100명, 1,000명 이상 등으로 규모별로 구분하여 최소 면적기준도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매우 많은 조선업 등에서는 휴게시설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과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이 있어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안위, 노사합의를 거쳐 남녀 구분한 휴게시설의 설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별도의 논의 필요)한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조도 기준

조도 기준으로 100~200 럭스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 위 기준은 작업장에서 보통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조도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게시설 기준에 반드시 럭스 기준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럭스 기준을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조도를 측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작업강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환경 등의 외부적인요인과 근로자측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업피로가 발생하게 된다.<sup>1)</sup>

피로는 탈진, 생리학적 기능 저하와 작업 효율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피로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한 피곤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일에 대한 의욕저하, 일의 효율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데<sup>2)</sup> 이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건강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는 정도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라고 한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Burton 등(2006)은 2년동안 은행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10가지(직업 만족도, 질환, 높은 스트레스 등)과 업무 생산성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위험 요인 당 1.9%의 생산성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년에 약 950달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sup>4)</sup> 또한 Pelletier 등(2004) 연구팀에서도 1년동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을 조사한 결과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킨 경우 프리젠티즘 9%, 결근율 2%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sup>5)</sup>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사무직 및 비사무직 모두 프리젠티즘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보건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2)</sup>

1)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피로와 휴식. 안전기술 2002;51:56-59.

2) 장세진, 강명근, 현숙경, 차봉석, 박종구, 박준호 등. 우리나라 직장인 피로의 역학적 특성. 예방의학회지 2005;38(1):71-81

3) 오승원, 정기택, 박지령. 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과 결근율, 프리젠티즘의 관련성. 대한산업 의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7;19(4):304-314

4) Burton WN, Chen CY, Conti DJ, Schultz AB, Edington DW.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change and presenteeism change. J Occup Environ Med 2006;48:252-63.

5) Pelletier B, Boles M, Lynch W. Change in health risks and work productivity over time. J Occup Environ Med 2004;46:746-54.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 준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물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유해 및 위험환경의 개선,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 건강생활의 적극적 실천 및 환경조성 뿐 아니라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심신의 활성화, 경직된 근육의 이완, 피로 회복, 기분전환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sup>1)</sup>

건설업의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휴게시설 제공이다. 장시간 시공되는 건설현장에서 휴게시설 제공을 통해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해줌으로 근로자의 안전보장 욕구 및 증대로 사고를 줄이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능률과 휴게시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휴게시설 운영의 질을 높임으로 인적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sup>6)</sup>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보았을 때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잘될수록 업무의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조직내에서 안전문화, 안전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안전문화는 안전과 관련된 조직문화라고 정의하며<sup>7)</sup>, 안전분위기는 직장 활동에서 작업환경과 안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이다.<sup>8)</sup>

안전보건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직심리학자들은 안전문화가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동기를 결정하고, 실제 안전행동, 사고 및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가 잘 공유된 조직에서는 안전행동을 덜 할 수 있는 그룹의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안전 행동을 실천할 수

6) 김종민, 강경식. 건설 사업장 휴게시설이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 Korea Saf. Manag. Sci. Vol. 19 No. 4 December 2017 ISSN 1229-6783 <http://dx.doi.org/10.12812/ksms.2017.19.4.141>

7)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길라잡이.

8) 조동제.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8, No. 1, pp. 62-69, February 2023 <https://doi.org/10.14346/JKOSOS.2023.38.1.62>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sup>7)</sup>

또한, 안전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 안전보건의 우선순위, 지속적인 교육 등 경영자 지원분야와 안전보건 지식, 의사결정 등 경영자 관심분야, 근로자의 사기 등 근로 환경 조성분야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sup>9)</sup>

David 연구에서 근로자 2,208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와 근로환경에 대하여 근로자 2,208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와 사고 및 재해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직내에 안전관련 분위기가 인지된 곳은 사고 및 재해를 약 55%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실제 캘리포니아 안전문화자문단에서는 현장의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개념을 도입한 풀뿌리 안전문화를 도입하였다. 이후 가치인식과 문화변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안전문화 설정 및 조직전체 홍보, 안전문화 장단점 파악, 안전문화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립, 인적 물적 자원 배분하고 목표달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한편, 2022년 휴게시설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시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였으며 이는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실제 조사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좋은 시설보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sup>11)</su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7. 항목에서도 휴게시설 이용문화를 보면 여러 직종과 직급이 휴게시설을 함

9)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연구. 일반분야-보고서 연구원 2004-

10) David M. DeJoy a, Bryan S. Schaffer b, Mark G. Wilson a, Robert J. Vandenberg c, Marcus M. Butts d. Creating safer workplaces: assessing the determinants and role of safety climate. Volume 35, Issue 1, 2004, Pages 81-90. <https://doi.org/10.1016/j.jsr.2003.09.018>

11) 휴게시설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

계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라고 기술되어있다.<sup>12)</sup>

선행연구 및 문헌을 보았을 때 휴식시간에 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안전문화, 안전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직원 간 안전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휴식시간에 상급자 등을 의식하지 않고 쾌적하게 설 수 있는 휴게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작업능률이 올라가고 업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안전문화 설정 및 조직전체 홍보, 안전문화 장단점 파악, 안전문화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립,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 내용을 요약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휴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그 방법으로는 사업장 내 정기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관계부처 및 안전보건공단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2)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78-2022



## IV. 고찰 및 결론





## IV. 고찰 및 결론

### 1. 주요결과

#### 1) 실태조사

##### (1)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업종별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은 건설업의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모두 50인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50인 이상(50억 이상)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

##### (2) 휴게시설 관리기준 조사결과

- 제조업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400개 중 사업장 휴게시설이 근무 위치에서 편리하고 가까운 곳 위치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 또한, “휴게시설 내 식수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 비제조업은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관리기준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 노출”,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4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 건설업은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노출”, “냉방시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습도기준”,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항목에서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 2.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도심지 건설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산업안전관리비에서 휴게시설 관련 비용 지출항목이 확대 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았음
- 건설 관련 규정에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시켜야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더욱 원활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음
- 토목현장 또는 이동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현행 휴게시설 규정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음
- 성별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일부 업종에서는 휴게시설 이용의 실효성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1인당 최소 휴게공간이 확보되도록 근로자 규모에 비례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어 모든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의 강화 또는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관리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제조업 휴게시설 내 식수구비, 비제조업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건설업 소음노출 저감하려는 노력 필요
- 공간 및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더욱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건설업), 폐기물관리법(폐기물 관련 업체), 의료 관계법(병원, 요

- 양시설 등) 등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부여한다면 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제도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공동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렉스를 기준을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조도를 측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고찰

- 휴게시설 기준이 단일 규정이다 보니 일부 업종에서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휴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부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 시행초기가 지나는 향후에는 일부 업종에서는 그 분야에 적합한 휴게시설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지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보건업에서는 넓지 않은 공간에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설치된 일부 휴게시설이 편안히 휴게하기에 충분치 않기도 하며 환자, 동료, 기타 업무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도 간호직은 업무특성상 휴게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고 가뜰이나 부족한 공간에서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공간 활용도에 더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휴게시설 관리를 위한 추가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보건업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구축 아파트에서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준을 준수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직종과 성별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업의 실정을 고려한 관리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건설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현장, 토목현장 및 이동하는 현장에 맞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착공전 단계에서부터 휴게시설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외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비율 및 관리기준의 준수율이 높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용지원과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의 필요성 및 비용지원 관련 내용은 보고서상에 기술하였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2.6).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30601433](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30601433)
-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2022
- 고용노동부.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2023
- 국가인권위원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6.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htw/htweaiList.html?menuSeq=862>
- 김소라, 백은미, 정혜선, 의료기관 종사자의 휴게시설 만족도가 피로에 미치는 영향. 직업건강연구 제5권 제1호 2023
- 김종민, 강경식. 건설 사업장 휴게시설이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 Korea Saf. Manag. Sci. Vol. 19 No. 4 December 2017 ISSN 1229-6783 <http://dx.doi.org/10.12812/ksms.2017.19.4.141>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피로와 휴식. 안전기술 2002;51:56-59.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787. 2022.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562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연구. 일반분야-보고서 연구원 2004-
-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78-2022
-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길라잡이.
- 오승원, 정기택, 박지령. 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과 결근율, 프리젠티즘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7;19(4):304-314
- 이여미, 정문희.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정도.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4호. J Korean Acad Nurs Vol.38 No.4, 612-619, August, 2008
- 장세진, 강명근, 현숙정, 차봉석, 박종구, 박준호 등. 우리나라 직장인 피로의 역학적 특성. 예방의학회지 2005;38(1):71-81
- 정혜선, 최은희, 백은미, 문지현, 전은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21.
-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에 관한 조사. 2023.6.
- 조동제. 사업주의 안전경영의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8, No. 1, pp. 62-69, February 2023 <https://doi.org/10.14346/JKOSOS.2023.38.1.6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H-178-2022. 2022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023년 실내무더위쉼터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bar9ZLkk9DzaWI9gtiCIRzD.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01438](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bar9ZLkk9DzaWI9gtiCIRzD.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01438)

휴게시설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

Burton WN, Chen CY, Conti DJ, Schultz AB, Edington DW.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change and presenteeism change. *J Occup Environ Med* 2006;48:252-63.

David M. DeJoy a, Bryan S. Schaffer b, Mark G. Wilson a, Robert J. Vandenberg c, Marcus M. Butts d. Creating safer workplaces: assessing the determinants and role of safety climate. Volume 35, Issue 1, 2004, Pages 81-90. <https://doi.org/10.1016/j.jsr.2003.09.018>

D. Zohar, "Safety Climate in Industrial Organizations: Theoretical and Applied Im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5, No. 1, pp. 96-102, 1980

Pelletier B, Boles M, Lynch W. Change in health risks and work productivity over time. *J Occup Environ Med* 2004;46:746-5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 3항 별표2의2

부산 건축조례 제18조 3항 7호

대구 건축조례 제22조 3항 5호

인천 건축조례 제18조 3항 7호

광주 건축조례 제22조

부산기장 건축조례 제23조 3항 8호

- 고양 건축조례 제24조 별표2  
용인 건축조례 제23조 2항 14호  
성남 건축조례 제15조 2항 3호  
부천 건축조례 제19조 2항 별표2  
남양주 건축조례 제20조 2항 9호  
안양 건축조례 제20조 2항 5호  
평택 건축조례 제23조 3항 6호, 17호  
시흥 건축조례 제19조 2항 2의2호, 5호  
파주 건축조례 제20조 3항 9호  
광주 건축조례 제22조 3항 6호  
광명 건축조례 제21조 3항 6호  
군포 건축조례 제19조 2항 4호  
오산 건축조례 제21조 2항 8호  
이천 건축조례 제20조 2항 10호  
안성 건축조례 제25조 3항 14호  
포천 건축조례 제19조 2항 21호  
의왕 건축조례 제21조 2항 6호  
양평 건축조례 제17조 2항 5의3호

여주 건축조례 제23조 2항 10호  
동두천 건축조례 제21조 3항 8호  
과천 건축조례 제17조 2항 6호  
연천 건축조례 제20조 8호  
동해 건축조례 제21조 2항 별표 1의2  
정선 건축조례 제19조 2항 11호  
아산 건축조례 제25조 3항 8호, 14호  
서산 건축조례 제24조 2항 11호  
영주 건축조례 제7조 2항 16호  
밀양 건축조례 제18조 2항 11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장제32조, 제33조  
수원시 주택조례 제2장제4조, 제2장제6조, 제6조의2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32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제3조의4, 제8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의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의2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충청남도 청사관리 운영조례 제6조의2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

전라남도 완도군 공유재산 관례 조례 제47조의2

광주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4조





# Abstract

##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to install rest faciliti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 1. Research Backgroun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timing of the rest facility installation, from August 18, 2023, it will be expanded to all workplaces except for small workplace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construction industry less than 2 billion won), so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stabilized, and to prepare a system improvement plan after closely identify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errors of the system in the field.

### 2. Major Research Contents

#### 1) Identification of rest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status

There were 417 manufacturing, 1,048 non-manufacturing, and 401 construction workplaces, totaling 1,866 workplaces, where surveys and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workplace rest facilities. By industry, 4.1% of manufacturing, 7.1% of non-manufacturing, and 7.7% of construction did not have rest facilities, with construction having the highest rate. In addition, in

manufacturing, non-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less than 5 billion won) were more likely to not have rest facilities than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more than 5 billion won). Compared to last year's findings, 3.6% of manufacturing, 2.2% of non-manufacturing, and 1.7% of construction workplaces have increased the percentage of workplace breaks.

As for the compliance rate of the rest facility management standard, out of 400 sites, except for 17 sites without manufacturing rest facilities, all sites were in compliance with the item on whether the rest facilities are conveniently located close to the work location, and there was at least one non-compliance per site in all other items. Of these, the percentage of non-compliance was high in the three categories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in the rest area," "signage for the rest area," and "use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at 12.5%, 11.0%, and 11.0%, respectively.

In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all 973 workplaces except 75 workplaces without rest facilities were non-compliant with at least one management standard, with 18.5%, 17.9%, 10.7%, and 10.5% non-compliance rates for "use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noise exposure," "signage for rest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a person in charge," respectivel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ut of 370 workplaces, excluding the 31 workplaces without rest facilities, the non-compliance rate was high for "Use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Noise exposure," "Air conditioning," "Isolation from places handling hazardous substances,"

"Humidity standard," "Signage for rest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person in charge," at 40.0%, 33.2%, 25.4%, 18.6%, 18.4%, and 16.8%,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prioritize the provision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in rest facilities (20–50 employees) and to create a comfortable rest area by not using it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50–100 employees). Non-manufacturing industries also have the highest rate of use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among the management standards, so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comfortable rest area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unused space for purposes other than rest (sites with more than 5 billion) and noise exposure at small sites (sites with 2 to 5 billion).

When analyzed by workplace siz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smaller the workplace size (number of workers),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workplaces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rest facility management standard. However, in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unlike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 was no particular trend in the percentage of non-compliance with the rest facility management standard by workplace size, so it is judged that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has a large variation depending on individual industries. Among non-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d the highest rate of non-compliance at 22.5%, followed by the education service industry with less than 20 employees (not subject to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60%, and the health industry at 7.5% to 31.1%,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which is judged to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such as rehabilitation facilit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non-compliant workplaces in the 2–5 billion won range.

2)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install rest facil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 Some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small construction sites, or construction sites in urban centers may have insufficient space or budget to install rest facilities, so it is necessary to install rest facilities using containers, etc. and further guid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promote the quick settlement of the system on site.

○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have been revised and houses built after 2020 are obligated to install rest facilitie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ssign some roles to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smooth settlement of the rest facility system. Specifically, if the Construction Act (construction industry), Waste Management Act (waste-related companies), and Medical Act (hospitals, nursing facilities, etc.) are assigned the duty of installing and managing rest facilities, the rest facility system will operate more smoothly according to each law and regulation.

○ Some industries want to improve the system to install gender-separated rest facilities, separate rest facilities for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for effective use of rest facilities, and install rest facilitie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workforce to

ensure a minimum rest space per person. On the other hand, some industries want to improve the system to meet local conditions because the current system is far from the site and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all management standard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rengthening or relaxing the system for some industries in the future.

○ Since it is not mandatory for businesses with fewer than 20 employees to install rest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it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20 employees in the future, and for no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stall shared rest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knowledge industry centers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nd promote them to workers.

3) Identifying best practices for installing rest facilities by major industry and scale

Best practic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field survey by industry and size and presented in the report. Each best practice should be introduced to as many workplaces as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 3. How to Utilize th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workplace rest facilities and improvement plans can be used as evidence for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rest facility system and future improvements. Furthermore, it can be used to develop policies to promote worker health.



## 부록

### 1.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설문조사지

####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현장조사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실태파악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06.

■ 문 의 :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02-3284-5252~4)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설치·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1. 크기

-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날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 조사지 관련 주요 QA

관련문항	질문	설명
3	귀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00m <sup>2</sup> (약 90평) 이상입니까?	1. 사업장의 건물이 자체 건물일 경우: 사용하고 있는 각 층의 연 면적(전체면적)을 합하여 기입 2. 사업장이 임대 건물(아파트형 공장 등)일 경우: 귀 사업장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입
11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 면적은 얼마입니까?	휴게시설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기입
12	휴게시설 능시 사용인원은 최대 몇 명입니까?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인원
21	휴게시설에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충족으로 체크. 상기 품목이 아니더라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 충족
22	휴게시설에 적정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밝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다이얼 버튼 혹은 조명기구가 여러개 갖추어져 있는 경우 충족으로 체크
23	휴게시설에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한습니까?	휴게시설에 흡/배기가 있는 경우 충족, 공기청정기는 미충족으로 체크

**I. 사업장 현황(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제조업	1) 식료품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제조업	21) 농업, 임업 및 어업	30) 금융 및 보험업
	2) 음료	12) 비금속 광물제품		22) 광업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담배	13) 1차 금속		23) 전기, 가스, 수도사업	32)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섬유제품	14) 금속 가공제품		2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 사업시설투자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목재 및 나무제품	1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5) 도매 및 소매업	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 펄프, 종이제품	1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26) 운수업	35) 교육 서비스업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 전기장비		27) 숙박 및 음식점업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크로스, 연탄, 석유정제품	18) 기타 기계 및 장비		28) 통신업	37) 여숙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9) 의류용 불필 및 의약품	19) 기타 제조업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기타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건설업(※ 1-1번)			
1-1) 건설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건축공사업(아파트 등) ② 토목공사업 ③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러트 등) ④ 기타( )					
1-2) 건설업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20억 미만 ② 20억 ~ 50억 미만 ③ 50억 이상					
2	귀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경우 ①, ② 모두 체크)			① 산업단지 ②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③ 그 외 ( )	
3	귀 사업장의 전용면적은 300㎡(약 90평) 이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 )명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파견근로자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한 근로자 수				
5	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형력업체)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는 총 몇 명입니까? ( )명 (※ 없으면 '없다'고 표시)				
5-1)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3번)	
5-2) 협력업체 휴게시설은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원청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 ②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③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④ 기타( )	
5-3)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간이 부족함 ② 예산이 부족함 ③ 시설관리가 어렵음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⑤ 기타( )	
6	아래 6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2명 이상 있다면, 근로자수를 적어주세요. (실제 해당 직종의 임무를 하는 근로자 수를 적어주세요.) ① 전화상담원 ( )명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 )명 ③ 텔레마케터 ( )명 ④ 배달원 ( )명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명 ⑥ 건물경비원 ( )명				
7	귀 사업장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6㎡ 이상)이 있습니까? (※ 휴게시설이 다수일 경우, 한 개라도 6㎡(약 1.8평) 이상이면 '예'로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 33번)	
8	귀 사업장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휴게 전용으로 사용되나요?			① 예 (※ 9번) ② 아니오 (※ 8-1번)	
8-1) 휴게 외에 사용하는 다른 용도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① 회의실 ② 합의실 ③ 식당 ④ 기타 ( )	
8-2)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시간과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II. 휴게시설 현황

※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10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모두 몇 개 인가요?	(        )개
11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휴게시설이 다수인 경우 모든 휴게시설 면적(합)으로 작성)	(        )m <sup>2</sup>
12	휴게시설 동시 사용인원*은 최대 몇 명입니까? * 동시 사용인원 :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동시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        )명
	12-1) 동시 사용인원 기준으로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 면적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2-2) 동시 사용인원 기준은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나요?	① 교대근무 ② 외근(출장) ③ 사무직, 생산직 등 직업형태 ④ 휴식주기 ⑤ 기타(        )
13	휴게시설의 전체 면적 및 동시 사용인원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휴게시설이 다수인 경우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하세요.)	① 건물 내 지상 ② 건물 내 지하 ③ 건물 옥상 ④ 건물 밖(복외 작업장) ⑤ 근무 외 장소

※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중족 : 모두 해당, 일부 중족 : 1개 이상 해당, 미중족 : 모두 해당없음)

15	휴게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16	휴게시설이 화재·폭발, 먼지 발생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17	휴게시설이 근무 장소와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에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18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가 2.1m 이상입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 ◆ 휴게시설(환경)

19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방시설이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20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21	휴게시설에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22	휴게시설에 적정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23	휴게시설에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합니까? (공기청정기를 통한 환기는 제외)	① 중족 ② 일부 중족 ③ 미중족
24	휴게시설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일부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 휴게시설(비품 및 설비)	
25	휴게시설 내에 미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있습니까? ① 총괄 ② 일부 총괄 ③ 미총괄
26	휴게시설 내에 휴식에 필요한 비품(의자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① 총괄 ② 일부 총괄 ③ 미총괄
◆ 휴게시설 관리	
27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총괄 ② 일부 총괄 ③ 미총괄
28	청소 등을 통해 휴게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① 총괄 ② 일부 총괄 ③ 미총괄
29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원루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① 총괄 ② 일부 총괄 ③ 미총괄
30	휴게시설이 문물보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일부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 휴게시설 설치 시 문제점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지 얼마나 ( )년 ( )개월 되었습니까?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겪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32	

**Ⅲ. 휴게시설 미설치 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33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간이 부족함 ② 예산이 부족함 ③ 시설관리가 어려움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⑤ 법적 제재 대상 이남 ⑥ 기타( )
3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귀 사업장에서는 언제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① 3개월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2년 이내 ⑤ 계획없음
35	휴게시설의 설치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36	사업장내 공간제약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의향)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없음)

## 2.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팀 협조공문

Only One Health Keeper KHA

###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보건관리팀)

---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실태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 및 센터별 설문조사(현장조사)를 요청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나. 현장조사 기간 : 설문지 배송일 ~ 2023.07.31  
 \* 조사지 답례품 등은 8월 27일 발송 예정

다. 조사방식 : 현장방문 후 조사지(설문지) 작성  
 라. 센터별(보건관리팀) 사업장 개소: 첨부 1  
 \* 센터별 지도요인 인건수를 감안해 배정  
 \* 부록이 20인 미만의 사업장 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20~50인 사업장으로 대체 가능

마. 발송물품(답례품)  
 - 센터보건관리팀: 레이저 가리축청정기(1개), 조도계(1개)  
 - 조사 지도요원 최신 휴대형 선풍기  
 - 조사 사업장용: 최신 휴대형 선풍기, 휴게시설 설치 안내문 및 휴게시설 표지판 스티커

바. 조사지 회신방법: 취합 후 이메일(스캔파일) 또는 우편발송(등기)  
 - 회신일 2023.08.01.내 도착  
 - 이메일 주소 : 2022157@kiha21.or.kr(직업건강연구팀 [redacted])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9층 909호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사. 기타문의 :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redacted]

첨 부 1 : 센터별(보건관리팀) 사업장 개소  
 2 : 사업장 휴게시설 조사 가이드 1부, 끝.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각 지역본부 및 센터별 보건관리팀장

---

사원 [redacted] 팀장 [redacted] 실장 [redacted] 연구원장 [redacted] 2023.06.26

협조자 팀장 [redacted]

시행 일반\_직업건강연구팀-41 (2023.6.26.) 접수  
 우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9층 / http://www.kiha21.or.kr  
 909호) 전화 전송 / 2022157@kiha21.or.kr / 공개

### 3. 대한산업보건협회 환경위생팀 협조공문

Only One Health Keeper KIHA

##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환경위생팀)

---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실태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 및 센터별 설문 조사를 요청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나. 설문조사 기간 : 설문지 배송일 ~ 2023.07.27  
 ※ 설문지, 답례품은 6월 27일 발송 예정  
 다. 조사방식 : 현장방문 후 설문지 작성  
 라. 센터별(환경위생팀) 사업장 개소: 첨부 1  
 마. 발송물품(답례품)  
 - 최신 휴대형 선풍기(센터환경위생팀 직원 및 설문 사업장용)  
 바. 조사지 회신방법 : 취합 후 이메일(스캔파일) 또는 우편발송(등기)  
 - 회신일 2023.07.31.내 도착  
 - 이메일 주소 : 2022157@kiha21.or.kr(직업건강연구팀 [redacted])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9층 909호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사. 기타문의 :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redacted]

첨 부 1 : 센터별(환경위생팀) 사업장 개소. 끝.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지역본부 및 각 센터

---

사원 [redacted] 팀장 [redacted] 실장 [redacted] 연구원장 [redacted] 2023.06.26

협조자 팀장 [redacted]

시행 일반\_직업건강연구팀-40 (2023.6.26.) 접수  
 우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9층 909호) /http://www.kiha21.or.kr  
 전화 전송 / 2022157@kiha21.or.kr / 공개

## 4. 건설업 현장리스트 협조공문

<b>대한산업보건협회</b>	
수신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실장)
(경유)	
제목	수탁연구과제「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관련 자료 송부 요청
<p>1. 귀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 송부를 요청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과제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제명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li> <li>2) 발주기관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li> <li>3) 연구책임자 : 김부욱 팀장</li> <li>4) 연구상대역 : 양동이 차장</li> </ol> <p>나. 요청자료: 사업장 리스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종: 건설업</li> <li>2) 지역: [REDACTED]</li> <li>3) 리스트에 포함될 내용: 공사금액, 공사기간, 사업장 주소, 현장소장(사업장) 연락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끝.</p>	
<p>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p> 	
사원	2023.08.30
[REDACTED]	부장
[REDACTED]	실장
[REDACTED]	연구원장
협조자	

## 5. 한국폐기물재활용지원센터 협조요청 공문

Only One Health Keeper KIHA

###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신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 [redacted]  
(경우)  
제목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협조요청(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179(2023.05.24.),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 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하여 본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이행 실태조사 및 미비점 등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첨부 1)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어 제도시행 안내문(첨부 2)도 함께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문조사 대상 : 귀 기관 회원사  
※ 설문 참여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 없음

나. 설문방법 : 팩스, 이메일, 온라인 중 (택 1)  
- 온라인 : <https://forms.gle/MnwyAccRvQhD2NcX7>  
- 이메일 : [redacted]  
- 팩스 : [redacted]

다. 문의 : [redacted] !)

첨 부 : 1. 사업장 설문조사지  
2. 휴게시설 제도시행 안내문. 끝.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

2023.06.23

사원 [redacted] 팀장 [redacted] 실장 [redacted] 연구원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일반\_직업건강연구팀-37 (2023.6.23.) 접수  
우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8(로오름테크노밸리 9층) / <http://www.kiha21.or.kr>  
전화 909호) 전송 / 2022157@kiha21.or.kr / 공개

## 6.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협조요청공문

Only One Health Keeper KIHA

##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신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redacted]  
(경유)  
제목 유계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협조요청(폐기물관리업)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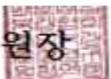
2.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179(2023.5.24). 「유계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하여 본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장 유계시설 이행 실태조사 및 미비점 등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첨부 1)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유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어 제도시행 안내문(첨부 2)도 함께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문조사 대상 귀 조합 관계 사업장 50~100개소  
※ 상시 근로자 50인(협력업체 포함)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 설문방법: 사업장별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https://forms.gle/vBecW5rC4pAyGFA>)  
다 문의: 산업보건환경연구원 [redacted]

첨 부 : 1. 사업장 설문조사지 1부.  
2. 유계시설 제도시행 안내문 1부. 끝.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

사원 [redacted] 부장 [redacted] 실장 [redacted] 연구원장 [redacted] 2023.06.21

협조자

시행 일반\_직업건강연구팀-31 (2023.6.21.) 접수  
우 088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8(코오롱테크노빌리 9층) /http://www.kiha21.or.kr  
전화 909호) 전송 /2022187@kiha21.or.kr /공개

## 7. 취약직종 업종별 설문조사 결과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사업장 위치	산업단지	12(12.6)	0	0	11(33.3)	122(24.6)	102(30.2)
	자식산업센터	5(5.3)	1(5.9)	3(20.0)	0	3(0.6)	1(0.3)
	기타	78(82.1)	16(94.1)	12(80.0)	22(66.7)	288(58.2)	156(46.2)
	결측치	-	-	-	-	3(0.6)	1(0.3)
	해당없음	-	-	-	-	79(16)	78(23.1)
전용면적 300㎡ 이상	예	83(87.4)	17(100)	11(73.3)	33(100)	402(81.2)	254(75.1)
	아니요	10(10.5)	0	4(26.7)	0	12(2.4)	5(1.5)
	결측치	2(2.1)	-	-	-	2(0.4)	1(0.3)
	해당없음	-	-	-	-	79(16)	78(23.1)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있음	46(48.4)	6(35.3)	8(53.3)	24(72.7)	291(58.8)	182(53.8)
	없음	49(51.6)	11(64.7)	7(46.7)	9(27.3)	204(41.2)	156(46.2)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65)	예	41(43.2)	6(35.3)	7(46.7)	22(66.7)	282(57)	174(51.5)
	아니요	5(5.3)	0	1(6.7)	2(6.1)	9(1.8)	8(2.4)
	해당없음	49(51.6)	11(64.7)	7(46.7)	9(27.3)	204(41.2)	156(46.2)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협력업체 휴게시설 형태	원청 휴게시설 이용	25(26.3)	3(17.6)	2(13.3)	17(51.5)	158(31.9)	92(27.2)
	원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10(10.5)	3(17.6)	3(20)	3(9.1)	102(20.6)	67(19.8)
	하청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6(6.3)	0	2(13.3)	2(6.1)	16(3.2)	11(3.3)
	기타	0	0	0	0	4(0.8)	3(0.9)
	결측치	-	-	-	-	2(0.4)	1(0.3)
	해당없음	54(56.8)	11(64.7)	8(53.3)	11(33.3)	213(43.0)	164(48.5)
휴게시설 유무	예	95(100)	17(100)	15(100)	33(100)	488(98.6)	332(98.2)
	아니요	0	0	0	0	7(1.4)	6(1.8)
휴게시설 전용사용 유무	예	67(70.5)	12(70.6)	13(86.7)	25(75.8)	380(76.8)	262(77.5)
	아니요	28(29.5)	5(29.4)	2(13.3)	8(24.2)	108(21.8)	70(20.7)
	해당없음	-	-	-	-	7(1.4)	6(1.8)
휴게 외 다른목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	회의실	9(32.1)	1(20.0)	1(50.0)	3(37.5)	35(32.4)	22(31.4)
	탈의실	11(39.3)	3(60.0)	1(50.0)	3(37.5)	53(49.1)	30(32.4)
	식당	6(21.4)	1(20.0)	0	2(25.0)	14(13)	14(33.4)
	기타	3(10.7)	1(20.0)	0	2(25.0)	26(24.1)	18(34.4)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휴게시설 개수	1개	43(45.3)	8(47.1)	8(53.3)	16(48.5)	152(30.7)	121(35.8)
	2개	20(21.1)	3(17.6)	3(20.0)	9(27.3)	137(27.7)	73(21.6)
	3개이상	32(33.7)	6(35.3)	4(26.7)	8(24.2)	199(40.2)	138(40.8)
	해당없음	-	-	-	-	7(1.4)	6(1.8)
휴게시설 평균면적		82.4±23	55.6±47.6	55.6±93.7	50.4±55.3	22.8±201	293.8±242
휴게시설 동시 사용인원		약 33명	약 26명	약 20.2명	약 19명	약 65명	약 82명
동시사용 인원 고려사항	교대근무	20(21.3)	5(29.4)	4(26.7)	9(27.3)	128(30.1)	75(27.8)
	외근	4(4.3)	2(11.8)	1(6.7)	2(6.1)	32(7.5)	21(7.8)
	작업형태	20(21.3)	0	3(20.0)	11(33.3)	122(28.7)	85(31.5)
	휴식주기	51(54.3)	10(58.8)	7(46.7)	14(42.4)	154(36.2)	96(35.6)
	기타	7(7.4)	0	0	2(61.1)	35(8.2)	25(9.3)
휴게시설 위치	건물내지상	78(82.1)	16(94.1)	11(73.3)	29(87.9)	381(78.1)	248(27.8)
	건물내지하	15(15.8)	2(11.8)	4(26.7)	3(9.1)	115(23.6)	84(7.8)
	옥상	0	0	0	0	4(0.8)	1(31.5)
	건물밖옥외	8(8.4)	1(5.9)	2(13.3)	2(6.1)	20(4.1)	20(35.6)
	근무외장소	7(7.4)	0	1(6.7)	1(3.0)	25(5.1)	21(9.3)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휴게시설이 편리한 위치	충족	79(83.2)	17(100)	13(86.7)	30(90.9)	425(85.9)	287(84.9)
	일부충족	10(10.5)	0	1(6.7)	2(6.1)	57(11.5)	40(11.8)
	미충족	6(6.3)	0	1(6.7)	1(3.0)	6(1.2)	5(1.5)
	해당없음	-	-	-	-	7(1.4)	6(1.8)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	충족	81(85.3)	15(88.2)	13(86.7)	30(90.9)	424(85.7)	286(84.6)
	일부충족	9(9.5)	1(5.9)	2(13.3)	1(3.0)	54(10.9)	39(11.5)
	미충족	5(5.3)	1(5.9)	0	2(6.1)	10(2.0)	7(2.1)
	해당없음	-	-	-	-	7(1.4)	6(1.8)
근무장소 독립공간 위치	충족	81(85.3)	16(94.1)	14(93.3)	30(90.9)	439(88.7)	296(87.6)
	일부충족	8(8.4)	1(5.9)	0	2(6.1)	41(8.3)	29(8.6)
	미충족	6(6.3)	0	1(6.7)	1(3.0)	8(1.6)	7(2.1)
	해당없음	-	-	-	-	7(1.4)	6(1.8)
천장 높이 2.1 m 이상	충족	81(85.3)	16(94.1)	13(86.7)	28(84.8)	452(91.3)	305(90.2)
	일부충족	9(9.5)	1(5.9)	1(6.7)	2(6.1)	29(5.9)	23(6.8)
	미충족	5(5.3)	0	1(6.7)	3(9.1)	5(1.0)	4(1.2)
	결측치	-	-	-	-	2(0.4)	-
	해당없음	-	-	-	-	7(1.4)	6(1.8)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냉방시설	충족	88(92.6)	17(100)	13(86.7)	31(93.9)	442(89.3)	295(87.3)
	일부충족	5(5.3)	0	2(13.3)	2(6.1)	43(8.7)	34(10.1)
	미충족	2(2.1)	0	0	0	3(0.6)	3(0.9)
	해당없음	-	-	-	-	7(1.4)	6(1.8)
난방시설	충족	87(91.6)	16(94.1)	13(86.7)	31(93.9)	440(88.9)	295(87.3)
	일부충족	6(6.3)	1(5.9)	1(6.7)	2(6.1)	45(9.1)	34(10.1)
	미충족	2(2.1)	0	1(6.7)	0	3(0.6)	3(0.9)
	해당없음	-	-	-	-	7(1.4)	6(1.8)
습도기준	충족	72(75.8)	16(94.1)	11(73.3)	29(87.9)	366(73.9)	245(72.5)
	일부충족	13(13.7)	1(5.9)	2(13.3)	0	76(15.4)	59(17.5)
	미충족	10(10.5)	0	2(13.3)	4(12.1)	45(9.1)	28(8.3)
	결측치	-	-	-	-	1(0.2)	-
	해당없음	-	-	-	-	7(1.4)	6(1.8)
조명기준	충족	85(89.5)	17(100)	13(86.7)	31(93.9)	443(89.5)	301(89.1)
	일부충족	7(7.4)	0	1(6.7)	2(6.1)	38(7.7)	24(7.1)
	미충족	3(3.2)	0	1(6.7)	0	7(1.4)	7(2.1)
	해당없음	-	-	-	-	7(1.4)	6(1.8)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환기가능	충족	74(77.9)	15(88.2)	12(80.0)	28(84.8)	340(68.7)	234(69.2)
	일부충족	14(14.7)	1(5.9)	3(20.0)	1(3.0)	93(18.8)	69(20.4)
	미충족	7(7.4)	1(5.9)	0	4(12.1)	55(11.1)	29(8.6)
	해당없음	—	—	—	—	7(1.4)	6(1.8)
소음노출	충족	24(25.3)	2(11.8)	4(26.7)	7(21.2)	37(7.5)	23(6.8)
	일부충족	14(14.7)	2(11.8)	2(13.3)	3(9.1)	59(11.9)	41(12.1)
	미충족	57(60)	13(76.5)	9(60.0)	23(69.7)	391(79.0)	267(79.0)
	결측치	—	—	—	—	1(0.2)	1(0.3)
	해당없음	—	—	—	—	7(1.4)	6(1.8)
식수 설비 구비	충족	68(71.6)	13(76.5)	9(60.0)	28(84.8)	354(71.5)	236(69.8)
	일부충족	17(17.9)	2(11.8)	3(20.0)	3(9.1)	87(17.6)	65(19.2)
	미충족	10(10.5)	2(11.8)	3(20.0)	2(6.1)	46(9.3)	30(8.9)
	결측치	—	—	—	—	1(0.2)	1(0.3)
	해당없음	—	—	—	—	7(1.4)	6(1.8)
비품 구비	충족	81(85.3)	15(88.2)	14(93.3)	29(87.9)	426(86.1)	286(84.6)
	일부충족	8(8.4)	1(5.9)	1(6.7)	3(9.1)	53(10.7)	39(11.5)
	미충족	6(6.3)	1(5.9)	0	1(3.0)	8(1.6)	6(1.8)
	결측치	—	—	—	—	1(0.2)	1(0.3)
	해당없음	—	—	—	—	7(1.4)	6(1.8)

문항	세부분항	직종 구분					
		전화상담원 (N=95)	돌봄서비스 종사원 (N=17)	텔레마케터 (N=15)	배달원 (N=33)	청소원 (N=495)	건물경비원 (N=338)
담당자 지정	충족	63(66.3)	13(76.5)	8(53.3)	25(75.8)	376(76)	244(72.2)
	일부충족	21(22.1)	2(11.8)	4(26.7)	3(9.1)	73(14.7)	63(18.6)
	미충족	11(11.6)	2(11.8)	3(20.0)	5(15.2)	38(7.7)	24(7.1)
	결측치	-	-	-	-	1(0.2)	1(0.3)
	해당없음	-	-	-	-	7(1.4)	6(1.8)
휴게시설 청결유지	충족	83(87.4)	17(100)	12(80)	27(81.8)	435(87.9)	291(86.1)
	일부충족	10(10.5)	0	2(13.3)	2(6.1)	46(9.3)	38(11.2)
	미충족	2(2.1)	0	1(6.7)	4(12.1)	5(1.0)	2(0.6)
	결측치	-	-	-	-	2(0.4)	1(0.3)
	해당없음	-	-	-	-	7(1.4)	6(1.8)
표지판부 착	충족	63(66.3)	13(76.5)	9(60.0)	28(84.8)	384(77.6)	248(73.4)
	일부충족	13(13.7)	1(5.9)	2(13.3)	2(6.1)	63(12.7)	54(16)
	미충족	18(18.9)	3(17.6)	4(26.7)	3(9.1)	36(7.3)	28(8.3)
	결측치	-	-	-	-	5(1.0)	2(0.6)
	해당없음	-	-	-	-	7(1.4)	6(1.8)
휴게시설 외 다른목적 사용	그렇다	16(16.8)	1(5.9)	2(13.3)	3(9.1)	41(8.3)	26(7.7)
	일부그렇다	9(9.5)	3(17.6)	1(6.7)	3(9.1)	72(14.5)	48(14.2)
	그렇지않다	70(73.7)	13(76.5)	12(80)	27(81.8)	372(75.2)	256(75.7)
	결측치	-	-	-	-	3(0.6)	2(0.6)
	해당없음	-	-	-	-	7(1.4)	6(1.8)



## 연구진

연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부욱 (팀장,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조기홍 (실장,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천지영 (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 백희정 (교수,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연구원 : 강은택 (연구위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원 : 이성종 (위원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 : 최서연 (교수, 한서대학교)

연구원 : 이경화 (회장,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연구원 : 김제원 (교수, 강원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지우 (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 심진우 (사원,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상대역 : 양동이 (차장, 직업건강연구실)

## 연구기간

2023. 04. 05. ~ 2023.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609)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김부욱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 052-703-0858

팩스 : 052-703-0000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3642-14-6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